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 Korea

고영호 Ko, Youngho
허재석 Her, Jaeseok
최가윤 Choi, Gayoon
한승연 Han, Seungyeon

(aur)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 Korea

지은이 고영호, 허재석, 최가윤, 한승연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1년 12월 26일, 발행: 2021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7,000원, ISBN: 979-11-5659-344-7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고영호 연구위원

| 연구진

허재석 연구원

최가윤 연구원

한승연 연구원

| 외부 연구진

오오쓰키 토시오 동경대학교 교수

이이지마 가즈야 동경대학교 교수

마쓰타 유지 동경대학교 교수

임리사 Texas Tech University 교수

| 연구 보조원

장혁진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민범식 한아도시연구소 부회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미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권순정 아주대학교 교수

권현주 부산대학교 교수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민 앵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손보경 동경대학교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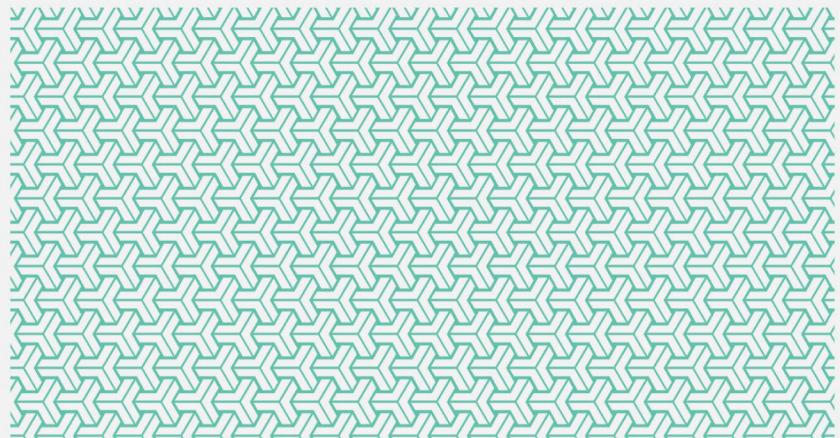
장미선 전북대학교 교수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태윤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팀장

Summary

연구요약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대응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대응을 함께 요구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지침 역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서의 종합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은 점(點) 단위의 시설·설비 개선과 주택의 개량 및 주거 환경의 정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대응에 앞선 일본과 미국은 지역과 지구 지정, 보건복지와 건축도시 정책의 융합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Active Aging, Aging in Place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도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역·지구, 시설·장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로 각 법제도와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징을 종합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와 사례 검토 역시 지역·지구, 시설·장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건축도시정책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법제도,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저소득, 의존적 고령자 중심의 고령자 주거 마련과 돌봄서비스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고소득 고령자 및 건강·허약한 고령자까지도 고령친화 주거-돌봄서비스 연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다양해진 고령자의 욕구와 생활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주거-돌봄서비스 연계 유형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의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점(點) 단위의 시설과 설비 개선을 통한 고령자 보행안전, 교통안전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고령친화 도시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지구 단위의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노력을 집중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추진과 실효성 검증을 통한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구역사업의 확산을 기대한다.

셋째,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기반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평생교육 진흥과 여가·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은 고

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연계방안 마련 미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연계형 또는 평생교육형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만큼 시급한 종합 연계형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건축도시정책의 개선 방향이 고령자 개인과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나이들어가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고령화, 고령사회,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 커뮤니티, 고령친화 생활환경

차 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1) 인구고령화와 도시 거주 고령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2
2) 도시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국가차원의 노력	6
2. 연구의 필요성	10
1) 고령친화적 시설·교통·주거 및 서비스의 종합 연계 생활환경 조성 필요	10
2)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단위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조	13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5
3)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	19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20
1) 특정 구역·지구·지역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20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29
3)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제도	37
2.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39
1) 특정 마을, 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39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48
3) 돌봄, 재가, 의료, 상업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55
3.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과 한계	61
1) 법제도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61
2) 국내 사례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63

차례

CONTENTS

제3장 일본과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	65
1.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66
1) 일본 고령사회 대응 현황	66
2)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70
3)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81
2.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89
1) 미국 고령사회 대응 현황	89
2)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91
3)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95
3. 소结	124
1) 일본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24
2) 미국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27
제4장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29
1. 고령친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	130
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	134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136
참고문헌	139
Summary	151

표차례

LIST OF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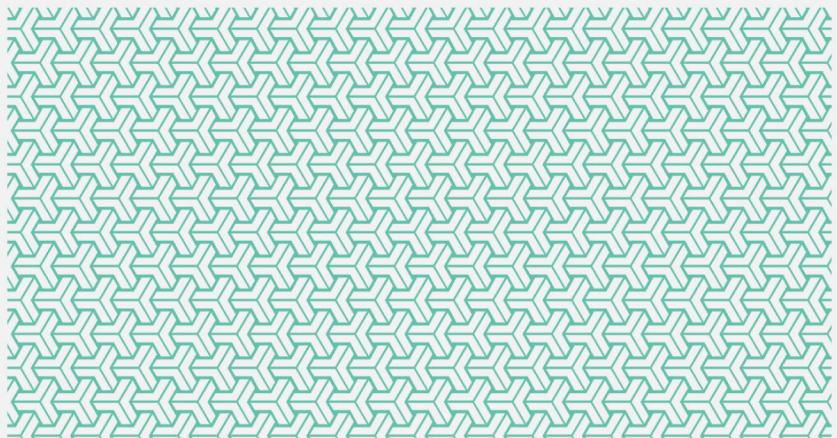
[표 1-1] 우리나라 고령자 1인 가구 추계	3
[표 1-2] 국가계획에서의 도시 지역 고령사회 대응 현황	9
[표 1-3] WHO 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	11
[표 1-4] 연구의 배경·목적·방법 3단 비교	16
[표 2-1] 도시재생법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사업내용	23
[표 2-2] 국토계획법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사업내용	26
[표 2-3]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관련 지역·지구 추진과제	27
[표 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추진과제	28
[표 2-5] BF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	29
[표 2-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0
[표 2-7]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32
[표 2-8] 지역의료기관의 종류	33
[표 2-9] 국토종합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34
[표 2-1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35
[표 2-11] 주거복지로드맵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35
[표 2-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 과제	36
[표 2-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추진과제	38
[표 2-14]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42
[표 2-15]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법제도 특징 요약	62
[표 2-16]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특징 요약	64
[표 3-1] 지역 유형별 과제	68
[표 3-2] 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노력	69
[표 3-3] 배리어 프리법의 세부 추진 내용	72
[표 3-4] 배리어 프리법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73
[표 3-5] 고령사회 관련 비전 및 주요 내용	74
[표 3-6] 사회보장 관련 제도 구축 시 기본 이념	80
[표 3-7] 재택의료의 4단계	84
[표 3-8]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사례	86
[표 3-9] 일본 법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26
[표 3-10] 미국 법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27
[표 3-11] 미국의 지역, 시설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성 비교	128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우리나라 거주 지역별 고령자 인구 추계	2
[그림 1-2]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3
[그림 1-3]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4
[그림 1-4] 도시지역의 열악한 고령자 주거환경	5
[그림 1-5]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경기도 성남시 카네이션 마을 조성 규모	40
[그림 2-2] 천주교 인천교구 시니어타운 단지 전경	41
[그림 2-3]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44
[그림 2-4] 은퇴자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	45
[그림 2-5]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개선 전·후	47
[그림 2-6]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	50
[그림 2-7] 노인지원주택 내부 시설	52
[그림 2-8] 커뮤니티(지역사회)케어 개요도	53
[그림 2-9] 공공실버주택 예시도	54
[그림 2-1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흐름도	56
[그림 2-11] 양평군 내 6개 헬스존	57
[그림 2-12] 락희거리 고령친화 상점	59
[그림 2-13] 시흥시 고령친화 상점	59
[그림 3-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추이	66
[그림 3-2] 일본의 연령별 사망자수 추이	67
[그림 3-3] 종합노년학 연구기구 및 액션 리서치	70
[그림 3-4] 도쿄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의 액션 리서치	71
[그림 3-5] 토요시키다이단지 재건축사업	81
[그림 3-6] 지역포탈케어시스템 개념도	86
[그림 3-7] 미국의 고령인구 변화 추이	89
[그림 3-8] 연령대별 인구 비율	90
[그림 3-9] 미국의 카운티 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	90
[그림 3-10] 맨하튼 자치구(Manhattan Borough)에 위치한 커뮤니티 지구	99
[그림 3-11] 미 전역에 걸친 시니어 빌리지의 위치	102
[그림 3-12] 뉴턴 앤 흄 시니어 빌리지의 행정적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뉴턴시	107
[그림 3-13] 뉴턴 앤 흄 빌리지 회원들의 그룹 모임 사진	108
[그림 3-14] 코하우징의 개별 유닛 디자인 사례	120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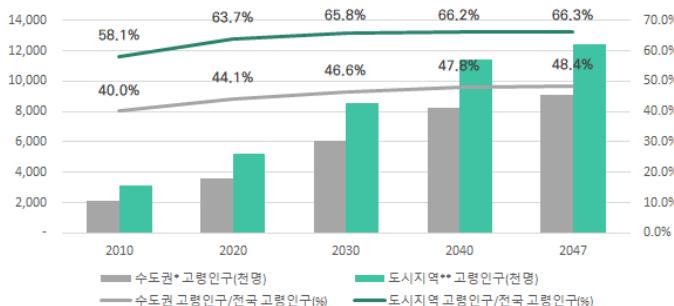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1) 인구고령화와 도시 거주 고령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악화
역시 시급한 정책대응 현안으로 급부상함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자 인구 증가¹⁾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15.7%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며, 고령자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3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상당수(46.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등 도시지역 거주 고령인구의 증가²⁾
 -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3,586천 명(44.1%),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5,178천 명(63.7%)으로 대부분의 고령자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47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6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도시 : 특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 도시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함에 따라 2010년 통계자료 부재

[그림 1-1] 우리나라 거주 지역별 고령자 인구 추계

출처: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시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 dex.do?wcd=MT_2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검색일: 2021.12.20.)

1)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전국」, <https://kosis.kr/> (검색일: 2021.12.20.)

2)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시도」, <https://kosis.kr/> (검색일: 2021.12.20.)

- 수도권 및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의 경제적 취약성³⁾
 -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1인 가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1인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22% 수준이었으나, 2047년 4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노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66.7%로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0, pp.382-383.)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2017년, 43.8%)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초과하는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보건복지부 2020, p.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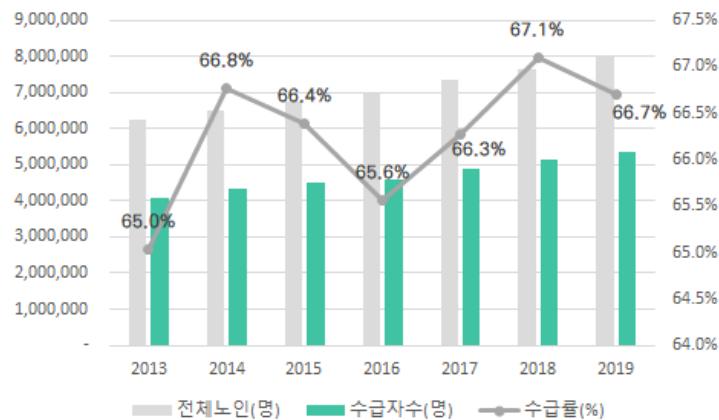
[표 1-1] 우리나라 고령자 1인 가구 추계

	2010	2020	2030	2040	2047
수도권* 고령자 1인 가구(천 가구)	302	595	1,065	1,565	1,794
수도권 1인 가구/전체가구(%)	10.6	14.0	15.9	17.2	17.8
수도권 고령자 1인 가구/수도권 1인 가구(%)	16.3	20.8	30.3	40.1	45.3
도시** 고령자 1인 가구(천 가구)	480	912	1,578	2,246	2,525
도시 1인 가구(%)	15.3	20.2	22.6	24.2	24.7
도시 1인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17.9	22.2	31.8	41.1	45.8

* 수도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도시 : 특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 도시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함에 따라 2010년 통계자료 부재

출처: 통계청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_지도: 2020-2047」,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wacHMTITLE&menuId=M_01_01&outLink=Y&entType=#content-group(검색일: 2021.12.20)



[그림 1-2]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pp.382-383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통계청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_지도」, <https://kosis.kr/>(검색일: 2021.12.20.)

□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는 특히 노후주택과 열악한 거주환경에 집중 노출되며 도시 주거환경 개선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될 필요

- 도시지역의 주택 및 거주환경 문제

- 도심지역의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총 553,303호(2019년 기준)로 전체 노후 주택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⁴⁾ 2040년에는 노후주택이 전체의 절반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건축연한 30년 초과)는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⁵⁾
- 노후화된 주거지역 거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 외부 활동 등에 제한될 수 있음(권순정 외, 2017. pp. 99-100.)
- 개별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 공간과 달리 단지환경이나 주변 공간은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노후주택 거주민의 공공서비스나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이동기 외, 2015, pp. 148-149.)



[그림 1-3]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출처 : 연합뉴스, <http://www.seoulec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60>
(검색일: 2021.05.24.)

4) 통계청. (2021).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시군구

5) 중앙일보 2016년 9월 27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0644435> (검색일: 2021.05.24.)

-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의 열악한 주택 및 거주환경
 -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은 크게 줄어들었음(통계청, 2020, p.44.)
 - 하지만 일반가구보다 고령자 가구에서 최저 시설기준⁶⁾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택 만족도나 주거환경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남(통계청, 2020, p.45.)
 - 고령가구의 주거환경 중 편의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부분이 일반 가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보행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0, pp.45-46.)
 - 고령자의 문화체험, 공원 및 체육시설에서의 여가활동 등에 대한 욕구는 꾸준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은 미흡하였음(한재혁, 이수기, 2019, p.34.)
 - 수도권 고령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비수도권보다 13.9% 낮으며, 기존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도심지역 거주 고령자, 특히 저소득 고령자의 거주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통계청, 2020, p.43.)



[그림 1-4] 도시지역의 열악한 고령자 주거환경

출처: TB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2310865&seq_800=10291328(검색일: 2021.06.18.)

6) 시설기준: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2) 도시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국가차원의 노력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고령자 신체특성 고려 중심의 주택·생활SOC 공급과 보행환경 개선,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제공 연계를 강조

- 고령사회 대응 도시·생활공간 조성(국토교통부, 2019, p.141.)
 -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및 기반시설의 고령 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 고령자 등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미달 지역 해소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신호 시스템 개선(횡단보도 신호시간 등) 및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정비 추진(국토교통부, 2019, p.28, p.92.)
-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국토교통부, 2019, p.95.)
 -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최저기준 검토 및 주거지원 확대와 주거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추진
 -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공분양과 민간부분으로 확대 추진하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커뮤니티 기반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국토교통부, 2019, p.98.)
 - 인구구조 대비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형 주택공급 프로그램 시행
 - 은퇴자 및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Aging in Place, Active Aging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고령친화 마을계획 활성화
- 주요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발전방향 제시
 - (울산광역시) 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 정주단지 조성(국토교통부, 2019, p.202.)
 - (충청북도) 고령자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시설기능·책임 강화(국토교통부, 2019, p.221.)
 - (전라북도) 고령사회 대응 보건의료 개선 및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국토교통부, 2019, p.229.)
 - (경상북도) 고령자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국토교통부, 2019, p.235.)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고령자의 역할 중심의 주택 공급과 서비스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강조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관계부처합동, 2020, p.94.)
 -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 지원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고령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소득수준, 건강상태,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삶 전반적 영역에 대한 정책 설계
-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관계부처합동, 2020, pp.119-120.)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제공
 - 고령자의 계속 거주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및 주택개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기관 연계 추진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복합서비스 연계·제공되는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고령친화커뮤니티 기반 마련(관계부처합동, 2020, p.109, pp.121-122.)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필요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사회, 환경, 경제, 주거 등 지역의 고령친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복합 지표 개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추진
 -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령자의 이동성 제고 및 노인보호 구역 확대·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 (주거복지로드맵('18)) 고령자 소득수준 중심의 주택 개조 및 공급을 강조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관계부처합동, 2018, p.6)
 - 생애단계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
 - 고령사회 대응 고령자 가구에 대한 지원 집중
-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관계부처합동, 2018, p.6.)

-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건설 임대)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또는 전세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임대 주택 공급(매입·임차형)
-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자격에 추가하여 저소득 층 지원 확대
-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보호를 위해 안심센서 설치 및 고령입 주자 주기적 관리 및 생활상담 등 생활 지원
-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 공공기관(LH,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고 고령자에게 공 공임대 주택 공급 및 매입 금액 분할 지급
 - 고령자 소유주택이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우 대하며, 고령층 주거약자를 임차인에 우선 선정
- 주택개보수 지원 강화(관계부처합동, 2018, p.31.)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현행 지원되던 자가 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 금액 추가 지원을 통해 문턱 제거, 욕실 안전 손 잡이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 고령자 일상생활권 중심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 개조·공급과 서비스 연계를 강조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pp.36-37)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노화 (Healthy Ag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통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및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서비스 질 제고
-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p.38)
 - 무장애 설계 적용 및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주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고령자 특성 및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고령자 전용 주거모델 개발·공급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환경 조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p.38)
 -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에 유니버설 적용 확대 및 기존 무장애 설계(BF) 인증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강화 및 고령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는 국토의 이용과 주택의 개선, 재가생활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설과 서비스 공급 개선 차원의 한계 발생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은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의 확대, 고령친화적 주택 제공, 고령자 안전 교통·보행환경 제공 등에 한정됨
 - 도시 지역 고령자의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은 개별 시설과 서비스 공급 차원을 넘어 일정 지역단위(고령자 일상생활권)의 종합적 시설·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적극 연계로 추진될 필요

[표 1-2] 국가계획에서의 도시 지역 고령사회 대응 현황

구분	주요내용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거환경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공간 확충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와 협업한 주거환경 조성
	거주환경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보행의 고령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 맞춤형 정주환경 및 돌봄환경 구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거환경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친화적 주택 제공
	거주환경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돌봄 및 고령자를 위한 기반 커뮤니티 시설·교통복지 기반 구축
주거복지로드맵	주거환경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전용 공공 임대주택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주택개보수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주거환경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및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 - 고령자 주거모델 개발·공급
	거주환경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적용 확대 - 교통안전 강화 및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p>☞ 도시지역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주요 국가계획은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고령친화 주택 제공, 고령자 안전 교통·보행 등으로 요약됨</p>		
<p>☞ 개별 시설과 서비스 공급 차원을 넘어 도시 지역 고령자의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정 지역단위의 시설·장소·서비스의 개선과 적극 연계 노력이 추가될 필요</p>		

출처 : 본 보고서 pp.6~9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요약 작성

2. 연구의 필요성

1) 고령친화적 시설·교통·주거 및 서비스의 종합 연계 생활환경 조성 필요

□ WHO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물리·사회·서비스 환경의 종합 연계 요구

- 고령친화(Age-Friendly)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존중받는 것을 의미⁷⁾
-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의 다각적 사회영향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커뮤니티’ 구현 노력과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를 정의

WHO의 고령친화도시 정의

-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고령자들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

출처 : WHO, https://www.who.int/ageing/projects/age_friendly_cities/en/
(검색일: 2020.06.23.)

- WHO GAFC 가이드라인⁸⁾에서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은 크게 물리적 환경(외부공간·시설, 교통, 주거), 사회·경제적 환경(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와 고용), 지역사회환경(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서비스)으로 구분
-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환경(외부공간·시설, 교통, 주거)과 사회·경제적 환경(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와 고용), 지역사회 환경(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서비스)으로 구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기준을 반영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방향을 담고 있음⁹⁾

7) WHO, <https://www.who.int/ageing/age-friendly-world/en> (검색일: 2020.06.17.)

8) WHO. (2007). p.9.

9) 서수정 외. (2020). p.2.

[표 1-3] WHO 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

8대 영역	기본방향	
1. 외부공간·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 접근성 제고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함
2. 교통수단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 환경 구축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주거환경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4. 사회참여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 · 여가 활동 접근성	-행정·정보 지원체계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5. 존중·사회통합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6. 인적자원 활용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7. 의사소통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8. 건강·지역돌봄	-고령자 의료서비스 충분성, 적절성, 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 생활 가능성 증대

출처 : 고령친화서울,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about.action>
(검색일: 2020.06.23.)

□ 커뮤니티 단위의 고령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특징

- 커뮤니티 단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고령자의 이동성, 사고·범죄 안전성, 건강 행위, 사회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WHO, 2007, p.9)
- 장애물이 없고 저렴한 주택과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및 교통수단은 고령자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¹⁰⁾
- 물리적 환경은 노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를 막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 주거밀도, 토지이용 혼합도, 도보환경, 대중교통의 발달 등 물리적 여건에 따라 고령자들의 타인에 대한 의존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Clarke & George, 2005; 김동하 외, 2019)
 - 또한 물리적 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장려하여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10) WHO, <https://www.who.int/ageing/projects/age-friendly-environments/en>
(검색일: 2020.06.17.)

- ‘외부공간·시설’은 고령자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을 높이는 녹지공간, 휴게시설, 보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등으로 구성 (WHO, 2007, pp.12-19.)
- ‘교통’은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버스정류장과 역의 접근용이성, 안전한 도로 조성, 편리한 주차장 확보를 제시(고영호 외, 2018, p.28.)
- ‘주거’는 다양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주거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방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설계를 제안(고영호 외, 2018, pp.27-28.)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자 일상생활권 단위 환경개선의 필요성

- 시설·장소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거주 고령자 입장에서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물리적인 주거지는 확대되었으나 입주자의 일상생활지원 및 서비스 지원은 매우 미흡(김유진 외, 2019, p.11.)
- 고령자의 일상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지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특정 범위에서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며 거주 고령자 입장에서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종합적 지원이 가능함
 - 지역사회 고령자를 위한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취약계층 고려 시설 조정 사업 등 물리적 정비+의료서비스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추진 등 고령거주자를 주체로 한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서유진, 2018, p.58.)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고령자 주거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 거주환경의 정비가 요구됨(서유진, 2018, p.6.)
-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을 위해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주거지 재생이나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 전체 또는 지역 차원의 진단·평가기준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서수정 외, 2020, p.8.)

2)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단위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조

- 남정훈 외(2019)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서 지역사회 지속거주 구현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도출함
 - AIC관점에서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과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 계획수립 과정에서 고령자, 복지, 주거, 도시, 환경 등의 기준 계획을 포함하는 최상위 시책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계획 주체 확보가 필요함
- 박소임 외(2015)는 한국형 고령친화주거지가 나아갈 기초적 방향 제시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선진적 고령친화주거지 관련 사례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세대수
 - 미국의 경우 의료, 교육, 행정, 대형마트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보행활동이 가능한 근린주거 형태의 규모로 주거지를 계획
 - 미국은 고령자 주거의 도시인 경우에도 다양한 세대·가족 간의 교류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입주조건과 운영방식을 갖춤
- 목인경(2013)은 고령사회 대응 주택·주거 정책의 영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 제시를 위해 세곡동의 주거환경 조성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과정을 분석함
 - 협력적 거버넌스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취합 및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의 분석틀 제시
 - 세곡동202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어르신 행복타운’을 통한 사례분석진행
 -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령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사업을 분석
- 정현원 외(2016)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고령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유형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분석함
 - Aging in place를 통한 지역 공동체와의 익숙한 사회적 접촉은 노인들에게 정신·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을 제정하여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머물며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 국외에서는 Aging in place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도적으로 주거 형태를 제공함
- 고령친화 커뮤니티 환경 계획의 중요성제시와 공간의 분류 및 분석을 통해 공간계획의 문제점 파악
- 최영준 외(2016)는 고령사회 대응 생활환경의 방향 제시를 위해 미국, 유럽 지역의 일상적 기술지원환경(AAL, Ambient Assisted Living)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고령친화적 공간계획의 시사점을 제시함
 - Activing Aging : WHO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 하는 과정'
 - AAL(Ambient Assisted Living) : 첨단기술과 일상의 생활보조 서비스가 더해진 주거, 사회 서비스 특성이 조합된 복합개념의 신조어
 -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지원하는 대응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고령자가 활동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일상 환경 안에서의 다양한 공간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공간계획적 시나리오로써 지능형 건축부재의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적 특성에 적합한 AAL의 개념을 세우기 위한 연구가 필요
- 임경수(2016)는 고령친화 마을 조성 정책의 대안 제시를 위해 사례지역 공무원 면담을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함
 - WHO의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토대로 부여, 순창, 의성, 원주 지역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 고령친화를 검증할만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미흡
 - 정읍시는 2012년부터 고령인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생애맞춤형 도시(Age-friendly City)를 추진하고 있음
 -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슈 및 전략과제를 통해 실태파악 및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고령자 배려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와 사례를 ①지역·지구, ②시설·공간, ③프로그램·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
 - 면(面) 단위의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건축, 도시 분야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국가·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

□ 시간적 범위

- (법·제도 검토의 범위) 2021년 기준 현재 적용 중인 국가계획과 법령
- (사례 검토의 범위) WHO의 고령친화도시 개념 제시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추진된 사업과 조성 사례

□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의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의 “도시지구” 또는 “도시마을·타운”은 “도시지역”的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 완화가 필요한 지구를 의미함
- “고령친화 생활환경”이란 WHO가 제시하는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물리적·사회경제적 환경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지구” 또는 “고령친화마을·타운”이란 상기한 “고령친화 생활환경”이 “도시지구” 또는 “도시마을·타운”的 범위 내에서 구현되는 지구를 의미함

3) 연구의 방법

□ 관련 법제도 검토

- 특정 지역·지구 또는 마을·타운 단위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한계를 도출함
- 특정 지역·지구 단위의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관련 일본과 미국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사례 검토

- 관련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사점을 도출함
- 일본과 미국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정책사업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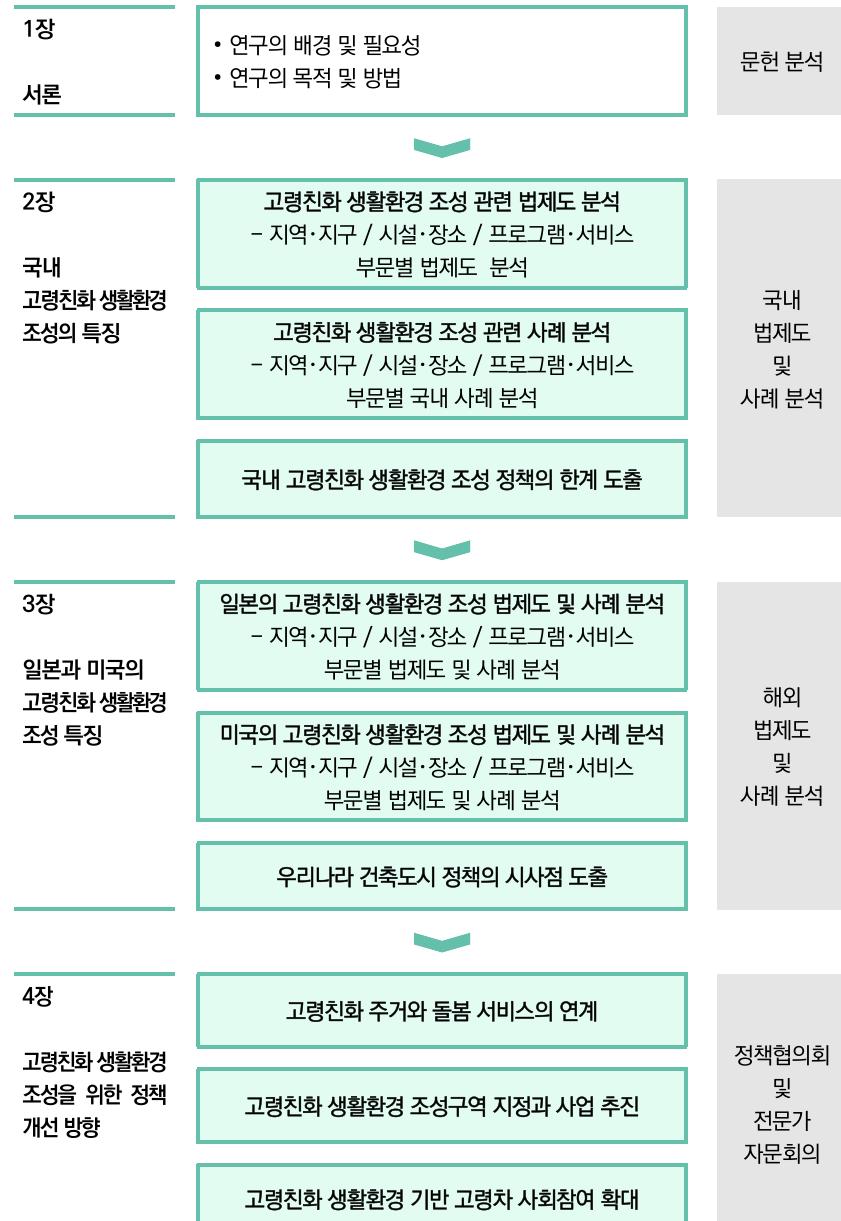
□ 법제도와 사례의 지역, 시설, 서비스 단위 검토

- 우리나라, 일본, 미국 관련 법제도와 사례는 지역·지구(마을·타운) 단위, 시설·장소 단위, 프로그램·서비스의 개선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검토 및 분석 단위에 따른 우리나라의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법제도 개선의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함

[표 1-4] 연구의 배경·목적·방법 3단 비교

배경	목적	방법
도시 지역 거주 고령자의 주거 환경·시설·교통과 커뮤니티 단위로 종합적 필요 강조	고령사회 대응 시설별, 개별적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 단위로 종합 연계될	국내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 제시
WHO는 고령친화 주택·외부 환경·시설·교통과 서비스가 커뮤니티 단위로 종합 연계될 필요 강조	성의 가능성 제고	미국, 일본의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 제시
우리나라는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건축도시 정책 개선방향 제시	정책협의회, 자문회의를 통한 건축도시 정책 개선방향 제시	정책개선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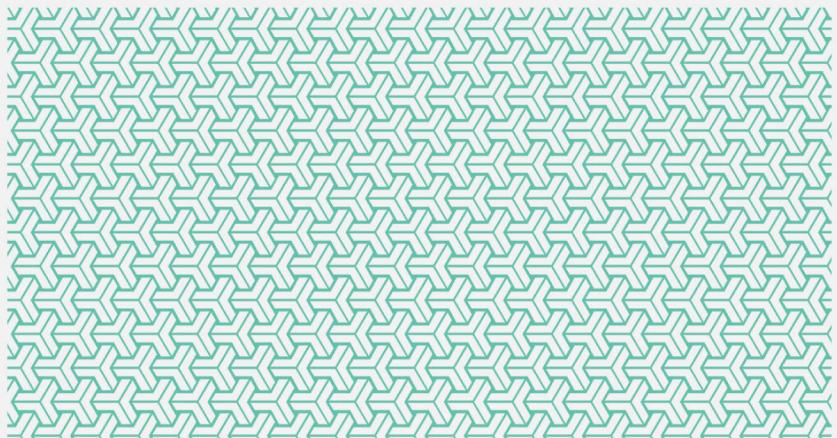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1-5] 연구의 흐름도

출처 : 연구진 작성

제2장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2.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3.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과 한계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1) 특정 구역·지구·지역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 노인 교통사고 위험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 주체가 시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은 경찰청장(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 중심으로 구역 지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장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 고령자 주요 이용 시설¹¹⁾의 주 출입문 중심 300~5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함
 - 경찰청장(서장)은 횡단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과 안전표지 설치 의무가 있고, 시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의무 및 과속·미끄럼방지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시장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연도별계획 시행의 필요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음
- ☞ 시설 중심 일정 반경(300~500m) 내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노인의 도로 이용 안전(교통사고 안전) 강화 시설을 설치하는 특성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경찰청(교통기획계)

-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후략)

11) 노인주거·여가·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 편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은 보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정
 - 모든 국민이 나이 또는 경제·지역적 사정 등에 따른 보행 관련 차별이 없을 필요
 - 시장은 보행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노인 포함)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할 수 있음
 -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할 수 있음
 -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노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¹²⁾ 설치할 수 있음
 - 국가는 지자체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 (고령)보행자 통행량 및 빈도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령)보행자 통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특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 · 임산부 · 어린이 ·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후략)

12)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신호기,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및 보행자길 안내시설 등

□ 「교통약자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 고령자 등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을 경험하는 국민의 안전·편리한 이동을 위해 시장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정
 - 시장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우선구역 지정·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장은 경찰청장(서장)에게 보행우선구역 내 자동차의 통행 및 운행속도 제한, 주차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시장은 보행우선구역 내 보행안전시설물¹³⁾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는 자체의 보행우선구역 정비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 ☞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도로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특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략)
-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대중교통 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자동차 진입억제 볼라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등

□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선정
 -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활성화를 목적

[표 2-1] 도시재생법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사업내용

구분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권자]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범위 및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대상지역을 선정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정권자]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구청장 등이 수립할 수 있음 · (도시경제기반형)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등의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대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 · (근린재생형) 생활권 단위의 지역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통한 활성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범위 및 내용]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도시재생을 촉진

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 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중략)

제26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

(중략)

-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선정하여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은 「도시정비법」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국토교통부(주택정책비과)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후략)

□ 「경관법」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
 - 시·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¹⁴⁾, 공동이용시설¹⁵⁾,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 하여야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 · 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 군의 시장 ·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후략)

14) 도로, 상하수도, 열·가스 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

15) 놀이터, 마을회관,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등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인구 고령화 대응 생활환경 제공의 필요를 제시함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국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표 2-2] 국토계획법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사업내용

구분	내용
도시기본계획	<p>[지정권자]</p> <p>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p> <p>[공간범위]</p> <p>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p> <p>[사업내용]</p> <p>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p>
지구단위계획	<p>[지정권자]</p> <p>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p> <p>[공간범위]</p> <p>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등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p> <p>[사업내용]</p> <p>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p>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 국토교통부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를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중략)

3. 교통 · 수자원 ·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후략)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 개요

- (근거법) 「교통안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 (성격) 국가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협동으로 수립하는 중장기(5년 단위) 교통안전 종합계획
- (비전 및 목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선정하고,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40% 이상 감축 을 목표로 설정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주요내용)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지속 추진, 보호구역 내 속도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권장
 - (소관기관 및 세부추진과제)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은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 ☞ 국가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고령)보행자의 안전 및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제시

[표 2-3]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관련 지역·지구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보행환경 개선사업	'09~'15년까지 277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2,935억 원 투입)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약자(노인) 보호구역	'08~'11년 : 417개소, '12년 : 149개소, 13년 : 60개소, '14년 : 71개소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출처 : 국토교통부(2016),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p.149, p.293, p.3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개요

- (근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성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경제기반형, 균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존재함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고령)도시재생 계획수립을 통한 세부과제 및 뉴딜정책 실시

[표 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관련 지역·지구 단위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중심시 가지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근린형은 이전·유류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을 조성.- 중심시가지형은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조성.	국토교통부, 지자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밀집지역의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및 생활편의시설 정비추진-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을 활성화하며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계획 추진	국토교통부, 지자체

출처 : 국토교통부(201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편리한 시설·설비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및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이용 안전 및 편리성 증진을 위해 대상시설¹⁶⁾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할 수 있음
 -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임
 -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 완화·촉진을 위한 금융 및 기술의 지원을 마련해야 함
 - ☞ 고령자 등의 안전·편리한 시설이용 도모를 위한 BF 시설 설치 특징

[표 2-5] BF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

구분	시설 종류
공원	출입구, 보도, 회장실, 점자를록, 안내설비, 매표소·판매기,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2종 균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경사로, 회장실, 옥실, 점자를록, 안내설비, 피난설비, 침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판매기, 휴게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가숙사 등)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경사로, 회장실 및 옥실, 점자를록, 피난시설, 부대시설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후략)

16)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치료·요양을 위해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표 2-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출처 : 「노인복지법」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을 지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제공

-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함
 - 장애인의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할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신고사항 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때에도 신고하여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표 2-7]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특징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직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직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

출처 :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후략)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의료기관의 설치

- 지역의료기관 설치를 통한 건강센터 제공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여야 함
 - 지역의료보건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표 2-8] 지역의료기관의 종류

구분	특징
보건소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
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보건자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자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건강생활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지역보건법」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

□ 「국토종합계획실천계획」에 따른 주거 및 의료시설 확충 사업

- 개요
 - (근거법) 국토기본법
 - (성격)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고령자를 위한 도시공간 활용 및 주거공간 확충에 대한 사업과제 추진 실시

[표 2-9] 국토종합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 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 세대 혼합 공간으로 조성	국토교통부
도시의 적정개발, 관리강화 및 도시공간 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증가, 출산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친환경, 스마트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확보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23년까지 매년 5개 치매전문병동 설치, 보건복지부 46.5억씩 투자· 24년 4개 치매전문병동 설치, 37억 투자	

출처 :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사업

- 개요
 - (근거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 (성격)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및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 수단 보급 전지역 법정 기준 100% 달성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 시설 증진을 위해 세부추진 과제 실시

[표 2-1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도시·생활 공간조성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은 기준적 합 설치율 90% 이상 유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확대	· 2021년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15,178대가 운행 예정	국토교통부, 지자체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거의 없는 수준 달성. 즉,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80%이상 수준으로 향상	국토교통부, 지자체

출처 : 국토교통부(2016), 제8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p22~p.29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 사업

- 개요
 - (근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성격)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고령자 거주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강화, 노후주택 수리 지원,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표 2-11] 주거복지로드맵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임대주택에 주거 서비스 강화	· 영구임대주택 10단지와 매임임대주택 10 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배치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등), 지자체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	· 2020년 올해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 진행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등), 지자체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19년 54.6억원/10개소, 20년 정부안 123 억원/20개소 · 2020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등 총6곳 682호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등),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 공급	· 19년 54.6억원/10개소, 20년 정부안 123 억원/20개소 · 서울, 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예정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등), 지자체

출처 : 관계부처협동(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친화 주거모형 개발 사업

- 개요

- (근거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성격)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 주거모형 개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 등

[표 2-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시설·장소 단위 추진 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고령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대상자를 기준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수준까지 대폭확대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속 지원 ·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주택개조 지원 방안 마련 · 노화 대응 주택개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를 위한 고령자 주거 모형 개발 및 제도개 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을 감안 하여 중산층 고령자의 주택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 의 주거 대안 마련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고령자 중심 지역사 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평가,보완을 통해 대상별,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창출(~22년), 전국적 확산 모델 마련(22~23년)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장기요양시설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노인간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도록 침실 기준 개선, 1인실 설치 확대 유도방안 검토 · 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지속 확충(총130 개소, ~22년)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보행을 위한 표준화된 보행환경 제시,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고령자 맞춤 횡단시설 등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질 향상

- 국민의 여가 활동을 지원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

-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도모
 -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증진 조성

-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연 및 절주운동, 금연을 위한 조치,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재가중심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사업

- 개요
 - (근거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성격)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고령친화 관련 세부 추진과제
 - 수급자 상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혼합 이용,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통합 재가급여'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및 보호자 부재시 단기 보호,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표 2-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추진과제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기관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	신탁의 종합 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 가능 재산범위 확대 등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 개선추진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가 본인 상태, 욕구에 맞게 재가서비스 를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 먼트' 활성화 · '주·야간보호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확대 	관계부처 협동(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출처 : 관계부처협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1) 특정 마을, 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경기도 카네이션 마을 조성사업¹⁷⁾

- 개요
 -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와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근거, 도 차원에서 고령친화마을인 '경기도 카네이션 마을 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테마(어르신 일자리, 고령친화 환경 조성)를 선정하였으며, 도 차원에서 고령친화마을인 '경기도 카네이션 마을 사업'을 추진
 -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여가, 고령친화환경 등을 조성
- 대상 및 범위
 - 사업지역 범위는 고령자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고령가구 밀집 지역, 저소득층, 단독주택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을 설정
 - 시범사업 지역으로 성남시 산성동(0.58㎢), 부천시 원미1동(0.99㎢), 수원시 율전동(2.98㎢)을 선정하고 지역맞춤형 고령친화마을계획을 추진
 -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 및 야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 이용률이 높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원, 주거 중심의 생활환경을 개선
- 주요 사업내용
 - 고령자의 이동 편의·안전성을 도모하는 보행·교통·주거부문의 사업실시
 - (보행)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핸드레일 설치, 새로 조성된 보행로에 간이의자, 화장실 안내판, 경사로 미끄럼 방지(보도 포장, 논슬립) 설치

17) 건축공간연구원. (2020). pp.67-68.; 김춘남, 김서일. (2018). p.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교통) 고령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전동휠체어 전용 주차장과 충전기 설치, 기존 노후버스 교체 및 고령자 전용 버스 도입
- (주거)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안전시설(안전 손잡이, 화장실 미끄럼사고 방지, 문턱제거) 개선
- 사업 효과 및 의의
 - 카네이션마을 사업비는 지역(성남, 부천, 수원)별 최대 3억 1천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부담
 - 경기도에서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시·군은 지역 맞춤형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경기복지재단은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카네이션마을 운영위원에 지역 어르신이 참여
- 한계 및 문제점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 단위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을 통해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시설·환경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고령자 생활권 중심의 기존 서비스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



[그림 2-1] 경기도 성남시 카네이션 마을 조성 규모

출처 : 김춘남, 김서일. (2018). p.9.

□ 천주교 인천교구 시니어타운

- 개요

- 천주교 인천교구가 설립·운영하는 실버타운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 및 의료,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공간
- 가톨릭 시니어들의 신앙생활을 통합적으로 돋고, 열악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한 단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¹⁸⁾

- 대상 및 범위

- 독립된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에 입소자격이 주어짐
- 아파트형 본관과 라운지, 도서관 등 총면적 6961m²(지상 12층, 지하 4층)에 달하는 대형 시니어타운으로 총 237가구가 입주
- 부지 2724m²에 건립 중인 마리스텔라 내에는 약 1000병상 규모의 가톨릭 대 부설 병원 건립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자 건강검진은 물론 응급 처치, 전담 의료진의 맞춤 상담 등이 가능



[그림 2-2] 천주교 인천교구 시니어타운 단지 전경

출처 : 마리스텔라 홈페이지, <https://marisstella.or.kr/> (검색일:2021.08.02.)

- 주요 사업내용

- 단지 내 전문요양원, 대학병원(의료서비스), 편의시설, 스포츠 시설, 신앙 생활을 위한 공간 등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너싱홈(노인요양시설)도 동시에 갖춰, 입주자들에게 전천후 의료 혜택을 제공

1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1/01/39997/>
(검색일: 2021.06.18.)

- 거주자들의 신양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의료진 맞춤형 강좌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교육 및 강연) 등
- 사업 효과 및 의의
 - 의료, 주거, 여가 등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테마파크형식의 통합적 공간·서비스를 제공
- 한계 및 문제점
 - 평균 월 생활비가 170만원(2인기준)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선택적 입소가 이뤄지며 단지 내 종교적 특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구성 원에 제한이 있음

□ 전라북도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 개요
 - 정부 주도 실버타운 산업 1호이며 김제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전용주택,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등을 갖춰 조성한 노인 종합복지타운¹⁹⁾
 -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범위
 - 목욕탕,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원, 전용주택(임대아파트), 노인회관, 일거리마련센터, 게이트볼장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음
- 주요 사업내용²⁰⁾
 - (복지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동아리지원 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지역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노후설계 종합지원 등
 - (돌봄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위기노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 (건강활동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정서생활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19) 한준규. (2007). 실버타운 성공 모델 '김제 노인복지타운'. 12월 5일자 기사.

20)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imjesilver.org/bbs/content.php?co_id=business01_01 (검색일: 2021.06.18.)

[표 2-14]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	세부내용
복지사업	평생교육 - 컴퓨터활용, 스마트폰 활용, 어학능력지원 등
	취미여가지원 - 취미여가(미술 등) 및 건강취미(게이트볼 등)
	동아리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및 체육동아리
	정서생활지원 - 전문상담서비스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복지연계 - 노인복지관 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노후설계종합지원 -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취·창업 연계활동 등
	우리동네 행복버스 - 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관내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돌봄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위기노인지원사업 - 실버코디네이터 연계, 리빙랩 프로젝트, 외부 자원 연계, 무료급식 지원 등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건강활동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老老케어, 우리마을실버보안관, 실버타운 환경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정서생활지원사업 - 우울자상예방 프로그램, 웨다잉 프로그램
	건강증진지원사업 - 진료서비스, 치매예방 인지활동 서비스 등
	운동처방사업 - 건강관리실, 체력측정실, 신체건강운동 등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 치매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인지건강 학습프로그램 친구연계 활동

출처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imjesilver.org/bbs/content.php?co_id=business01_01 (검색일: 2021.06.1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업 효과 및 의의

- 1996년 정부의 실버타운 시범사업으로 조성되어 김제시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전국 최초로 전원형 실버타운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하루 500명이 이용하고 연간 60~70개 단체가 방문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적인 노인 종합 요양 시설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2-3]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출처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gimjesilver/>)

(검색일: 2021.08.02.)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 개요

-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년부터 실시한 공유복지사업으로 농산촌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에게 제공²¹⁾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롭게 제시한 복지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체험 및 공동체생활을 지원²²⁾
- 공동체생활을 통한 老老케어, 미니멀라이프 실천, 귀농·귀촌체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연금생활자의 Well-Aging을 추구

- 대상 및 범위

- 공적연금 생활자, 공제연금기관협의회 회원 등이 공동체마을에 지원 가능
- 전국 12개 지자체와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 기

21) 여관구. (2021).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월 17일자 기사.

22)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 https://m.geps.or.kr/g_subsite/maeul/introduction2.jsp (검색일: 2021.06.18.)

준)²³⁾ 20개 마을에서 96명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21.3. 기준)²⁴⁾

- 정주형 은퇴자마을(귀농·귀촌교육 위주) 및 체험형 은퇴자마을(농산어촌 체험 위주)로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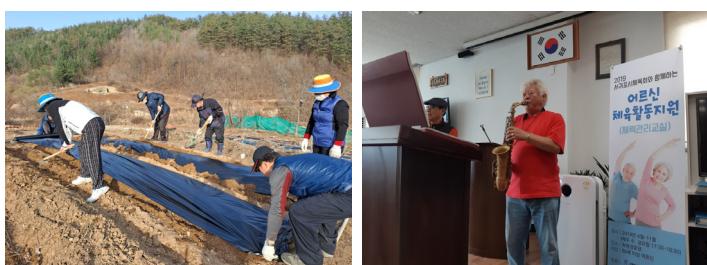
- 귀농·귀촌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강관리, 자연·문화체험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치규약에 따른 자율적 생활 및 거주비용 분담
- 2018년 10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옛 무릉동분교에서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

- 사업 효과 및 의의

-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99.2%)가 입주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나아졌다고 응답²⁵⁾
- 공동체생활을 통한 老老케어, 귀농·귀촌체험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만족도를 증대

- 한계 및 문제점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집 대상이 공적연금 생활자(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생활자 등)로 제한적임



[그림 2-4] 은퇴자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

출처 :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 https://m.geps.or.kr/g_subsite/maeul/gallery-prof.jsp
(검색일: 2021.08.02.)

23) 정태경. (2020). 신아일보. 공무원연금공단-예산군,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업무협약 체결. 2월7일자 기사.

24) 곽대경. (2021).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입주자 50%가 귀농·귀촌해. 3월 10일자 기사.

25) 좌승훈. (2020).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99% 삶의 질↑. 12월 22일자 기사.

□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 개요
 -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 보행사고가 많은 지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맞춤식 개선사업을 시행²⁶⁾
 - 운동능력이 감소한 고령자들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²⁷⁾ 설치, 보행신호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 대상 및 범위
 - 청량리 경동시장로(동대문구),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구), 돈암제일시장앞(성북구) 등 노인보행사고가 많은 6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
- 주요 사업내용²⁸⁾
 - (동대문구) 경동시장로는 다수의 시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 거리로 많은 방문객과 차량 간 상시 접촉사고가 발생
 - 차도를 줄여 보도를 폭2.7m로 확대하고, 노인보행자와 차량을 방호울타리로 분리시키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사업 시행 이전 대비 노인 보행사고율이 75% 감소
 - 시장 상인들 또한 새로 조성된 보행공간에 상가물건 등을 내놓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보행안전에 동참²⁹⁾
 -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교차로는 지난 3년('17-'19)간 총 6건의 노인보행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개선사업을 통해 교차로 내 교통섬과 보도사이의 우회전 차로를 보도로 메꾸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
 -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함으로써 교통 환경이 유사한 간선도로 교차로 보행사고 개선 사례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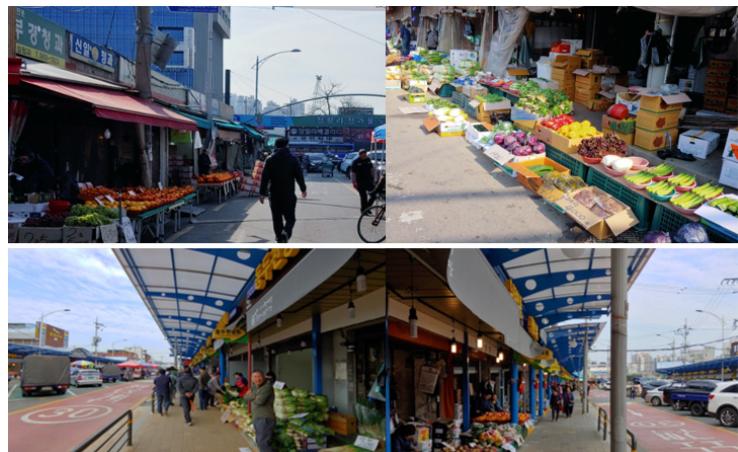
26) 이지윤. (2020). 서울시,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후 사고 46%↓…올해 10개소 추진. 6월 22일자 기사.

27) 보행로보다 낮은 높이의 일반적인 횡단보도와 달리 고속방지턱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19615Y>, 검색일: 2021.07.15.)

28)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310>(검색일: 2021.07.15.)

29) 이연숙. (2019).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다발 구역 개선 공사 완료. 11월 22일자 기사.

- (성북구) 돈암제일시장 앞 동소문로는 시장과 먹자골목, 지하철역 등으로 혼잡한 지역이었으나 개선사업을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및 신호횡단보도, LED 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설치
- 동소문로는 지난 3년(17~'19)간 총 10건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는 노인보행사고가 대폭 감소
- 사업 효과 및 의의
 - 노인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사업 시행 이전 대비 노인보행 사고율 46.1% 감소('19년 1~5월, 13건 / '20년 1~5월, 7건)
 -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크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노인 보행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 1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
- 한계 및 문제점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시장 주변 이외에도 주택가나 역·터미널, 경로당과 같은 노인시설 주변 등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



[그림 2-5]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개선 전·후

출처 : NWN,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05>(감사일 2021.07.20.)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서울시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 개요

-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시설이 아닌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995년 정부에 의해 시작³⁰⁾
-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함께 사회적 교류가 미비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일상생활 경비를 절감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 주거공간을 제공

• 대상 및 범위³¹⁾

-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과 및 공동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총 38개소(72명)가 운영되고 있으며('21.1 기준)
26.2m²~120m² 정도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이 공동거주

• 주요 사업내용

- 가정방문 및 생활상담, 가족모임, 후원물품 등 일상생활 지원, 주거안전점검, 문화생활지원 등

• 사업 효과 및 의의

-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로 영역을 확대
-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거환경과 통합적 장기요양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로서 작용 가능

• 한계 및 문제점

- 거주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체계화 되어있지 않음³²⁾
- 관리·운영 측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운영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기간 장기화로 단순히 거주공간만 제공하는 것 이상의 돌봄 서비스 요구됨

30) 김유진. (2016). p.4.

31)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33> (검색일 : 2021.06.07.)

32) 공동거주를 원하는 경우, 자치구 담당부서와 주민 센터에 신청 후 결원여부와 자격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서울시 금천구 안심공동 보린주택

- 개요³³⁾
 - 서울 금천구는 지하·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원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시
 - 고령입주자 특성에 맞는 집이 건축되면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이 주요 목적
- 대상 및 범위
 - 입주 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단독가구, 독립된 주거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에 한해 주어짐
 - 다세대 주택으로 연면적 431.8㎡, 지상 6층, 16세대 규모의 흘봄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임대주택³⁴⁾
- 주요 사업내용
 - 주거 공간, 공용 공간(공동취사, 빨래 등), 커뮤니티 공간, 옥상(텃밭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노인정 등)은 1층에 위치하여 거주자 및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여가 및 복지 프로그램들을 진행
 - 지역사회에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얻은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을 완화
- 사업 효과 및 의의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고독사 방지, 공동취사 등 공간 공유, 공동거주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화,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달리,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서울주택공사,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수요계층을 파악하고 지역에 밀착된 공동체주택을 공급³⁵⁾

33) 서울특별시 공동체플랫폼 홈페이지,<https://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jsessionid=E162C4614CD1BEDBA00F33BC82ED8436?homeType=&homeCode=10001281> (검색일 : 2021.06.07.)

34) 박미라. (2014). 흘봄어르신들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실시. 8월 11일 기사.

35) 신유진, 이연숙. (2018). p.56.

- 무장애 설계 및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신체적 기능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교류관계가 중요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단위세대의 계층별 혼합은 시도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계획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³⁶⁾



[그림 2-6]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

출처 : 컨슈머와이드,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2>
(검색일: 2021.07.15.)

36) 신유진, 이연숙. (2018). p.56.

□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³⁷⁾

- 개요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개인별 맞춤형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에서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개인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대상 및 범위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함

- 전용면적 평균 34.9㎡로 서울시는 '20년 ~'22년까지 총 190가구를 공급 할 계획

- 주요 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맞춤형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편의 향상, 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설계(출입문 유효 폭 확충, 단차제거 등), 미끄럼 방지(화장실 바닥 경사 제거, 미끄럼방지 마감재 사용 등)

- 주거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병원 등행과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등 입주자별 특성 및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 사회·여가생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프로그램, 원예, 서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활력을 위한 생활환경 도모

- 사업 효과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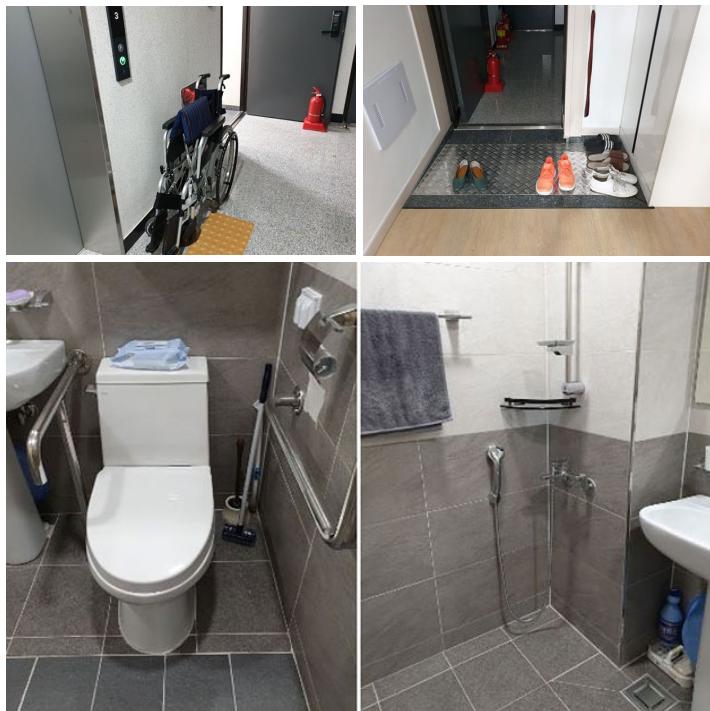
- 돌봄·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본인의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Aging in place)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의료관리를 제공하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37)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6616>(검색일: 2021.06.07.)

- 한계 및 문제점

- 보건, 의료 등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상황
-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구축을 통해 주거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돌봄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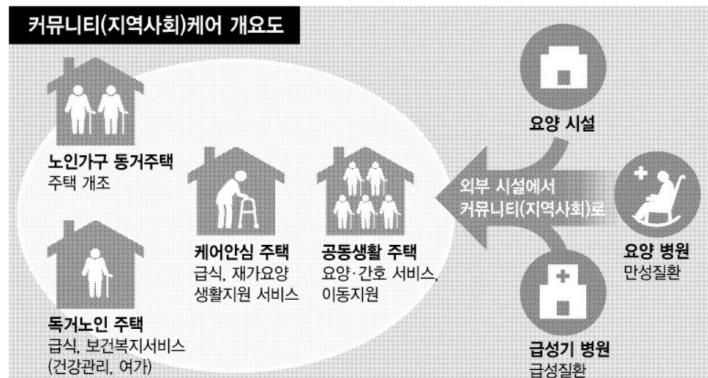
[그림 2-7] 노인지원주택 내부 시설(위: 승강기 및 단차제거, 아래 : 욕실 내 안전시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9034> (검색일: 2021.06.09.)

□ 경기도 성남시 위례 공공실버주택(케어안심주택)

- 개요

-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의 대표적 사례³⁸⁾로서 국내 첫 공공실버주택
- 저층부(1,2층)에는 복지관, 상층부 주거공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³⁹⁾



[그림 2-8] 커뮤니티(지역사회)케어 개요도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870997.html> (검색일: 2021.06.17.)

- 대상 및 범위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의 9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으로 구성
- 기존에 건설 중인 위례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1개동을 공공실버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⁴⁰⁾

- 주요 사업내용

- 주택 164세대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이 함께 설치되어, 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어르신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⁴¹⁾

38)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interviewView.do?newsId=148856689> (검색일 : 2021.06.14.)

39) 배성호. (2018). 성남위례실버주택, 시설도 운영도 독거노인 맞춤형 주택. 5월 18일자 기사.

40) 이운주. (2016). 국토부,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첫 입주자 모집. 3월 28일자 기사.

- 주택은 전용면적 26m² 규모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⁴²⁾
- 전반적으로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체크하며 크게 자립형과 반자립형, 의존형으로 그룹을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⁴³⁾
- 사업 효과 및 의의
 - 동작감지 센서등,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마감재 등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치가 주거 공간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⁴⁴⁾
 - 주거와 함께 적절한 재가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복지·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동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지원
 - 주택 공급 위주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보다 종합적인 지원 가능
- 한계 및 문제점
 - 성남위례를 비롯하여 22개 지역에 2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나, 노인 수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



[그림 2-9] 공공실버주택 예시도

출처 : 국토교통부(2016, 7월 4일 보도자료)

41)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1&ss=1&pid=8127#.YMsJEOAzaUk> (검색일 : 2021.06.14.)

42) 이운주. (2016). 국토부,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첫 입주자 모집. 3월 28일자 기사.

43) 노인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자립형 어르신들의 자립을 지원, 반자립형 어르신들을 위한 원예치료 도입 및 의존형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재가서비스 진행

44) 이승호. (2018). 공공실버주택 가보니 “로또 맞은 것 같다”는 어르신들. 11월 21일자 기사

3) 돌봄, 재가, 의료, 상업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⁴⁵⁾

-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2년 간 실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케어플랜 수립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질환 및 약복용 약물을 관리, 건강상태 모니터링, 식이·영양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며 의료분야 지원 강화

- **대상 및 범위**

-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
-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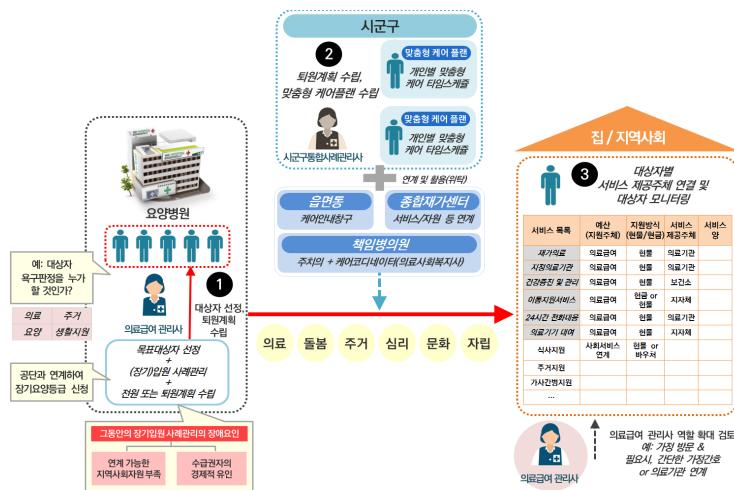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후 퇴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역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
-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 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
- 또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리
-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을 지원
-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

45) 임민혁. (2019). 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3월 13일자 기사.

• 사업 효과 및 의의

- 기존에는 의료·돌봄·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제공돼 실질적으로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
-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급여제도와 달리, 지역사회 지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
-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



[그림 2-1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흐름도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819>
 (검색일 : 2021.06.14.)

□ 경기도 양평군 유헬스(U-health)존

- 개요

- 주민이 일상 속에서 혈압, 체성분 등을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 의료와 IT를 접목한 것으로 의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 시스템

- 대상 및 범위

- 군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공간 내에 유헬스센터 및 유헬스 로드를 설치(양평군 내 갈산공원 유헬스로드 및 쉬자파크 유헬스로드)
-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뇌출증과 성인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건강측정(체성분, 혈압, 혈당) 부스와 갈상공원 및 쉬자파크 내 걷기구간에 유헬스 체크풀을 설치하여 칼로리 소모량 및 보행수를 확인
-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방문객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사업 효과 및 의의

-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복지 인프라'로 평가



[그림 2-11] 양평군 내 6개 헬스존

출처 : 양평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yp21.go.kr/health/contents.do?key=1899>
(검색일 : 2021.06.18.)

□ 서울시 고령친화 비즈니스 시범사업

- **개요**
 - 고령친화 비즈니스는 지역 상점에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연령에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점은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⁴⁶⁾
 - 서울시는 일정 지역사회의 상점을 고령친화적인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동작구 성대시장과 은평구 신응암시장, 종로구 허리·송해거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⁴⁷⁾
- **대상 및 범위⁴⁸⁾**
 -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다양한 민간 기관(운영 및 디자인 담당, 거점 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치 방식으로 진행
 -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주요 과업으로 함
 - 사업의 직접적 대상은 지역의 상점으로 지역별로 거점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와 주민 지역 활동가를 조직하여 해당 지역 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 홍보 및 상점 참여 독려
- **주요 사업내용⁴⁹⁾**
 - 상점시설 개선을 통해 노인 존중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어르신 친화상점'을 조성
 -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상점가의 문턱을 없애고 글씨를 크게 바꾸며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효과 및 의의⁵⁰⁾**
 - 시범사업 개입으로 주민의 지역사회 이미지, 공동체 의식 등 인식과 상점 이용 양상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세밀하게 밝혀짐
 - 기존 공공이나 비영리기관 중심이 아닌 영리 목적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 사업을 진행

46) 조재민. (2020). 고령친화 지역상점..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등 효과 다양. 7월 23일자 기사.

47) 허주희. (2017). 서울시, 어르신 불편없는 '고령친화마을' ... 118개 상점부터 시동. 9월 19일자 기사.

48) 정은하. (2020). p.40, pp.44-4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49)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10521> (검색일: 2021.06.18.)

50) 정은하. (2020). p.53, p.5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2-12] 락희거리 고령친화 상점 (위: 고령자 혜택표지판, 아래 : 고령친화간판)

출처 : 백세시대,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2>
(검색일 : 2021.06.18.)



[그림 2-13] 시흥시 고령친화 상점 (좌: 미끄럼 방지패드, 우: 휴식을 위한 의자)

출처 :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418>
(검색일 : 2021.06.18.)

□ 서울시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 개요

- 고령자의 상점시설 이용률⁵¹⁾에 비해 대다수의 상점들이 고령 고객의 종요성 및 그들의 욕구, 생활 패턴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지역 상점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⁵²⁾

- 본 가이드는 상점의 고령친화적 변화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적 상점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고령자 특성 등을 설명

• 주요 내용⁵³⁾

- (고객 안전성 확보) 출입문은 안전하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자동문을 설치

- 훨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 입구 및 통로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상점 입구 또는 상점 내부 계단을 최소화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며 계단이 있는 경우 손잡이나 안전장치를 설치

- 상점 내부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럼지 않도록 유지하며 바닥의 단차는 제거하거나 단차 사이에 미끄럼지 않은 경사로를 설치

- (고객 편리성 확보) 잠시 쉬거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나 공간 마련

- 깊고 일어날 수 있는 팔걸이 있는 의자를 제공하거나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좌식의 경우 별도의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

- 접근이 쉽고 안전이 유지되는 화장실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상품은 적당한 높이에 두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큰 글씨 등으로 알아보기 쉽고 읽기 쉬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

- (고령자 신체 특성 배려) 적절한 자연 채광 또는 인공 조명을 통해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출입구, 계단 등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

- 직접적인 조명이나 내외장재의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없도록 할 필요

- 상점 내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방음 벽 및 이중창 설치 등을 통해 외부의 소음을 최소화

51) 서울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시설로 병원 등의 의료 기관 다음으로 상점 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서울특별시, 2017, p.6.)

52) 서울특별시. (2017). p.6.

53) 서울특별시. (2017). pp. 16-17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과 한계

1) 법제도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 국토부·행안부·경찰청의 특정 공간범위 지정을 통한 고령자 주거환경 및 이동환경 개선

-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도로 이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구역, 보행우선구역을 지정 가능하며, 특정 도로와 보행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 고령자를 포함하여 주민에게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정비구역, 경관지구를 지정 가능하며, 열악한 주거환경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 복지부 중심의 특정 시설 마련을 통한 고령자 복지시설 개선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고령자 등의 일상적 편의시설 이용의 안전성·편리성 도모를 위해 BF 생활환경을 인증하고 조성함
-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일상생 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부·문체부·교육부의 고령자 생활양식 변화 도모를 통한 고령사회 대응

- 고령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여가활동·평생교육·건강생활 영위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시책을 마련함

□ 부처 간 소관 법률과 영역의 상이함으로 인해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특정 지역 대상의 종합계획 수립과 복합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복지부는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소관하고, 국토부 등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함과 동시에 보행 환경 개선을 담당하며, 문체부 등은 고령자의 활기찬 일상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상황임
- 도시지역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부의 시설·서비스, 국토부 등의 주택과 도로(보행로), 문체부 등의 생활양식은 결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시설의 용도를 담당하는 「국토이용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주택, 생활SOC, 고령자복지시설,

교통·보행 및 고령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종합 연계를 계획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소관 법률 및 담당 영역(건축·도시·보건·복지·여가·교육 등)의 상이함으로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계획과 사업추진이 어려움

[표 2-15]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법제도 특징 요약

법령	생활환경 조성의 단위	소관 부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내용
「도로교통법」	노인보호구역	경찰청	시설 중심 일정 반경(300~500m) 내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노인의 도로 이용 안전(교통사고 안전) 강화 시설을 설치
「보행안전법」	보행환경개선지구	행안부	(고령)보행자 통행량 및 빈도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령)보행자 통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
「교통약자법」	보행우선구역	국토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도로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
「도시재생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토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활성화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국토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
「경관법」	경관지구	국토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복지부 국토부	고령자 등의 안전·편리한 시설이용 도모를 위한 BF 시설 설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복지부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기관	복지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시설 설치 등
「지역보건법」	지역의료기관	복지부	(고령자를 포함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보건소, 건강센터 등을 설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기관	교육부	(고령자를 포함) 국민의 평생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여가활성화법」	여가활동	문체부	(고령자를 포함) 국민 여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여가시설과 공간 개선과 확충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	문체부	(고령자를 포함)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생활	복지부	(고령자를 포함)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시책을 시행

출처 : 본 보고서 pp.20-38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요약 작성

2) 국내 사례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 다양한 고령자 계층의 폭넓은 이용이 가능한 고령친화 시설 및 장소의 조성과 보건·복지 돌봄서비스의 연계성이 중요

- 경기도 카네이션 마을은 보행, 교통, 주거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 노인의 집은 공동거주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성 부족을 지적
- 인천 마리스텔라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자공동체마을의 경우 특정 종교인 또는 공적연금 생활자만을 위한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조성
-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성남시 위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과 복지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모든 고령자가 함께 누리는 생활환경이기 보다는 입주 고령자만을 위한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조성

□ 지역사회 지속거주와 재가생활을 지원하며 지역 거주 고령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

- 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경기도 양평군 유헬스존은 재가생활을 유지하며 기본적 보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여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지원
- 서울시 고령친화 비즈니스 시범사업과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보급은 지역 거주 고령자 모두가 이용하는 주요 상업시설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

□ 국내 자체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는 종합복지관 조성과 일부 서비스 연계, 특정 고령층 대상의 시설입주자를 위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의 한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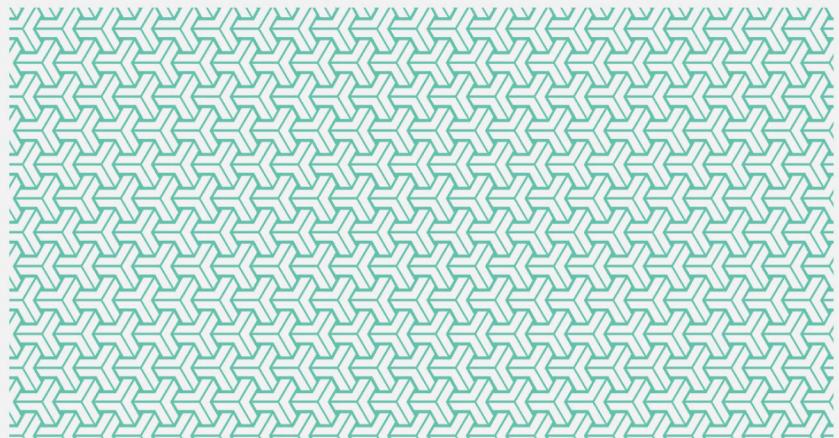
-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주거단지화하여 특정 계층, 특정 입주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
- 복지부의 재가복지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등에서 보편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을 엿볼 수 있음
- 국토부, LH의 고령자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사업 등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한정적 서비스 연계를 실현 중임

[표 2-16]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특징 요약

사업명	지역	사업 주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내용
카네이션 마을 조성사업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일대	경기도	고령자의 이동 편의·안전성을 도모하는 보행·교통·주거 부문사업 실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전북 김제	김제시	복지사업(교육, 노후설계 등), 돌봄사업(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건강활동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시행
마리스텔라	인천광역시	천주교 인천 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주거, 여가 등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테마파크 형식의 통합적 공간·서비스를 제공 · 단지 내 전문요양원, 대학병원(의료), 편의시설, 스포츠 시설, 신양생활을 위한 공간 등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전국 8개 지자체	공무원 연금공단	귀농·귀촌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강관리, 자연·문화체험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 제공, 자치규약에 따른 자율적 생활 및 거주비용 분담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동대문구, 성북구 등 7개소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행사고 취약지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신호 확대, 보차분리 및 보도 폭 확대, 보행섬 조성 등
노인의 집	서울시 18개 자치 구	서울시	가정방문 및 생활상담, 가족모임, 후원 물품 등 일상생활 지원, 주거안전점검, 문화생활지원 등
보린주택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고독사 방지, 공동취사 등 공간 공유, 공동거주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화,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
노인지원주택	양천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맞춤형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편의 향상, 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설계(출입문 유효 폭 확충 등), 미끄럼 방지(화장실 바닥 경사 제거, 미끄럼방지 마감재 사용 등)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병원 동행과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등
케어안심주택	성남위례	성남시,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치가 주거 공간 내 곳곳에 설치(동작감지 센서등,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마감재 등) · 자립형과 반자립형, 의존형으로 그룹을 나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입원 필요성이 낮고 재가생활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유헬스 (U-Health) 존	경기도 양평	양평군	· 주민이 일상 속에서 혈압, 체성분 등을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계층에 혜택 제공이 가능
고령친화 비즈니스 시범사업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민간 기관 등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점에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연령에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상점가 문턱 제거, 글씨 크기 확대, 지팡이 거치대 설치 등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	서울시	상점의 고령친화적 변화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적 상점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고령자 특성 등을 설명

출처 : 본 보고서 pp.39~60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요약 작성

제3장 일본과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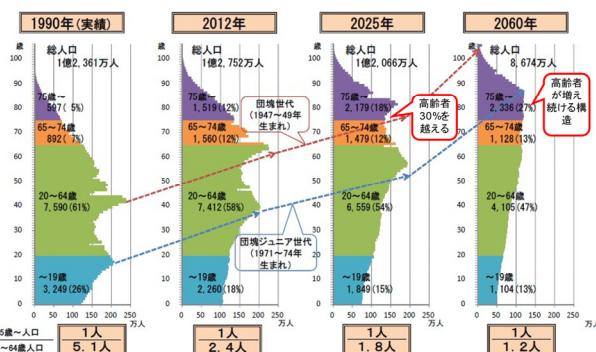
1.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2.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3. 소결

1.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 일본 고령사회 대응 현황

□ 일본 고령인구 증가 및 문제점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에 7%를 넘어섰으며, 24년만인 1994년에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도달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⁵⁴⁾
 - 2020년에는 고령 인구가 3,617만 명(고령화율 28.7%)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⁵⁵⁾, 2040년까지 80세 이상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여 결국 고령화율이 2060년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⁵⁶⁾
 - 생산연령인구(20~64세)와 고령인구를 비교해 보면 2025년에는 생산연령 1.8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반면, 2060년에는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
 - 또한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자 중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급증



[그림 3-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추이

출처 : 総務省「国勢調査 人口推計」;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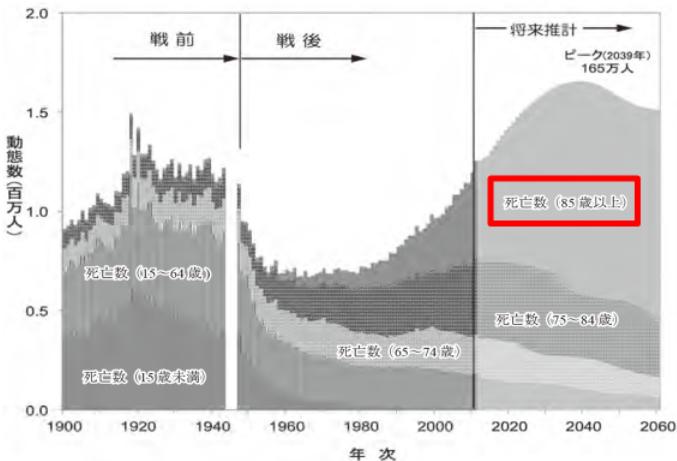
54) 内閣府 2020 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0/html/zenbun/s1_1_1.html(검색일 : 2021.06.15.)

55) 総務省統計局, <https://www.stat.go.jp/data/topics/pdf/topics126.pdf>(검색일 : 2021.06.15.)

56) 総務省統計局,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eki/whitepaper/ja/h25/html/nc123110.htm>(검색일 : 2021.06.15.)

- 현재에도 일본의 연간 사망자 중 85세 이상 비율은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2039년에는 6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⁵⁷⁾

年齢別死亡数の歴史的推移



[그림 3-2] 일본의 연령별 사망자수 추이

출처 : 金子隆一. (2016). p.87.

-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에 의해 지탱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1인당 고령자 부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연령 약 1명이 부양하게 되어 의료와 개호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급여와 부담의 균형 붕괴 예상
 - 사회보장급부비의 90%를 차지하는 연금과 의료, 개호는 주로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고령자에게 급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각 보험재정의 경색을 초래
 - 지금까지 부담 인상과 급부 인하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이 방법으로 세대 간 부양의 보험재정을 만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 개혁이 필요

57) 金子隆一. (2016). pp.76-93.

□ 고령사회에 대응한 커뮤니티의 중요성

- 다양한 지역과제
 - 21세기 '건강한 일본'을 위해서는 기반적 기능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 재생을 통해 주민, 특히 젊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고 생활하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①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②주민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③중심시가지에 활력과 정취가 넘치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필요

[표 3-1] 지역 유형별 과제

구분	주요 내용
도시지역 (3대 도시권, 지방중핵도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가 많아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장기정착인구 및 거주자의 주간인구는 적으며, 지역적 유대나 공통적인 가치관은 희박하거나 전혀 없는 지역- 특정한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는 생성하기 쉬움
중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인 유대는 비교적 강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지역적 유대가 서서히 희박해지고 있음-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의 안정에 고전하고 있으며 과소화가 진행 중인 지역도 있음
과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촌이 많으며, 지역적인 유대는 비교적 강하지만 지역경제의 축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커뮤니티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출처 : 동경대학교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OG)와의 협동연구세미나(2021.08.05)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일본 정부의 노력 및 대응⁵⁸⁾

-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정부주도 하에 고령화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세대의 활약추진을 5개 분야⁵⁹⁾로 나누어 추진
 - 기본적 구조는 2005년에 시행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따라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고령사회대책의 종합적 추진 및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58) 内閣府「高齢社会対策基本法」, https://www8.cao.go.jp/kourei/measure/a_4.html
(검색일 : 2021.06.1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59) 취업 및 소득 분야, 건강 및 복지 분야, 학습 및 사회참여 분야, 생활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분야

- ‘모든 세대의 활약추진’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고령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각 분야에서는 ‘일본 1억 총활약 계획’, ‘근로방식개혁 실행계획’,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는 것을 규정

[표 3-2] 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취업 및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산형성 등의 지원과 시책
건강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의 운영과 개호서비스의 충실(개호 이직 제로실현), 인지증(치매) 고령자 지원과 시책
학습 및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 촉진, 사회참여 활동 촉진 등을 도모 - 고령사회의 과제와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둡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봉사 등 사회봉사와 관련하는 활동을 하거나 고령자와의 교류 등을 포함한 체험활동을 추진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롭고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와 고령사회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교통안전의 확보와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등을 실시
연구개발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활용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활성화와 연구개발 등의 추진과 기반정비, 여러 외국과 의견과 과제 공유 등 - 특히,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고령자 특유의 질병과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의료, 재활치료, 개호 관련 기기 등),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

출처 : 동경대학교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IOG)와의 협동연구세미나(2021.08.05)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① 특정 마을·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 : 초고령사회 대응 마을 만들기 종합 전략

-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민관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과제 해결형 실증연구인 액션 리서치를 지역 내에서 추진
- 활동의 주요 목적은 활력 있는 초고령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구상 및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사회에서 구현·보급하는 것임
- 도쿄대학의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IGO, Institute of Gerontology)⁶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션 리서치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다세대 교류도 진전된 고령사회 대응 마을 만들기를 지역 내에서 실천

Gerontology ジエロントロジー (総合老年学)



[그림 3-3] 종합노년학 연구기구 및 액션 리서치

출처 : 동경대학교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IGO)와의 협동연구세미나(2021.08.05)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내용

-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과제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지역 커뮤니티 모습을 지역 사람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

60) 통칭 '종합노년학(Gerontology) 연구기구'로도 불리며 고령자 및 고령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학문 영역을 다룬다.

- 사회실험적 현장연구인 액션 리서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조금씩 지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활동으로 연계되는 활동

- 액션 리서치는 활력 있는 초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3요소로써 ①건강 자립수명을 최대화하는 지역생활환경의 정비(Healthy Ageing), ②마지막까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케어시스템과 지역생활환경의 정비(Ageing in Place), ③고령자도 일하고 활동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생활환경의 정비(Social Inclusion)를 제시

액션 리서치 주요 추진 내용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의 물질적·사회적 생활 인프라, 일상생활권 공간구성을 위한 표준모델 연구개발
- 고령자의 쓰러짐/골절의 실태분석에 따른 예방대책 및 사후대책 검토
- 지역활동의 주민 주체적 전개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주민 주체적인 포괄적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프로세스 디자인
- 고령자의 사회참가, 사회활동, 취업기회를 증진하는 구도의 개발과 시책화

図6. 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のアクションリサーチ『Aging in Place』



[그림 3-4] 도쿄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의 액션 리서치

출처 : 동경대학교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IOG)와의 협동연구세미나(2021.08.05)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배리어 프리 : 건물 내, 건물 간의 모빌리티 확보⁶¹⁾

- 배리어 프리법의 개요
 - 현재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배리어 프리법에 근거하여 건축과 도시환경에서의 배리어 프리 정비를 추진
 - 배리어 프리법은 크게 ①공공교통과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 ②지역의 중점적 및 일체적인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 ③마음의 배리어 프리 추진으로 구성

[표 3-3] 배리어 프리법의 세부 추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공교통과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한의 배리어 프리 기준을 '이동 등 원활화 기준', 그보다 더욱 진전되고 바람직한 수준의 배리어 프리 기준을 '이동 등 원활화 유도기준'으로 설정- 2,000m² 이상의 특별 특정 건축물⁶²⁾의 신축 및 증축 등을 할 때에는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대한 적합의무가 부과되며, 2,000m² 미만 및 기준의 특별 특정 건축물과 특정 건축물⁶³⁾에는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대한 적합 노력 의무가 부과
지역의 중점적·일체적인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구와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적된 지구에서 공공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배리어 프리를 중점적이면서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촌이 기본구상⁶⁴⁾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 기본구상 책정 시에는 주민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참가한 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수이며 다양한 당사자에 의한 합의 형성이 가능
마음의 배리어 프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심신의 특성과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서로 지원해주는 것- 물리적 환경을 구축할 때의 장벽 제거만이 아니라, 애초에 장벽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요구

출처 : 国土交通省.. 建築物のバリアフリー化に係る制度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1198300.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61) 国土交通省.. 建築物のバリアフリー化に係る制度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1198300.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62)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주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63)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64) 기본구상이란 대상 지구(중점정비지구)의 배리어 프리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중점정비지구의 생활관련 시설과 이들을 잇는 도로와 차량의 배리어 프리화에 관한 사업을 규정한 것이다. 실시주체가 특정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각종 국고보조를 받기 용이하게 하는 등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 배리어 프리법 관련 가이드라인
 - 배리어 프리법에서 규정하는 개개의 배리어 프리 기준(이동 등 원활화 기준, 이동 등 원활화 유도 기준)은 복도나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은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것⁶⁵⁾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설계 시 필요한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때문에 실제 설계 시에 필요한 배리어 프리와 관련된 설계의 상세에 대해서는 배리어 프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가이드라인이 배리어 프리법 제정 후에도 계속해서 정비되어, 실제 설계의 현장에서 이용
 -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건축과 관련된 것, 공공교통의 여객시설 및 차량과 관련된 것,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것이 명시

[표 3-4] 배리어 프리법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건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에 배려한 건축설계표준 -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지 내 통로, 주차장, 건축물의 출입구 등, 건축의 기본적인 설계 요소에서 객실, 극장 등과 같은 특정 시설 종별에 요구되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배리어 프리 기준의 상세가 기술⁶⁶⁾
공공교통 여객시설 및 차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교통기관의 여객시설 및 차량과 관련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 - (여객시설 관련) 주로 역 등의 여객 시설의 출입구에서 차량 등에 접근하기 까지의 이동경로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가능한 한 단독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루트, 수단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의 정비방법에 대하여 기술⁶⁷⁾ - (차량 등 관련) 철도와 버스, 택시, 항공기에 배리어 프리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치수와 설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⁶⁸⁾ - 2021년 3월에는 공공교통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역무서비스의 제공방법과 기준을 나타낸 ‘공공교통기관의 역무 및 역무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이 개정
도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 - 2002년 교통 배리어 프리법의 제정을 계기로 도로 공간의 배리어 프리화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에 작성된 것으로, 도보의 폭원이나 보도와 도로의 단차의 높이, 입체 횡단시설과 버스정류장의 구조,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의 부설방법 등이 제시 -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5년에 개정되었으나, 그 후 배리어 프리법의 개정 및 사회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더 나은 개정을 위한 이용자 니즈의 히어링 조사 등을 실시

출처 : 国土交通省. 建築物のバリアフリー化に係る制度の概要. <https://www.mlit.go.jp/comon/001198300.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65)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화장실 표면은 미끄럼 방지로 마감되어 있는지 등

□ 건강, 의료, 복지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2014)⁶⁹⁾

- 고령자의 거주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따라 도시 공간 및 시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
- 국토교통성 도시조성 추진과, 도시계획과, 가로(街路)교통시설과의 3개 부서가 담당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술적 조언으로 작성

'건강, 의료, 복지 마을 만들기'를 위한 5가지 노력

- ① 주민의 건강의식을 높이고, 운동습관을 기른다.
- ②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높이고, 지역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③ 일상생활권역, 도보권역에 도시기능을 계획적으로 확보한다.
- ④ 거리 걷기를 촉진하는 보행공간을 형성한다.
- ⑤ 공공교통 이용환경 수준을 높인다.

□ 미래의 도쿄 전략 비전(2019)⁷⁰⁾

- 도쿄도 차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담은 20가지 비전을 제시
- 이 중 고령사회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비전4. 장수', '비전7. 커뮤니티', '비전 11. 도시 조성'이 있음

[표 3-5] 고령사회 관련 비전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4. 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이 100세 인생시대에 건강하게 활약하며 심리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도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강장수사회 도쿄모델'이 21세기 성숙도시의 이상적 모습으로 등장
비전7.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모일 수 있고 서로 지지하는 공간 · 커뮤니티가 도처에 존재하는 도쿄-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생활공간'이 공적 주택과 빙집 등을 활용해 다수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가 조성
비전11. 도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의 도시기능을 유지 · 강신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도쿄- 도시 내 곳곳에 존재하는 빙집 등은 점포,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유효하게 활용

출처 : 東京都. 「未来の東京」戦略ビジョン.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author53762/vision.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66) 2021년 3월 개정, 소규모 점포 내의 통로와 대형 베드의 사용을 전제로 한 화장실의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이 추가되었다.

67) 2021년 3월 개정, 철도역의 플랫폼과 차량 사이의 단차 및 틈의 축소에 관한 기술이 추가되었다.

68) 2021년 3월에 개정, 도시 간 철도의 휠체어 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의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69) 国土交通省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https://www.mlit.go.jp/common/001049456.pdf> (검색일: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70) 東京都. 「未来の東京」戦略ビジョン.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author53762/vision.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② 특정 시설·공간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생활보호법⁷¹⁾

• 배경 및 목적

-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다음 해인 1946년, 구 생활보호법이 제정⁷²⁾되어 처음으로 요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가 국가의 책임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음

- 생활보호법 안에서 고령자 보호시설로 양로시설, 구호시설, 간호시설, 의료보호시설, 수산(授産)시설, 숙박소 제공시설 등 6개 종류의 시설이 규정

• 주요 내용

- (양로시설) 전후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첫 거주시설로써, 노쇠로 인하여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요보호자를 수용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

- (구호시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요보호자를 입소시켜 생활부조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써, 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소시설

□ 노인복지법⁷³⁾

• 배경 및 목적

- 1963년, 고령자의 증가와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 등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를 계기로 노인복지법이 제정

- 노인복지법 하에서 재택복지제도와 고령자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유료노인홈,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 홈 등이 있음

• 주요 내용

- (유료노인홈) 입주 고령자에게 입욕, 배설, 식사의 제공 및 개호, 또는 그 밖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설치 주체의 제

71) 厚生労働省. 生活保護法.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048000&dataType=0&pageNo=1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72) 이후 구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50년에 생활보호법이 시행

73) 厚生労働省. 老人福祉法.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111000&dataType=0&pageNo=1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한은 없으며 설치 시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 (양호노인홈) 65세 이상으로 환경 및 경제적 이유로 주택에서 양호를 받기 어려운 자를 입소시키는 시설로 원칙적으로 입실 정원은 2명 이하(1973년 이후에는 개인실화 권장)
- (특별양호노인홈) 65세 이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주택에서 이를 받기 어려운 자를 입소시키는 시설
- (경비노인홈) 입주 고령자에게 무료 또는 저가의 요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
- (케어하우스) 경비노인홈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입주는 전제로 하지 않았으나,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계획⁷⁴⁾'에 의해 가족에게도 움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입주시키는 시설로 케어하우스가 창설
- (도시형 경비노인홈) 도시부의 고령자 시설 입주비용의 고액화 및 그에 따른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확보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창설

□ 고령자 주거환경법 (구 고령자 주거법)⁷⁵⁾

- 배경 및 목적

-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료·개호 사업과의 연계 부족, 행정 지도감독의 불충분 등의 문제를 지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고령자 주거환경법(구 고령자 주거법)을 개정하고, 새롭게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제도를 창설

- 주요 내용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이란, 주택, 서비스, 계약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등록하는 주택을 의미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은 바닥 면적이 한 집당 원칙적으로 25㎡이상이며 배리어 프리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안부 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 장기입원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74) 무료 또는 저액의 요금으로는 신체 기능의 저하 등으로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75) 国土交通省.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https://www.mlit.go.jp/common/001267551.pdf>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 보증금·임대료·서비스 대가 이외의 금전을 징수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제시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신축에 대해서는 시한부로 소득세, 범인세, 고정자산세 등의 경감이 인정되는 등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약 26만 7천호가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으로 등록(21.4.기준)⁷⁶⁾

③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노인보건법⁷⁷⁾

-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가 되자 몇몇 지자체에 의해 고령자의 의료비 무상화 시책이 실행되었으며 1969년에는 도쿄도, 1973년에는 국가 전체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의료비가 무상화되었음
 - 의료비 전액부담에 대한 부담과 고령자의 장기 입원 증가 등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2년에 노인보건법을 제정

- 주요 내용

- 노인보건법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의 본인 부담제를 도입
 - 1983년에는 노인 병원을 의료법상의 특례허가 노인 병원으로 지정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배치를 줄이고, 개호직원을 많이 배치하는 등 개호기능을 강화
 - 1986년, 의료시설에서 퇴원한 환자의 가정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인보건시설이 창설되었으며 재활, 간호, 개호, 의료적 케어를 제공
 - 또한 1992년에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요양환경을 갖춘 병상으로 요양형 병상군이 창설

76) 一般社団法人 · 高齢者住宅協会. https://www.satsuki-jutaku.jp/past_data.html (검색일 : 2021.06.15.)

77) 厚生労働省. 老人保健法の施行について.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3955&dataType=1&pageNo=1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개호보험법⁷⁸⁾

- 배경 및 목적
 - 1997년에 제정된 개호보험법의 주요 목적은 시설 개호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개호를 유도해 세수가 감소하는 행정에 의한 시설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임
 - 일본의 고령자 개호에 관한 과제는 입소계의 고령자 시설을 주축으로 하면서 조금씩 재택 개호 서비스를 내실화해 나갔으며,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법은 이 흐름을 크게 변화시킴
 - 2005년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지역 만들기나 주거환경조성 영역, 고령자 개호 및 복지 영역에 큰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⁷⁹⁾’이라는 개념이 창출
- 주요 내용
 - 고령자 시설 중심의 노후 생활이라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중심에 주택을 두고 고령자가 지역 내 자택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주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주목과 함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지구 요건으로 ‘대략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상생활권역’을 단위로 상정할 것을 제시
 - 또한 고령자 시설에 대한 입주가 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계약에 의한 입주로 크게 전환되었으며 고령자 시설의 일부가 개호보험제도에 근거한 시설(개호보험시설)로 재편⁸⁰⁾

78) 厚生労働省. 老人保健法の施行について.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3955&dataType=1&pageNo=1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79)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가능한 한 익숙하게 생활하는 지역에서 나다운 생활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의 포괄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체계

80) 구체적으로는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이다. 개호노인보건시설은 노인보건시설이 바뀐 것이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은 의료형 병상군의 일부로 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에게 개호 및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호요양병상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2001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요양형 병상군과 특례허가노인병원이 재편되어 요양병상(의료요양병상)으로 단일화되었다.

□ 개호보험제도⁸¹⁾

- 배경 및 목적
 - 개호보험제도는 2006년에 개정되었으며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에 익숙해진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창설
- 주요 내용
 - 기본적으로는 시정촌(市町村)에 지정된 개호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지증 고령자 그룹 흡도 이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포함
 - 또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가 창설되었으며 소규모 시설로의 왕래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숙박,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도 제공,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와 해당 개호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2년에는 방문 개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모두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창설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로 명칭이 변경

□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 사회보장제도⁸²⁾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일정한 주기로 개편되어 왔으며 고도경제성장기인 1960~70년대에는 국민 전체를 커버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목표로 전국민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제도 확충
 -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급부비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노인보건제도·기초연금 창설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배경을 반영한 시책이 시행
 -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등의 변화에 따라 200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실시

81)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gaiyo/index.html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82)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479.html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균형, 급부와 부담 균형 및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이념에 근거해 연금, 개호보험, 의료 등 각 제도에 대한 개편이 매년 1개 부문씩 실시

[표 3-6] 사회보장 관련 제도 구축 시 기본 이념

구분	주요 내용
사회보장의 바람직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일 것 -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공평성을 고려한 제도일 것 -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한 제도일 것 - 사회보장시스템 전체에 입각한 통합적 제도일 것 - 지역 간 격차를 최대한 배제하는 제도일 것
제도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하게 복잡한 제도가 아닌 간소한 제도일 것 - 재원이 안정적인 제도일 것 - 국민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는 제도일 것 - 제도의 재검토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를 의무화할 것
국민적인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의 급부 및 부담에 대한 사고방식을 포함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얻은 제도일 것

출처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479.html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의료보험제도⁸³⁾
 -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75세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가입했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로 이동
 - 그 결과, 보건사업의 실시주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으로 이동하게 되어, 74세까지의 국민건강보험보건사업과 75세 이상의 고령자보건사업이 지금까지 적절하게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보건사업과 개호예방사업의 주체가 달리⁸⁴⁾ 고령자의 건강지원에 대해 질병예방과 생활기능유지(노쇠예방, 개호예방 등)의 두 가지 측면에 걸치는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황이나 생활기능 과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
 - 지금까지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 보건사업은 건강진단이 중심이었으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사업의 사고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지침이 부재

83)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hoken/iryouhoken01/index.html (검색일 : 2021.06.1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84) 고령자보건사업은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이 주체가 되는 반면, 개호예방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였다.

3)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① 특정 마을·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UR(구 일본주택공단), 토요시키다이단지 재건축사업(2004~2018)⁸⁵⁾

• 주요 내용

- 가시와역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 단지는 구 일본주택공단(현 UR도시기구)이 의해 1964년부터 관리를 시작한 4,666호로 이루어진 대단지이며, 약 32ha(4,666호)의 대규모 단지로 완성
- 도요시키다이 단지 및 주변 지역은 ‘고령사회의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 방식 및 도시의 존재 방식’을 가시와 시·도쿄대학·UR의 3자가 논의, 실천 하는 장소로서 자리매김
- 주요 목적은 ①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친숙한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택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살 수 있는 체제 조성, ②고령자가 언제까지나 활발하고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취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1기 구역) 특별 양호 노인홈 ‘고히쓰지엔’이 2011년 개설되었으며 특별 양호 노인홈 외 쇼트스테이, 그룹홈, 일상 서비스 등을 제공
- 시설에서는 삶의 보람을 위한 취로 시책도 힘쓰고 있으며, 지역 고령자가 유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일자리 공여 형태로 노동
- (2기 구역) 가시와지역 의료 연계 센터가 2014년 개설되었으며 1층에 가시와시 복지부문, 2층에는 3개 의사회(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제사회)의 사무소가 위치



[그림 3-5] 토요시키다이단지 재건축사업

출처: UR都市機構 https://www.ur-net.go.jp/rd_portal/urbandesign/project/danchiseiki/toyoshikidai01.html
(검색일 : 2021.07.28.)

85) UR都市機構 https://www.ur-net.go.jp/rd_portal/urbandesign/project/danchiseiki/toyoshikidai01.html
(검색일 : 2021.07.2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② 특정 시설·공간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DIY 주택'

- 주요 내용

- 'DIY 주택'은 2019년 2월부터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와 주식회사 카자 르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지 내 DIY 공방 겸 커뮤니티 공간
- 단지 안팎의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 지역 및 다세대의 유대를 형성하며 지역의 활기찬 교류거점으로 작용
- 단지 내 주거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시책이며, 은퇴한 장년층 남성의 활약으로 단지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지원을 실현

□ 오무타시 미나미타치바나 주택 재건축 사업⁸⁶⁾

- 주요 내용

- 일본의 공영주택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의 2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광역의 하우징 요구에 따라 공급되는 반면 후자는 지역의 세밀한 요구에 대응하여 설치
- 따라서, 자치단체의 결의만 있으면 좀 더 자유도가 높게 공영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이 가능
- 미나미타치바나 주택에서는 시영주택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할 때 임여부지에 케어타운이라는 고령자 복지시설을 유치
-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동주택을 지어 부지 내에서 단지를 형성했으며 이를 위해서 특별양호동, 소규모 다기능동, 관리동, 지역교류 거점동으로 이루어진 동 분류형식을 채용
- 각 동 사이에는 통과도로를 설치하여 지역 사람들이 가볍게 산책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에는 작은 현관을 두어 하나하나를 주택 형식으로 조성

86) 긴기대학 거주복지연구실 홈페이지, https://www.yamaguchi-lab.org/?page_id=3261
(검색일 : 2021.07.2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③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개호예방사업⁸⁷⁾

- 개호예방사업과 문제점
 - 개호예방의 개념은 2006년 법 개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도입되었으며 각 지역에서는 ‘1·2차 예방사업’이 실시
 - 2차 예방사업에서 설정한 수치목표와 달리 사업 참여율은 0.8%로 저조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효과를 본 고령자의 사례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활동성이 낮은 생활로 되돌아감에 따라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
 -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교류 기회가 충분히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교류로 이어지게 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고령자 보건사업과 개호예방의 통합적 실시
 -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해당 제도는 기존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노쇠 건강검진⁸⁸⁾을 포함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시점에서 해결책 제시가 가능
 -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라면, 이들이 지난 질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상황도 동시에 평가하면서,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행정기관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행정기관이 모임활동이나 환자모임 참여라는 지역과의 유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고령자 담당부문, 일반 개호예방사업, 중증화 예방사업, 기초지자체 생애학습부문이 실시하는 사업(생애학습강좌, 보양시설 이용촉진사업 등), 개호서비스(식사택배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의료종사자는 각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러한 지역 자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서 지역 단위로 연계할 필요

87)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yobou/index.html (검색일 : 2021.07.2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88)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고령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후기고령자용 건강상태 진단 질문표

□ 재택의료⁸⁹⁾

- 재택의료의 배경 및 목적
 - 1992년 주택을 의료법상 의료제공 장소로 지정하고 재택의료를 추진하였으며, 재택의료는 ‘치료⁹⁰⁾하고 지원하는 의료’를 의미
 - 재택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요양생활을 지원하는 재택개호 등 많은 전문 인력을 통한 기동력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직종 협동, 지역연계를 재택의료의 조건으로 하는 근거이기도 함
 - 2000년에는 재택요양을 지향하는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의료개호 종합확보추진법에 따라 ‘생활이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 까지’를 내세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

[표 3-7] 재택의료의 4단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이행기	본인과 가족이 요양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세밀한 관여가 요구된다.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불안정한 증상을 가진 차로 퇴원하는 경우 ‘특별방문 간호지시서’ 등을 활용하여 “안정재택요양착지”를 지원한다.
2단계: 요양생활기	본인과 가족, 시설의 개호자도 실제로 자택이나 시설에서 요양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재택 이행 후에도 안정된 요양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탈수나 넘어짐 등 외상에 주의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그 사람다운 생활을 안정된 상태에서 길게 지속할 수 있다.
3단계: 급성기	발열이나 골절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시, 치료를 재택에서 계속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재택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입원에 따른 생활장애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재택의 우위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4단계: 임종기	임종기 고령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재택의료의 큰 역할이다. 치료를 통한 개선 여지가 없으면 그대로 재택인 상태에서 임종까지 간호하게 된다. 의료자와 본인, 가족, 개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유지하고, 신뢰관계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341065.pdf>

(검색일 : 2021.07.2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89)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341065.pdf>
(검색일 : 2021.07.28.)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90) 여기서 ‘치료’는 병세를 완화하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근치료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지원’이란 살아가는 모습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보람을 지원하고, 생활을 지원하며 임종을 포함하여 인생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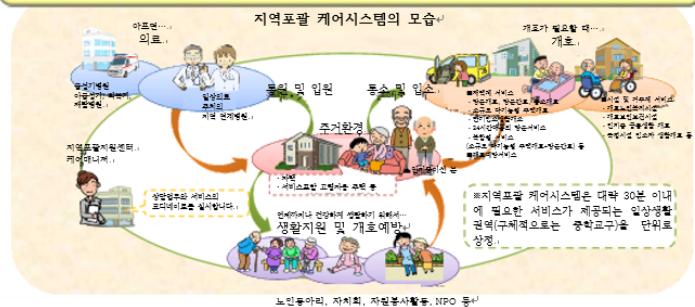
- 재택의료의 필요성
 - 향후 증증으로 진전한 고령자를 생활하던 장소에서 계속해서 보살피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보급과 함께 재택의료가 필수적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추구하는 Age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재택의료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고려가 필요
 - 지역 실정에 따른 재택의료 및 개호의 연계추진이 요구되며, 국가에서는 제도화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배경
 - 초고령화의 흐름에 더해 의료의 고도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 질환과 장애를 모두 가진 상태에서 장기에 걸쳐 요양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에 돌입
 - 또한 입원일수의 단축과 재택의료의 고도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높은 환자가 병원에서 조기 퇴원하는 사례가 증가
 -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 의료정책의 개편과 함께 폭넓은 시점에서 의료 및 개호체계의 변화가 각 지역단위에 요구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 및 목적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택의료와 일체적 관계성을 가짐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생활이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서로 돋는 체제를 지향
 - 각 지역 실정에 맞춘 의료·개호, 예방, 주거환경, 생활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제를 목표로 하며 개호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개호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 두 분야에서 고령자를 지역단위로 지원
 - 이 중에서도 재택의료를 축으로 한 지역의료의 수준향상과 개호연계에 중점을 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해 왔으며, 고령기에 어떻게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잘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의료가 요구됨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 단의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주도의 의료보장체가 되더라도 익숙하게 생활하던 지역에서 나다운 생활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해 나갑니다..
 - 향후, 인구증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구증 고령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합니다..
 - 인구가 보합상태이며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부, 7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원만하지만 인구는 감소하는 시촌부 등, 고령화 진전 상황에는 커다란 지역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6]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도

출처 :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shi_kaigo/kaigo_koureisha/chiiiki-houkatsu/ (검색일 : 2021.07.28.)

- 후생노동성에서는 각 자자체의 시도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시도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선구적 시도사례를 총정리
- 지역포괄케어 전반에 이르는 것 외에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 및 주거 환경 등 특색 있는 분야의 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 소개로 구성

[표 3-8]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사례

지역	주요 추진 사항	주요 내용
도쿄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 의료연계추진협의회에 따른 재택의료추진 노력 ② 개호: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이용 및 사업 전개 추진 ③ 예방: 사회참여를 통한 개호예방에 의한 고령자의 거주지와 차례 창출 ④ 주거환경: 인구증 고령자GHI와 사회자원 등을 유효하게 활용한 도시형 소비용 요양원 등의 정비 ⑤ 생활지원: 주민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주체의 지역활동 추진 * NPO, 사업자, 대학, 행정 등 약 70개 단체가 연계 및 협력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 장소와 기회 만들기, 응원하는 ‘세타가야 생애 현역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사회참여를 촉진
니가타현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 주거환경의 통합적인 제 공에 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도 자택도 아닌 새로운 재택 개호로, 다양한 생활 스타일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체제를 관민협동으로 정비→소지역 완결형 서포트센터 ② 지역 소모임과 사업소가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

지역	주요 추진 사항	주요 내용
		③ 향후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단카이세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돗토리현	기준자원을 활용한 공동주택을 이용한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확보	① 저소득자 등의 주거환경 확보, 지역교류 및 공동생활 ②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 ③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지원, LSA에 의한 수시 상담체제 ④ 외부 의료기관, 개호서비스 사업소와 연계
치바현	행정 및 의사회의 협동을 통한 재택의료 추진과 의료개호 연계	① 행정이 중심이 되어 다직종과 연계하여 재택의료를 추진 ② 의료, 간호, 개호 관계단체가 다직종연계 규정 작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구축과 규정 작성 을 추진하여 고령화가 진행되는 장래에도 주민이 생활하는 데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 ③ 재택의료종사자의 부담경감 지원 ④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한 다직종 연계 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계몽활동 보급 ⑥ 재택의료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재택의료연수 실시)
미에현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조직 협동에 의한 일상생활 지원체제의 구축	① 사회복지법인과 주민조직의 역할분담 아래 익숙한 장소에서 종합상담에서 일상생활 지원까지 이어주는 네트워크 구축 ② 빈 점포와 같은 기존의 지역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③ 시는 재정지원(지역의 서로 지원하는 체제 만들기 사업)과 정보제공 등의 측면을 지원한다. ④ 지역포괄지원센터(재택개호지원센터)는 주로 거점운영이나 주민활동 설립 시에 구체적인 상담과 활동 중에 필요한 상담 대응 등 시와 동일한 측면에서 활동을 지원
오이타현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개발 및 개호예방, 자립생활 지원	① 개호보험 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하여 생활이 가능한 지원을 구축 ② 개호예방강화사업에 의한 개호예방모델사업을 전개 ③ 개호예방사업에 의한 자립도가 높은 고령자가 개호예방사업과 생활지원서비스의 새로운 담당자가 되는 순환(이용자 이면서 서포터이기도 함)을 창출 ④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역으로 생활 서포트센터인 쿠쥬(린도)를 설립, 생활지원서비스와 모임의 장을 제공
구마모토현	섬지역의 재택생활 기반 만들기	① 주민 주체(섬 내의 부인회, 노인회 등)의 검토의원회 실시 ②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③ 험헬퍼 양성강좌 실시를 통한 인력 확보 ④ 주민 주체의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서비스 등의 기반 정비
사이타마현	인지증 시책과 가족지원	① 인지증가족개호교실을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최 ② 인지증가족개호교실 사후관리 사업(오렌지 카페 등) ·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최 · 오렌지 카페(월 1~2회, 2시간 정도, 출퇴근 개호시설이나 공민관에서 개최) · 서서히 지역포괄지원센터 수탁법인에 의한 정기 개최와 개호자의 자주적 활동으로 전환 ·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며,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활동

지역	주요 추진 사항	주요 내용
③시민후견추진사업		
가고시마현	주민이 직접 고안 하는 서로 돋는 지역 만들기	<p>① 주민이 직접 고안해서 시도를 실시</p> <p>② 지역의 서로 지원하기 맵 만들기를 계기로 주민주체의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 노력의 연쇄</p>
돗토리현	특별노인요양병원 등의 시설 기능을 지역으로 전개	<p>① 생활하는데 익숙해진 지역에서 개호 등의 거점을 입지 →세대를 초월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포괄 케어의 거점이 될 수 있다.</p> <p>② 특별요양 기능을 지역으로 전개 →특별요양 시설직원의 노하우와 맵파워를 활용하여 24시간 정기순회, 수시 대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인지증 그룹홈, 의료계열서비스 등도 함께 전개)</p> <p>③ 상기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전문가 육성 등 지속성 있는 지역포괄케어 · 세대 간 교류, 민생위원과 지역주민 등 지역의 다른 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역 복지 네트워크로서 거점 의식 · 고령자만이 아니라, 넓게는 생활 곤궁자 등의 사회참여 촉진
오무타시		
<p>지역밀착 서비스 및 개호예방 거점· 지역교류시설 정비</p> <p>①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권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상생활권역을 후생노동성이 권장하는 중학교 지구보다 더 좁게 잡아서 초등학교 지구로 설정 · 행정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나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중학교 지구보다 초등학교 지구가 일상생활에 더 밀착되어 있으며,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근접 <p>② 주택개호시설 도입 및 시설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한 초등학교 지구별로 지역밀착형 고령자 서비스로서 소규모 다기능 주택개호시설을 각각 도입하고, 개호예방거점과 지역교류시설을 겸비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대부분은 신설하지 않고 지역의 빙집을 이용하여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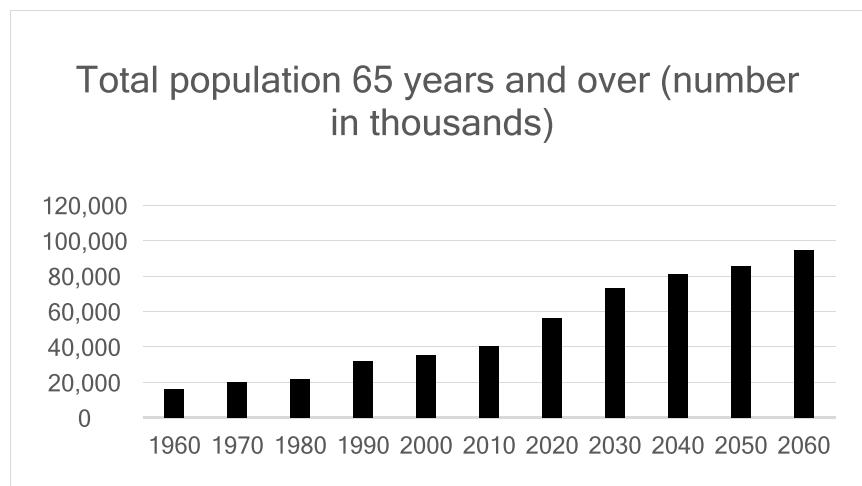
출처 :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l.pdf (검색일 : 2021.07.28.)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 미국 고령사회 대응 현황

□ 고령인구 증가 및 문제점

- 급증하는 고령인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도에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가 될 것으로 예상됨 (WHO, 2007, p. 3)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1960년도에는 1620만 명에서 2010년에는 404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60년에는 9467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고령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The U.S. Census Bureau,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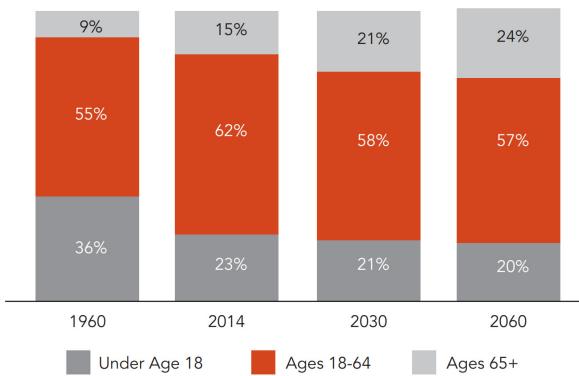
[그림 3-7] 미국의 고령인구 변화 추이

출처: The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topics/population/older-aging.html>
(검색일: 2021.06.10)

-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국 인구 비율이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명중의 1명의 비율로 증가할 것을 의미함 (Mather et al., 2015, p.3)

By 2060, Nearly One-Quarter of Americans Will Be Ages 65 and Older.

Percent of U.S. Population in Selected Age Groups, 1960 to 2060



Note: Number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Source: PRB analysis of data from the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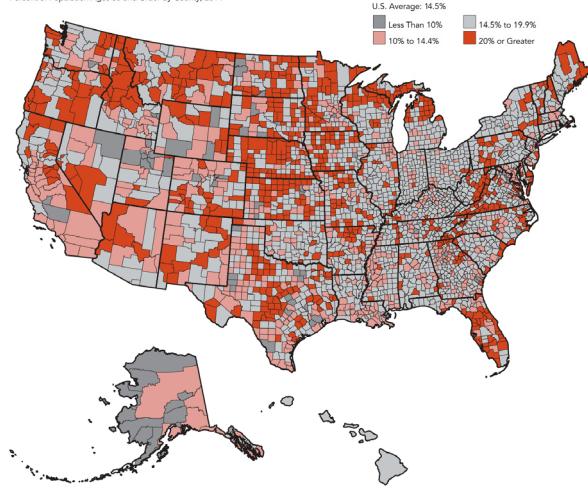
[그림 3-8] 연령대별 인구 비율

출처 : Mather et al.(2015, p.3)

- 미국의 3000개가 넘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고령화를 살펴보면, 전체 카운티의 약 25%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음 (Mather et al., 2015, pp.6-7)

Older Americans Make Up At Least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One-Quarter of U.S. Counties.

Percent of Population Ages 65 and Older by County, 2014



[그림 3-9] 미국의 카운티 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

출처 : Mather et al.(2015, p.7)

2)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① 특정 마을·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및 조닝 규제

- 도시계획 및 조닝 규제의 중요성 증대
 -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시 형태와 주민들의 건강간의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일자리와 서비스, 상가 등이 주거지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계획 및 조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Ball, Lawler, 2014, pp.19-32)
 - 미국의 약 1600개의 지방 도시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고령사회에 대비가 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젝트⁹¹⁾에서 다음 사례와 같은 도시 계획 및 조닝 규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비전을 구체화한 토지 이용 계획이 관련된 법령에 반영된 마스터플랜
 - 고밀도, 혼합 사용 개발 및 편의시설과 같은 노인을 위한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지역 및 조닝 계획 정책
 -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은 해당 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2010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600개의 지방 정부 중, 67%가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44%에 해당하는 지방정부가 노인의 활동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 및 조닝 계획 정책을 활용하여 고령 친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22)
- 관련 사례
 - 뉴햄프셔주 스트래텀 타운은 조닝 조례에 'Affordable Senior Housing'이라는 지역을 제공하여, 최소 부지면적이 없는 구역에 소규모 부지의 개발을 독려해 고령 주민이 경제적 문제로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도록 돋고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p. 15)
 -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는 최근 포괄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노인 주택" 지역 카테고리를 포함하였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p. 15)

91) "The Maturing of America — Getting Communities on Track for an Aging Popu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와 "The maturing of America: Communities moving forward for an aging popu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 완전 가로 정책 (Complete Streets)

- 완전 가로 조성을 통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 표지판의 가시성 개선 및 교차로 간소화 등 고령 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계속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그들의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Lehning, 2011, pp.345-356)
 - 이와 관련하여, 완전 가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완전 가로라 함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편의성 및 목적지 접근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거리 디자인을 일컬음⁹²⁾
 - 완전 가로는 길을 건너고, 상점, 직장 및 학교에 걸어가며, 자전거로 출근하고,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를 제시 간에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기차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함⁹³⁾
 - 완전 가로 디자인은 각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보도, 자전거 도로, 특수 버스 차선,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 정류장, 빈번하고 안전한 횡단보도, 중앙로, 접근 가능한 보행자 신호 등이 포함될 수 있음⁹⁴⁾
- 완전가로 정책 현황
 - 이에 지방정부들은 완전 가로 디자인을 지원하는 조정 조례 및 관련 법령 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44)
 - 미국에서 약 1600개가 넘는 완전 가로 정책이 승인되었음⁹⁵⁾
 - 또한, 미국 지방정부들의 약 54%가 완전 가로 디자인을 지원하는 조정 조례를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22)

92) Smart Growth America. (n.d.-b).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what-are-complete-streets/> (검색일: 2021.06.10.)

93) Smart Growth America. (n.d.-b).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what-are-complete-streets/> (검색일: 2021.06.10.)

94) Smart Growth America. (n.d.-b).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what-are-complete-streets/> (검색일: 2021.06.10.)

95) Smart Growth America. (n.d.-a)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policy-development/policy-atlas> (검색일: 2021.07.02.)

② 특정 시설·공간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빌딩코드

- 고령친화 정책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추후에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령친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짐(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17, pp.44-45)
 - 지방 정부들은 신축 공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빌딩 코드를 수립 함으로써 고령 친화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을 기할 수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p.44-45)
 - 2010년도 기준, 지방정부들의 56%가 빌딩 코드에 신축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을 보고하였고, 15%의 지방정부들은 이를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p.22)
- 관련 사례
 - 콜로라도 주, Arvada는 모든 유형의 신규 주택의 15%가 유니버설 디자인 구성요소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채택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p.15)

□ 공중이용시설의 고령친화 디자인 적용

- 고령자를 위한 외부 공간
 -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산책로를 포함하거나 고령 주민들을 위한 벤치 및 피스티스 시설의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관련 사례
 - (뉴욕시의 시티 벤치 프로그램) 뉴욕시는 뉴욕 시내의 고령주민들을 포함한 보행자 및 환승객들을 위한 공공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벤치를 설치하여 현재 2100개가 넘는 벤치를 관리하고 있음⁹⁶⁾

- (공공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의 피트니스 존 프로그램) 공공지 신탁은 비영리 단체로, 지방정부에서 피트니스 존을 개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이를 통해 플로리자이 피넬라스 카운티는 사람들 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존을 20개가 넘는 공원에 설치하였음 (AARP, 2018, p.54)

□ 부속 주택 조성 정책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 효율적인 공급 및 활용이 가능한 주거형태
 - 거주공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Accessory Dwelling Units가 있으며, 부속 주택 단위 (Accessory Dwelling Unit)는 기존의 한세대 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 추가로 건축 가능한 소규모의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의미함⁹⁷⁾
 - 대지 내에 분리된 거주공간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규모를 줄인다거나 가족구성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 및 주거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임⁹⁸⁾
- ADU 관련 규제
 - ADU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각 행정구역에서 ADU 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ADU신축 가능성이 결정됨 (Cobb, Davorak, 2000)
 - AARP에서는 ADU와 관련하여 법체계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델 법 또한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ADU 정책이 고령친화 거주환경 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Cobb, Davorak, 2000)
 - 2006년 기준, 1500개의 지방 정부들 중 46%의 지방정부에서 공용 주택 및 ADU와 같은 다른 시니어 주택을 지원하는 조닝 조례 및 빌딩 코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p.25)

96) NYC DOT. (n.d.).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citybench.shtml>(검색일: 2021.07.10)

97)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n.d.). <https://www.planning.org/knowledgebase/accessorydwellings>(검색일: 2021.07.10)

98)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n.d.). <https://www.planning.org/knowledgebase/accessorydwellings>(검색일: 2021.07.10)

3)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① 특정 마을·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인디애나 주 (The state of Indiana)

- 인디애나 주(State of Indiana)는 Visiting Nurse Service of New York Center for Home Care Policy and Research와 협력하여 AdvantAge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 전체에 걸쳐 고령친화도를 파악하고 관련한 정책을 수립함 (Evans et al., 2020, pp.10-12)
- 인디애나 주는 2006년 미국 고령화 계획 시연 관리 보조금과 더불어 다양한 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 전체 계획에 AdvantAge Initiative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음 (Evans et al., 2020, pp.10-12)
- 인디애나 주는 무작위로 선정한 5000여명의 고령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벌 레벨과 주 레벨에 걸쳐 커뮤니티의 고령친화 정도에 대해 파악하였음 (Evans et al., 2020, pp.10-12)
-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상황의 주민들의 전생에 걸친 필요에 부합하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디애나 주의 노화에 대한 지역 기관 그룹 전반의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계획 방법의 필요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되었음 (Evans et al., 2020, pp.10-12)
- AdvantAge Initiative 프로세스 참여로 인한 결과로 인디애나 주가 성취한 결과들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Evans et al., 2020, pp.10-12)

- 고령화와 관련된 지역기관들이 각 지역에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계획을 수립
- 주 전체에 걸쳐 고령친화 커뮤니티 계획 워크샵을 진행
-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 하는 참여 계획 워크숍 개최
- 고령화 지역 기관들은 장기계획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AdvantAge Initiative 조사 및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사용

□ 뉴욕시⁹⁹⁾

- 고령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및 대화 (WHO, n.d.-b)
 - 뉴욕시는 도시 전역의 1,500명 이상의 노인들과의 6개 언어 대화를 진행하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의 원탁 토론, 문현 검토, 광범위한 지도 제작 등을 실행하여 뉴욕시를 고령친화 커뮤니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기울임¹⁰⁰⁾
 -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
 - 뉴욕시는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뉴욕 시의회, 뉴욕 의학 아카데미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뿐만 아니라 기업, 건축, 법률, 예술 및 문화, 기술, 학계,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함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NYC Department for the Aging, & Age-friendly NYC, 2017)
 - 다양한 정책의 수립
 - 뉴욕시는, 뉴욕시를 고령 친화 커뮤니티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총 59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진행하고¹⁰¹⁾, 2017년도에는 총 86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음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 2017년도에 공고한 86개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됨
 - 건강 및 사회 서비스 (Health and Social Services): 32개의 정책
 - 주거환경 (Housing): 15개의 정책
 - 공공공간 및 교통 (Public Spaces and Transportation): 5개의 정책
 - 공공 안전 (Public Safety): 17개의 정책
 - 대화 및 정보 제공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8개의 정책
 - 커뮤니티 및 사회 참여 (Community and Civic Participation): 9개의 정책
- 출처 :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99) 뉴욕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y and Community)에 가입한 최초의 도시로 (WHO, n.d.-b),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도시로 여겨짐

100) WHO. (n.d.-b). New York City.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new-york-city/> (검색일: 2021.07.20)

101) WHO. (n.d.-b). New York City.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new-york-city/> (검색일: 2021.07.20)

□ 멤피스 & 셀비 카운티, 테네시

- 2012년도에 Plough Foundation은 VNSNY Center for Home Care Policy and Research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테네시에 위치한 멤시스와 셀비 카운티를 커뮤니티 바운더리로 설정 후 AdvantAge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함 (Evans et al., 2020, pp.8-9)
- 테네시주 멤피스와 셀비 카운티의 65세 이상 성인 92,472명을 대표하는 5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Evans et al., 2020, pp.8-9)
- 설문조사 결과, 커뮤니티의 고령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관리 문제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으며, 많은 고령 주민들이 단열 및 냉·난방 문제, 접근성 및 안전관련 문제 등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vans et al., 2020, pp.8-9)
- 주택수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저소득층 고령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택 수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 도색이나 바닥마감 등 경미한 보수(76%)
- 지붕이나 배관 신축 등 주요 구조보수(64%)
- 그랩바, 난간, 고가화장실, 미끄럼방지 바닥 등 화장실 개조(60%)
- 해충으로 인한 피해 보수(45%)
- 여름철 냉방(43%)
- 겨울철 난방(35%)
- 가정 내 계단 난간, 경사로 및 넓은 출입구 등의 접근성 개선(9%)

출처: Evans et al., 2020, pp.8-9

- 또한 주택수선과 더불어, 음식과 관련한 문제점이 설문결과를 통해 드러남

-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음을 경험(10%)
- 주변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없음(20%)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음(13%)

출처: Evans et al., 2020, pp.8-9

- 멤피스와 셀비 카운티 커뮤니티는 AdvantAge Initiative를 통해서 Plough Foundation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음 사례와 같은 결과를 성취하였음

- Habitat for Humanity 및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가정 내 안전,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주택 개조 및 수선)
- MIFA Meals on Wheels 기관의 주도를 통해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노 헝그리 시니어 이니셔티브(No Hungry Senior initiative)가 수행됨
- 노인 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절차,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출처: Evans et al., 2020, pp.8-9

□ 고령화 개선 지구 (Aging Improvement Districts)

- 개념

- 고령화 개선 지구 (Aging Improvement Districts)는 2010년도에 Arthur Webb가 이끄는 NYC Commission's Ageing Improvement District Workgroup에 의해 디자인 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업체, 비영리단체, 시 공무원, 문화·교육·종교기관 등의 관련인들이 커뮤니티의 노인들 및 주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저비용으로 커뮤니티 개선을 도모함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 10)
- 뉴욕시의 고령주민들은 뉴욕시에 위치한 가게, 식당, 지역사회단체, 교회, 공원, 박물관, 거리의 풍성한 조직이 뉴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러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함 (NYC and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2011, p. 81)
- 이에 뉴욕시는 뉴욕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뉴욕시의 노년층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의 자산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구현하고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노력함 (Age-Friendly NYC, 2012, p. 11)

- 주요 내용

- 다음과 같은 4 곳의 고령화 개선 지구를 수립: East Harlem, the Upper West Side, Bedford Stuyvesant, and Pelham Parkway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 11)
- 고령화 개선 지구는 전반적인 연령 친화적인 NYC 이니셔티브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함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 10)
- CityBench 프로그램, 공공 풀장에서의 Senior Splash, 노인 친화적인 Local Business Initiative, 동네 전체 식료품 가이드 등의 여러 이니셔티브가 고령화 개선 지구에서 개발되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었음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 11)

□ 뉴욕시 고령친화 지역 (Age-Friendly Neighborhood)

- 개념

- 고령친화 지역(Age-Friendly Neighborhood, AFN)은 이전 시범 프로그램인 고령화 개선 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s, AIDs)가 지속되고 확대된 프로그램임¹⁰²⁾

- 주요 내용

- 고령화 개선 지구의 연장선으로 지속된 고령친화 지역은 도시의 조직 인프라, 특히 51개의 NYC Council Districts와 70개의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노력을 통한 지역의 고령친화 정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pp.74-75)
- 이를 위해 Age-friendly NYC는 Council과 손잡고, 커뮤니티 상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 전체의 19개 지역(neighborhoods)에 걸쳐 3,000명 이상의 고령 뉴욕 시민들과 대화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지역 Action Plan을 수립함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pp.74-75)



[그림 3-10] 맨하튼 자치구(Manhattan Borough)에 위치한 커뮤니티 지구

출처: NYCdata | Population & Geography. <https://www.baruch.cuny.edu/nycdata/population-geography/maps-boroughs.htm> (검색일 : 2021.07.10)

102) WHO. (n.d.-a). Age-friendly Neighborhoods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neighborhoods-initiative/> (검색일: 2021.06.10)

- 범위 및 단위

- 뉴욕시는 지리적으로 300 평방 마일이 넘는 5개의 자치구(borough), 59 개의 지구(community districts)로 구성¹⁰³⁾
- 5개의 자치구 (borough) 안에 각 자치구 별로 여러 개의 지역 (neighborhood)이 위치하는데, 5개 자치구를 통틀어 총 329개의 지역 (neighborhood)을 확인할 수 있음¹⁰⁴⁾

- 역사 및 현황

- 2010년, Age-friendly NYC는 시범 사업 시작(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11)
- 2012년도, “Creating an Age-friendly NYC, One Neighborhood at a Time” 툴킷 작성 및 배포(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p.11)
- 2021년도, 2012년도에 제작된 툴킷을 보완하기 위해 “How to Thrive Together: A Toolkit to Sustain, Grow & Fund Your Age-friendly Neighborhood Organization” 작성 및 배포 (Kieffer, 2021)

- 고령친화 지역의 조성

- 뉴욕시 내 다른 고령 친화 지역 수립을 돋기 위해 뉴욕시에서는 이를 돋는 툴킷을 만들어서 공유함 (Age-Friendly NYC, 2012; Kieffer, 2021)
- 이 툴킷에서 고령 친화 지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Age-Friendly NYC, 2012, p. 12)

-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 노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개방적인 지역사회 조직 또는 기업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유급 직원
- 선출직 공무원 또는 지방정부 위원회 또는 기관의 지원
- 노인의 리더십

- 예산 충당 방법

- 자금 확보는 고령 친화 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가장 보편적인 과제인데, 다음과 같은 펀딩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음¹⁰⁵⁾

103) NYCdata. (n.d.). Population & Geography: New York City (NYC) Neighborhoods - By Borough. Retrieved from <https://www.baruch.cuny.edu/nycdata/population-geography/neighborhoods.htm> (검색일: 2021.07.10)

104) NYCdata. (n.d.). Population & Geography: New York City (NYC) Neighborhoods - By Borough. Retrieved from <https://www.baruch.cuny.edu/nycdata/population-geography/neighborhoods.htm> (검색일: 2021.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재량 기금 ■ 구청장 재량 기금 ■ 커뮤니티 보드 자금 지원 ■ 지역, 주 및 국가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 후원 및 지원 ■ 현물 기부 ■ 멤버십 비용, 이벤트 티켓 비용 등의 커뮤니티 회원들을 통한 예산 충당
--	---

- 환경 및 서비스

- 고령 친화 지역에서 제공하는 환경 및 서비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다른 모습을 나타냄 (Age-Friendly NYC, 2012)
- 예를 들어, Bedford-Stuyvesant의 연령친화 앰배서더 프로그램 (Age-friendly Ambassadors Program)은 그 지역의 고령 주민들을 위해 지역 소매업 개선, 주민 혜택 및 자격 연계, 사회 행사 기획, 청소년 봉사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 또 다른 예로는 Mirtle Avenu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로, 나이든 소비자들의 요구를 비즈니스 유치 및 보존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et al., 2017)

□ 시니어 빌리지 (Senior Villages)

- 개념

- 시니어 빌리지는 공동체 생활 모델의 하나로, 고령 주민들이 그들의 커뮤니티 및 주거지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노인들의 일상, 사회, 여가 생활 등을 돋기 위해 자치적으로 생기는 커뮤니티임
- 시니어 빌리지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공헌을 촉진하며, 지역사회가 더욱 고령화 친화적이 되도록 돋는 역할을 함¹⁰⁵⁾
- 빌리지 모델은 민간 서비스나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의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정부의 주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가

105) Kieffer, E. K., A. . (2021a). Age-friendly Neighborhood Organization Toolkit. https://media.nyam.org/filer_public/a7/44/a7449eda-a065-4d14-b40b-c234fd6c269d/factsheet-_series-final.pdf#page=10(검색일: 2021.07.10)

106)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임¹⁰⁷⁾

- 범위 및 단위

- 빌리지의 물리적인 위치 및 경계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마을 단위의 특정 동네를 중심으로 생기거나(예: 캐피탈 힐 빌리지),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시니어빌리지를 구성하거나, 하나의 타운/카운티 혹은 그보다 더 큰 지역에 걸쳐 위치하기도 함(Greenfield, Scharlach, Graham, Davitt, & Lehning, 2012)
-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빌리지의 단위는 여러 타운이 함께 구성된 유형이 3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타운 내의 마을 유형이 29.0%, 하나의 타운 단위가 18.8%, 카운티 혹은 그보다 더 큰 지역의 단위가 13%로 보고되었음 (Greenfield, Scharlach, Graham, Davitt, & Lehning, 2012, p.4)
- 2021년 7월 현재 미 전역에 걸쳐 약 270개의 시니어 빌리지가 운영되거나 개발중에 있음¹⁰⁸⁾



[그림 3-11] 미 전역에 걸친 시니어 빌리지의 위치

출처: Village to Village Network, n.d.-a. https://www.vtvnetwork.org/content.aspx?page_id=1905&club_id=691012 (검색일 : 2021.7.20)

107)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108) Village to Village Network. (n.d.-a). Village Map. Retrieved from https://www.vtvnetwork.org/content.aspx?page_id=1905&club_id=691012 (검색일: 2021. 07.20)

- 시니어 빌리지의 조성

- 시니어 빌리지의 조성과 관련한 주최는 지역 사회 주민들, 특히 고령 주민들로 주로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로 설립, 개발, 운영됨 (Scharlach, 2012)
- 2012년도 69개의 시니어 빌리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주민 응답자들의 89.7%, 관련 서비스 전문가 응답자들의 32.8%, 다른 커뮤니티 주민들의 27.9%가 시니어 빌리지 조성 및 계획 단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Greenfield et al., 2012, p.3)
- 고령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3%에 그치고, 59.7%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Greenfield et al., 2012, p.3)
- 시니어 빌리지의 조성이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빌리지 조성을 돋기 위해, 최초의 시니어 빌리지인 비컨 힐 빌리지의 설립자들은 가공동체개발금융기관인 NCB캐피탈임팩트와 손잡고 마을 간 소통을 촉진하고 새로운 마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간 네트워크 (Village-to-Village Network, VtV Network)를 구축함¹⁰⁹⁾
- 마을 간 네트워크 (Village-to-Village Network, VtV Network)는 회원제 기반의 단체로 시니어 빌리지들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니어 빌리지의 수립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함¹¹⁰⁾
- 마을 간 네트워크(VtV)는 마을들이 함께 모여 노인들이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회원제 단체임¹¹¹⁾
- VtV 네트워크는 커뮤니티가 효과적인 시니어 빌리지로 발전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지도, 리소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고령친화 커뮤니티의 우수 모델로 시니어 모델을 옹호하는 역할을 함¹¹²⁾

109)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110)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b). The Original NORC Supportive Servic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_sidebar.html (검색일: 2021.06.10)

111)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b). The Original NORC Supportive Servic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_sidebar.html (검색일: 2021.06.10)

112)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b). The Original N

- VtV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단계별 "방법" 가이드를 포함하여 새로운 시니어 빌리지를 시작하기 위한 전문가 지침 및 리소스 제공
- 신규 및 기존 시니어 빌리지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 매년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모범 사례 및 고령화 주요 트렌드를 공유
- 월간 웹 세미나 및 토론 포럼을 통해 빌리지 간의 관계 수립 및 지식 교환 촉진
- 빌리지 리더십 구축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 빌리지 비즈니스 시스템 및 운영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문서 라이브러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험케어, 신원 조회, 보험 및 웹 사이트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회원 할인 협상

출처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 – 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6.10)

- VtV 네트워크의 멤버십은 다양한 레벨이 있고 연간 \$150에서 \$500까지 개인 혹은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¹³⁾

- 조성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
 - 시니어 빌리지는 현재 자발적으로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인 및 그룹에 의존하여 조성되고 있으며(Erickson, 2019) 자발적으로 조성되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에 정부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니어 빌리지 조성과 관련한 정부 공무원들의 참여는, 59.7%에 해당하는 시니어 빌리지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고, 37.3%의 경우 약간의 참여가 있었고, 겨우 3%에 해당하는 시니어 빌리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음 (Greenfield et al., 2012, p. 3)
 - 예산과 관련하여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연간 예산의 5%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Greenfield et al., 2012, p. 4)
- 운영 및 관리
 - 69개의 시니어 빌리지 중 64개의 시니어 빌리지가 운영위원회 혹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빌리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Greenfield et al., 2012, p. 6)

ORC Supportive Servic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_sidebar.html (검색일: 2021.06.10)

113)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b). The Original NO RC Supportive Servic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_sidebar.html (검색일: 2021.06.10)

- 운영 관리를 위한 직원 및 봉사자들: 시니어 벌리지는 주로 자원봉사자들과 소수의 고용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짐 (Greenfield et al., 2012, p. 3)
- 시니어 벌리지는 자치적인 커뮤니티이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고, 벌리지에 가입하는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Greenfield et al., 2012, p. 3)
- 예산 규모 및 충당 방법 (Greenfield et al., 2012, pp. 3-4)
 - 시니어 벌리지의 연간 총 예산은 1,000달러에서 674,000달러 사이였으며, 중앙값은 82,643달러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벌리지에서(57.6%)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예산을 보고하였음
 -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출처는 회원들의 멤버십 비용으로, 반이 넘는 시니어 벌리지에서 그들 예산의 최소 45%가 멤버십 회원비용에서 구성
 - 또 다른 주된 예산 출처는 펀드레이징을 통한 모금 및 개인의 선물을 통한 기금으로 나타났는데, 약 50%에 해당하는 시니어 벌리지들이 그들 예산의 최소 20%가 이러한 모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한다고 보고함
 - 민간 재단이나 기업이 또 다른 공동 자금원을 구성했는데, 평균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하였음
 - 기타 비영리 단체 및 부모단체의 기부금은 대부분 연간 예산의 5% 이하를 차지하였음
 - 특히나 정부 보조금의 경우 5% 이하로 가장 적은 비율로 시니어 벌리지의 예산을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회원 자격 및 권리
 - 시니어 벌리지 회원의 규모는 13명에서 550명으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남. 회원들은 주로 65세 이상의 백인, 여성으로 나타났음 (Greenfield et al., 2012, p. 4)
 - 예를 들어, 러비 리빙 앤 훙 (Love Living at Home) 시니어 벌리지의 경우, 이 벌리지가 위치한 톰킨스 카운티 (Tompkins County)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¹¹⁴⁾

114) Love Living at Home.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loveliving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579154&module_id=203887#Who%20can%20join%20Love%20Living%20at%20Home? (검색일: 2021.07.10)

- 69개의 시니어 빌리지 중 66개의 시니어 빌리지에서 회원비를 받고 있으며, 멤버십 회원비는 개인 회원의 경우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948달러(평균은 430.75 달러)로 다양하게 나타남(Greenfield et al., 2012, p. 4)

- 환경 및 서비스

- 71.0%의 빌리지들이 노인의 서비스 접근 촉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강화 및 사회적 고립 감소(24.6%), 노인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2.9%), 그리고 커뮤니티 전반적으로 고령친화적이 되도록 기여(1.4%)의 순으로 나타남(Greenfield et al., 2012, p. 5)
- 시니어 빌리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시니어 빌리지 모델이 실제 고령 주민들에게 서비스 접근 촉진과 사회적 관계 강화에 있어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Graham, Scharlach, & Price Wolf, 2014)
- 시니어 빌리지에서는 회원들에게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직접 제공 서비스 와 외부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를 제공함 (Greenfield et al., 2012, p. 5)

-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를 요청할 통합 전화 번호
 - 서비스의 조정
 -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적 이벤트
 - 교통수단
 - 안심 통화
 - 친근한 방문자
 - 의료 서비스의 옹호 및 대표
 - 식료품 쇼핑
 - 기술 지원

-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주거환경 유지보수/수리
 - 재택 의료 서비스/개인 건강 관리
 - 가사지원
 - 그룹 운동
 - 법률 지원
 - 금융 서비스
 - 식사 배달
 - 보건 교육
 - 정신 건강 상담
 - 예방 건강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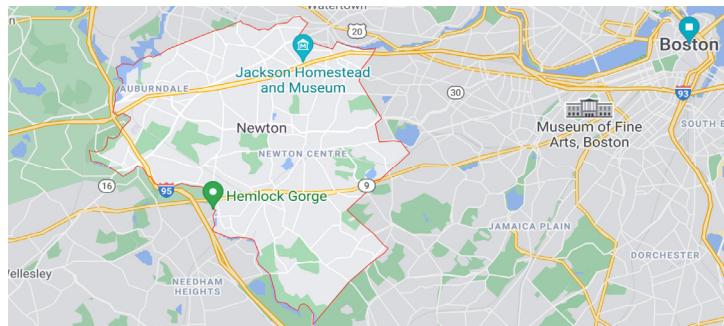
- 시니어 빌리지 모델의 종류 및 예시

- 차치적으로 생성되는 커뮤니티인 만큼, 각 커뮤니의 모델이 다음의 원칙 을 따름¹¹⁵⁾ (From the Heart Home Care, 2020)

115) From the Heart Home Care, L. (2020). Senior Village: A New Way of Living. Retrieved from <https://fromthehearthomecare.com/senior-village-a-new-way-of-living/> (검색일: 2021.07.10)

-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 회원들이 자신들의 거주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념
- 회원들의 사회적, 건강, 교육 문화적 등 전반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
- 자주적인 지속가능성 (Self-sustainability)

- 시니어 빌리지의 모델을 크게 분류하면,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상위 조직의 특정 부서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형식을 취함¹¹⁶⁾
- 77%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시니어 빌리지가 독립적인 조직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 자문위원회와 직원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¹¹⁷⁾
- 시니어 빌리지 사례: 뉴턴 앤 톰 (Newton at Home) Newton, MA
 - (목표) 2011년, 지역 주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함¹¹⁸⁾
 -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 회원 자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뉴턴시를 커뮤니티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Newton at Home, n.d.-c), 뉴턴시는 47.03 km²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음¹¹⁹⁾



[그림 3-12] 뉴턴 앤 톰 시니어 빌리지의 행정적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뉴턴시
출처 : Google Map, <https://goo.gl/maps/c5NHTUqqPgkLLKw9> (검색일: 2021.06.10)

-
- 116)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17)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18)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19) Wikipedia. (n.d.). Newton, Massachusetts.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ewton,_Massachusetts (검색일: 2021.06.10)

- (회원 자격) 60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뉴턴시 거주자는 누구나 뉴턴 앤 흄의 회원이 될 수 있음¹²⁰⁾
- (회원 현황) 2013년도 기준, 총 178명의 회원이 멤버로 등록되어 있음¹²¹⁾
- (운영위원회) 2021년 현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Newton at Home, n.d.-a), 운영위원은 의사, 사회복지사, 교수, 경제학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뉴턴 앤 흄 빌리지의 회원들과 비회원의 커뮤니티 주민들로 구성됨¹²²⁾
- (예산 관련) 뉴턴 앤 흄의 연간 예산은 약 165,000달러로, 예산 중 약 60%를 멤버십 회비로 충당하며, 기업, 개인, 재단의 기부금 및 그랜트 등으로 나머지 40%의 예산을 충당함¹²³⁾
- (교통수단 지원) 뉴턴 앤 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회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데, 요금과 주차비를 제외한 무료 서비스로 회원들에게 제공됨¹²⁴⁾



[그림 3-13] 뉴턴 앤 흄 빌리지 회원들의 그룹 모임 사진

출처 : Newton at Home(n.d.-d,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395, 검색일: 2021.07.10)

-
- 120) Newton at Home. (n.d.-c). Membership in Newton at Home.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374 (검색일: 2021.07.02)
 - 121)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22)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23)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124) Newton at Home. (n.d.-f). Transportation.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433 (검색일: 2021.07.02)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 개념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라는 명칭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마이클 헌트가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자신이 조사한 아파트 단지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든 이후 사용되어 왔음 (Masotti, Fick, Johnson-Masotti, & MacLeod, 2006)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란, 이 명칭을 처음 정의한 마이클 헌트에 따르면, 노인을 위해 계획되거나 설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노인을 수용하게 되는 주택개발로 정의됨 (Hunt & Gunter-Hunt, 1986)
- 본 커뮤니티는 노인 거주자를 위해 계획되거나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린 집에 주민들이 남아 있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노인 주민들의 집중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¹²⁵⁾
- Masotti et al. (2006, p. 1165)는 건강한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신체적, 사회적 활동(예: 걷기, 자전거 타기, 일하기, 사교 활동)이 활발한 많은 수의 노인들
- 매일 보행 거리 및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음
- 모든 기본적인 필요와 편의시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보행적 접근성이 좋음
- 1년 내내 접근이 가능한 깨끗하고 조명이 잘 들어오는 보도와 산책로가 위치
- 사용하기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물리적 편의시설
- 활동적인 커뮤니티 환경의 존재
- 중요한 시설이나 목적지까지의 적절한 대중 교통 수단
- 안전하고 범죄가 없는 것으로 인지되는 환경
-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다양한 사회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유도
-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의 인구 밀도
- 높은 노인의 자자체 참여도 및 임명/선출
- 고령 친화 정책 결정을 보여주는 자자체
- 노인의 요구에 점차적으로 대응하는 민간 시장

125)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종류 및 사례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크게, 공동주거단지 형식의 NORC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마을 모델의 NORC,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음 (Bronstein & Kenaley, 2010)
- 공동주거단지 형식의 NORC는 다세대 아파트나 노년층이 밀집된 콘도 등 단독 건물이나 주택 개발 형태를 취하고 있음 (Parker, 2020)
- 마을 형식의 NORC는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하는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을 일컬음 (Parker, 2020)

- 범위 및 단위

- NORC는 아파트, 콘도 및 단독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위치에 존재 함 (Masotti et al., 2006)
- 프로그램의 범위를 형성하는 NORC의 규모는 트로이/메카닉빌의 139개 아파트부터 전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인 브롱크스의 Co-op 시티의 15,372개 아파트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마찬가지로 건물 수도 트로이의 1개에서 퀸스 클리어뷰 가든의 82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Maclarens, Landsberg, & Schwartz 2007, p.130)
- 2012년 62개의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단위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비율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파트 건물/단지가 4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마을 단위의 주거 지역이 40.32%로 보고됨 (Greenfield, Scharlach, Lehning, Davitt, & Graham, 2013, p. 933)

- 아파트 건물/단지 (Apartment building(s)): 45.16%
- 마을 (Neighborhood): 40.32%
- 하나의 타운 혹은 도시 (Single town or city): 6.45%
- 전체 타운을 넘어서는 범위 (More than one entire town): 4.84%
- 전체 카운티 혹은 그 외의 범위 (Entire county or more): 3.23%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로 인정받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자 뉴욕의 법령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FineLaw Staff, 2021)”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사례로 설명함¹²⁶⁾

126)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 커뮤니티가 노인을 위해 디자인되지 않았어야 하고, 노인만을 받아주지 않아야 함¹²⁷⁾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로 인정받고자 하는 주거단지 및 명확한 경계를 지닌 동네의 거주민 중 노인의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함¹²⁸⁾

(A) 최소 40%의 유닛들에 노인 거주자가 있어야 함

(B) 아파트 단지 주민의 최소 250명 혹은 주택 단지의 최소 500명이 노인 거주자이어야 함

출처: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정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대상 노인의 대다수는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계층이어야 함¹²⁹⁾

- 2013년 기준, 미 전역에 걸쳐 약 100개의 NORC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NORC가 뉴욕에 위치하고 있음(Greenfield et al., 2013)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조성

- 프로그램 시작에 대한 실제 결정은 주택 협동조합 이사회나 임대주택 소유자/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종종 사회 복지 기관의 조언을 받음(Maclaren et al., 2007, p. 134)

-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프로세스에는 초기에 제공될 서비스와 NORC의 노인 거주자의 사회 및 보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리드 애이전시와 주된 파트너, 초기 자본 및 예산, 프로그램의 지리적 장소 및 규모, 운영 주체, 직원 고용 등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영역의 결정이 포함됨(Maclaren et al., 2007, p. 134)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127)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128)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129)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 조성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¹³⁰⁾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조성과 관련하여 연방 및 지방정부들은 주로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연방 정부의 경우, The Older Americans Act, Title IV에서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에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명시함
 - 주정부의 경우 각 주별로 해당 법제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
 -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에서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
- 운영 및 관리
 - 주관 에이전시(lead agencies)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핵심 서비스 및 리더십을 제공하고 관리를 담당함 (Maclarens et al., 2007)
 - (유급 직원의 고용) 유급 직원의 경우, 62개의 NORC 프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평균 3.97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Greenfield et al., 2013, p.934)
 -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 에이전시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 및 관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운영되는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노인 주민들이지만, 청소년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함 (Maclarens et al., 2007)
 - 주관 에이전시는 병원, 방문 간호 서비스 업체 등과 같은 파트너 에이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Maclarens et al., 2007)
- 예산 규모 및 충당 방법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 경우, 주로 정부, 재단, 주택 제공자 및 개인의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예산을 충당함 (Greenfield et al., 2013)
 - 다양한 출처의 평균 예산 백분율은 다음과 같음(Greenfield et al., 2013, p.934)

130)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 회원 멤버십 비용 1.52%
- 정부 보조금 및 계약금 64.72%
- 민간재단 및 법인 12.51%
- 모단체 (parent organization) 10.85%
- 기타 비영리 단체 3.51%
- 모금 및 자선기부 2.49%

- 회원비에 크게 의존하는 시니어 빌리지와 비교했을 때, 큰 비율로 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여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회원 자격 및 권리

- 각 커뮤니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나이에 따른 제한이 많음(Greenfield et al., 2013)

- 주민이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커뮤니티를 주관하는 단체에 신청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음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식사 배달, 의료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상담 서비스, 사회 활동 및 참여 기회 등을 제공(Greenfield et al., 2013)

- 뉴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개인을 위한 서비스 및 그룹을 위한 서비스 두 카테고리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Maclareen et al., 2007, p.136)

- 개인을 위한 서비스

-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조정하고 모니터링
-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
- 의료: 의사 및/또는 간호사의 기정 방문, NORC 또는 다른 기관의 의료 관리
- 진료 약속 등으로의 이동
- 에스코트 지원: 쇼핑, 도서관 등
- 가사도우미 제공 또는 조정
- 간병인을 위한 관리
- 훌케어 제공 또는 조정
- 비상 대응 시스템
- 장기요양계획
- 정신 건강 검진 상담, 의뢰 등
- 성인 데이 캐어
- 자투어 관리, 법률 지원
- 우급 상황시 기정번호
- 친근한 방문, 안심 전화
- 의료보험 가정관리, 의료, 장기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음식 배달

- 그룹을 위한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게임, 사고 댄스, 영화 등
- 건강 검진: 혈압, 시력, 청각, 암
- 단체구매: 식료품 등
- 건강증진 및 교육: 영양, 면역, 사고 예방, 스트레스 예방 등
- 지원 단체: 간병인, 사별, 기억 상실, 일초하이어병
- NORC 외곽 여행: 빌라 관, 콘서트, 쇼, 공동묘지 방문, 소풍 등
- 수업 강의, 토론: 시사, 남녀 단체 등
- 휴일 축하 및 이벤트: 종교, 민족, 국가 등
- 문화 수업: 미술, 연극, 음악, 글쓰기, 언어, 문학 등
- 교육: ESL, 시민권, 컴퓨터
- 운동 교실: 댄스, 요가, 에어로빅 등
- 달력, 소식지, 전단지,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 활동
- 식사 모임
- 미술 및 공예: 뜨개질, 사진 등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

• 개념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유연한 주거 옵션, 조정된 서비스 및 편의 시설 시스템, 거주자의 다양한 건강 및 웰빙 요구를 해결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고령자(일반적으로 65세 이상)를 위한 주거 대안임 (Zarem, 2010, p. 4)
 - CCRC 모델은 커뮤니티 내에 다양한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거주자가 요구 사항이 변경되고 의료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강점을 둠 (Zarem, 2010, p. 4)
 - CCRC는 전형적으로 캠퍼스식 환경으로 캠퍼스 내에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생활지원 주택, 요양원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Zarem, 2010, p. 4)
 -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고령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음 (Shippee, 2009)
 - 많은 고령 주민들이 자신들이 친숙한 커뮤니티에 위치하는 것을 원하고,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필요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내에 상주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커뮤니티 내에서의 다른 종류의 서비스로 변경할 때의 이동 또한 고령 인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관련하여 커뮤니티 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Shippee, 2009).
 - 고령 주민들이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를 변화에 대한 최적의 시기 또는 준비, 가족 부담에 대한 두려움, 가정과 마당 유지의 어려움, 동시에 이사하는 친구 및 이웃과의 합류, 가족과의 근접성, CCRC의 편의시설 등 과 같은 이유로 선택한다고 보고됨 (Groger & Kinney, 2007)
- ### • 범위 및 단위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캠퍼스 스타일의 커뮤니티로,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캠퍼스 안에 여러 건물이 함께 위치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Zarem, 2010)

- 보통의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300유닛 이하의 규모를 나타냄.
1/3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300유닛보다 큰 규모를 보고하고, 8%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500유닛보다 큰 것으로 보고됨 (Zarem, 2010)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도시에서 시골의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 (Zarem, 2010)
- 미국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 2,240개의 CCRC가 있으며, CCRC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는 1997년 350,000명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함 (Shippee, 2009)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조성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뉴욕 주 보건부에서 지속적인 은퇴 커뮤니티의 인증 및 운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음¹³¹⁾
- 조성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경우 정부가 지원보다는 규제의 역할을 담당함
 - 거주자가 CCRC에 지급하는 상당한 금액과 부도 가능성 때문에, 거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의 잠재적 위험이 CCRC 규제 필요성이 강조됨 (Zarem, 2010, p. 20)
 - 대부분의 경우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규제를 담당함 (Zarem, 2010, p. 20)
- 운영 및 관리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비영리 및 영리 단체에 의해 소유/운영되는데, 비영리 기관의 경우 약 82%를, 영리 기관의 경우 약 18%의 비율을 차지함 (Zarem, 2010, p. 4)
 - 대부분의 CCRC 자가 관리되지만, 약 15%의 경우는 외부 관리자를 사용하여 관리함 (Zarem, 2010, p. 6)
 - 다양한 레벨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캠퍼스 내에서 제공하기에 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직원들 및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운영됨 (Zarem, 2010)

131) New York State Deparment of Health.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Fee-For-Servic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trieved from https://www.health.ny.gov/facilities/long_term_care/retirement_communities/continuing_care/ (검색일: 2021.07.10)

- 예산 규모 및 충당 방법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을 회원들과의 계약을 통한 입회비 및 월회비/월세를 통해 충당하고, 이러한 계약 종류는 거주자의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세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음 (Zarem, 2010, pp. 7-9)
- (입회 계약) CCRC의 약 65%에서 75%가 일시불 입회비와 월 사용료를 포함한 계약을 제공함 (Zarem, 2010)
- 입회비와 월 이용료는 거주자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며, 식사, 하우스키핑, 수리 및 유지보수, 커뮤니티 시설, 활동 및 기타 편의시설 사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이용은 계약에 따라 월 이용료에 포함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하기도 함 (Zarem, 2010)
- 입회비의 경우, 32만 9000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 다양한 범주를 나타 내고, 이는 커뮤니티의 주택 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또한 월 이용료의 경우 매달 2,000달러에서 4,000달러에 달하는 관리비 또는 서비스료를 지불함¹³²⁾
- CCRC의 입회계약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옵션을 제공함 (Zarem, 2010, pp. 7-8)

- Life-care (extensive) contract (Type A)
- Modified contract (Type B)
- Fee-for-service contract (Type C)

- (임대 계약) CCRC의 임주민은 입회계약이 아닌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내지 않고 매달 월 임대료 및 이용료를 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 등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 비용을 지불함 (Zarem, 2010, p. 8)
- 독립 생활단위의 임대료는 주로 월 3,000~6,000달러로 나타남¹³³⁾
- 지원을 통한 회원 자격 유지: 많은 CCRC의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

132) AARP. (2019). How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Work.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caregiving/basics/info-2017/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html> (검색일: 2021.07.10)

133) AARP. (2019). How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Work.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caregiving/basics/info-2017/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html> (검색일: 2021.07.10)

거나 자금이 부족한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Zarem, 2010, p. 8)

- 임대료를 납부한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평생 커뮤니티 캠퍼스에 거주할 권리가 있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들 또한 일반적으로 남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Zarem, 2010, p. 9)

- 회원 자격 및 권리¹³⁴⁾

-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 시설에 비해 매우 엄격한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첫 번째 기준은 지원자들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연령 요구사항) CCRC 의 회원으로 지원하려면 지원자가 특정 연령대 이내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만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 제한을 둠
- (의료 요구사항) 각 CCRC 지원자는 자신의 의료 기록과 함께, 관련 가족 의료기록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신청 과정에서 종합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도 있음
- (재무 자격 요건) 각 지원자는 현재의 치료 요구 혹은 향후 필요한 더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금융 자산이 있음을 증거로 제시해야 함

- 환경 및 서비스¹³⁵⁾

- 캠퍼스 내의 물리적 환경은 노인의 생활에 맞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시례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

- 전문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의사 및 간호 관리, 숙련된 간호 관리, 생활 보조 관리, 기억력 관리, 일상생활 활동 지원, 물리 치료, 약국, 치과 의사, 정신건강 및 영양상담 등
- 상용 서비스 제공: 이발사 및 미용실, 케이블 및 인터넷, 커피숍, 우체국, 소매점 및 식품점, 은행 서비스, 개인 식당, 가정 수리 및 유지보수, 운송, 보안, 하우스키핑, 세탁 서비스 등
-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산책로, 수영장,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또는 퍼팅 시설,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공예실, 게임장, 정원 또는 온실, 예술 및 음악 스튜디오 등

출처: Stanley, M.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Retrieved from [http://www.seniorliving.org/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https://www.seniorliving.org/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검색일: 2021.6.10.)

134) Williamson, P. (2020).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 Definition). Retrieved from <https://www.truelegacyhomes.com/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검색일: 2021.06.10)

135) Stanley, M.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검색일: 2021.06.10.)

② 특정 시설·공간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시니어 코하우징 (Senior Co-housing)

- 개념¹³⁶⁾
 - 시니어 코하우징 (Senior Co-Housing)이란 맞춤형 커뮤니티로, 개인 주택과 공동 주택, 도서관, 객실, 커뮤니티 가든, 세탁소, 식당, 주방과 같은 공용 편의 시설을 포함하는 맞춤형 환경을 디자인 및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일컬음 (Kennedy, 2010)
 - 코하우징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나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지만, 시니어 코하우징의 경우, 주로 55세 이상의 주민들만 혀락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 이는 노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통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선호도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살 수 있는 코하우징에 거주하며 다른 세대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음
 - 시니어 코하우징은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일반적으로 주택은 지상면에 위치하고 다른 층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로의 이동 및 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노령 층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
- 범위 및 단위
 - 시니어 코하우징 커뮤니티에는 20~40개의 단독 가족 또는 부속 주택이 배치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잔디 공간과 산책로와 같은 공유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¹³⁷⁾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 있는 글레이셔 서클(Glacier Circle)은 3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12명의 친구들을 위한 타운하우스 스타일의 단독 주택 단지이고, 버지니아 주 애빙턴에 위치한 엘더스피릿 (Elderspirit)은 4에이커 부지에 14개의 자가 거주 주택과 15개의 저렴한 임대 아파트가 있음 (Kennedy, 2010)
 - 2021년 현재, 총 31개의 시니어만을 위한 코하우징이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구성 중에 있음¹³⁸⁾

136) Witt, S., & Hoyt, J. (2021). Senior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housing/> (검색일: 2021.07.20)

137) Witt, S., & Hoyt, J. (2021). Senior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housing/> (검색일: 2021.07.20)

138)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c). Directory. Retrieve

- 시니어 코하우징의 조성¹³⁹⁾
 - 시니어 코하우징의 조성은 커뮤니티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짐. 주민들은 함께 협력하여 자신들에게 맞춰진, 주민들에 의해 관리될 커뮤니티를 함께 디자인하고 조성함
 - 커뮤니티 주민들이 계획단계로부터 함께 참여하고 건설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조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조성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
 - 시니어 코하우징의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를 통해 건설비용을 대출해 주기도 함. 예를 들어,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스템포드 시는 저렴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에게 대출금 및 보조금을 지원함 (Siciliano, 2009, p. 50)
- 운영 및 관리¹⁴⁰⁾
 - 시니어 코하우징의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거 단지이기에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스스로 수립하여 적용함
- 예산 규모 및 충당 방법¹⁴¹⁾
 - 시니어 코하우징의 운영 예산은 주로 각 세대들의 연간 콘도 회비, 주택 소유자 조합 수수료 및 관리비의 부과를 통해 충당함
 - 20 개의 코하우징을 연구를 통한 보고를 살펴보면, 각 유닛 별로 연간 예산은 1,500달러에서 11,000달러로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는데, 중위 오분위 (median quintile)는 약 3,8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로 나타남

d from https://www.cohousing.org/directory/?dosrch=1&q&wpbdp_view=search&listingfields%5B1%5D&listingfields%5B46%5D=588&listingfields%5B34%5D&listingfields%5B55%5D&listingfields%5B63%5D=-1&listingfields%5B64%5D=-1&listingfields%5B12%5D=Senior&listingfields%5B13%5D=-1&listingfields%5B15%5D=-1&listingfields%5B16%5D=-1&listingfields%5B67%5D=-1&listingfields%5B20%5D&listingfields%5B68%5D=-1&listingfields%5B69%5D&listingfields%5B30%5D=0&listingfields%5B70%5D (검색일: 2021. 06. 10)

139)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b). Creating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10.cohous.org/creating> (검색일: 2021.06.10)

140) Witt, S., & Hoyt, J. (2021). Senior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housing/> (검색일: 2021.07.20)

141) Dowds, P. (2017). Cohousing Costs After You Move In: Part II Findings of the Study. Retrieved from <https://www.cohousing.org/cohousing-costs-after-you-move-in-part-ii-findings-of-the-study/> (검색일: 2021.07.10)

- 회원 자격 및 권리¹⁴²⁾

- 시니어 코하우징의 회원 자격은 개별 주택을 소유 혹은 렌트를 함으로써 이루어짐
- 시니어 코하우징의 개별 주택은 다른 개별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 소유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공동주택의 정책에 따라 입주민 자격요건 등의 조건이 맞는 경우, 이를 진행할 수 있음
- 고령주민을 위주로 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인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시니어 코하우징인지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지만, 세대원의 나이와 관련한 자격요건이 주로 있음
- 예를 들어, 세퍼드 빌리지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세대의 최소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환경 및 서비스¹⁴³⁾

- 각각의 공동주택이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지만, 크게 주민들의 개별 주택,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사이트 디자인을 공통된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개별 주택, 공용 공간, 외부공간 디자인을 통해 각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유지하면서도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프라이버시를 위한 개별 유닛) 주로 800 - 1600 sq ft 규모의 독립적인 생활공간
-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 커먼 하우스) 식당, 주방 거실, 게스트룸 워크샵, 키즈 룸, 다목적실 등의 공간



[그림 3-14] 코하우징의 개별 유닛 디자인 사례

출처 : CohoUS(n.d., p. 24)

142) Shepherd Village.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shepherdvillage.net/#home-section> (검색일: 2021.07.10)

143) CohoUS. (n.d.). Cohousing Slideshow from CohoUS. Retrieved from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bYVrnGpmO8W7X8d-iKvTtL7M4ZF0g0MDCe1qDVSSUM/edit#slide=id.g5cb0d2c752_0_19 (검색일: 2021.07.10)

③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헬스케어, 영양 등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고령자에게 중요한 의료서비스
 - 고령 주민들에게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영양 섭취는 건강한 기능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기에,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미국에서는 정부 및 민간 단체, 자선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고령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 및 정책을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관련 사례
 - 리노 시,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리노시는 네바다 주 식품 및 유통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역사회에 인증된 농산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여 이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대체 이동수단의 제공

- 고령자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교통서비스 필요
 - 교통수단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 (음식을 구매하기 위한 식료품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시설, 고용을 위한 직장, 친구 및 가족의 집, 등)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임
 - 커뮤니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 내에서만 유익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노인들이 운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이동성은 급격히 저해되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격리 및 외로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이에 고령 주민들이 운전을 더이상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들의 이동성과 독

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미국 지방정부들의 약 80%가 시니어 센터, 식료품점, 약국,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을 연결하는 고령 주민들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한다고 보고함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 관련 사례

-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Buncombe 카운티는 마운틴 모빌리티 (Mountain Mobilit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령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동수단 옵션을 제공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 세대 통합 접근 방식

- 다양한 이점이 있는 세대통합

- 세대 통합, 특히 어린이와 고령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다양한 이점이 있음이 보고되었음 (Warner et al., 2017)
 - 어린이와 고령 주민들을 위한 계획과 서비스 제공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세대 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이점이 있음
 - 또한 세대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WHO의 고령 친화 도시, AARP의 Aging in place, UNICEF의 어린이 친화 도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고령 친화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세대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Warner et al., 2017)
 - 미국 지방정부들의 약 47%가 세대 통합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 관련 사례

- (공공 프로그램의 결합)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스왑스콧 타운은 고등학교와 시니어 센터를 함께 재건축 함으로써 고등학생들과 노인들이 체육관, 댄스 스튜디오, 컴퓨터실 등의 공용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과 노인들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함

□ 지역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 고령자 관련 사업 지원 프로그램
 - 고령 친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 내의 비즈니스 지원 필요
 - 고령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게 조언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함
- 관련 사례(뉴욕시 고령친화 로컬 비즈니스 프로그램, The Age-Friendly Local Business Initiative in New York City)
 - 뉴욕시는 비즈니스 업체들 스스로 해당 비즈니스의 고령 친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 서비스, 조명, 웹사이트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고령 손님들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조언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
 -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비즈니스 업체에는 고령친화업체임을 인증받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운동, 운전, 평생교육 등)

- 고령자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교육지원 필요
 - 고령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 지속적인 사회 참여, 건강 관리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역할을 함
 - 미국 지방 정부들의 약 52%는 고령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고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 관련 사례
 - Maumelle시, 라이프롱 러닝 (Lifelong Learning): Arkansas에 위치한 Maumelle시는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in Conway(UCA)와 제휴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교육 수업과 워크숍을 제공함
 - 시는 파트너십을 통해 교실 공간을 제공하고, UCA는 수업을 위한 전문 강사를 제공함으로, 고령 주민들이 무료로 수업을 듣고 실제로 컬리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3. 소결

1) 일본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 소규모 지역사회별 고령자 주거-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과 주거·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구체적 역할과 방향 설정
 -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소규모 지역사회를 지역 고령자 입장에서 통일된 특성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를 누리는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지역단위로 이해함
 - 소규모 지역사회별 의료와 돌봄, 장기요양 등 보건복지 분야의 필요 수요와 특성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보건복지 서비스가 30분 이내에 제공될 수 있는 보건복지 전달 권역을 설정함
 -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수준을 3~4 단계로 구분하고 소규모 지역사회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설계된 주택을 공급 (또는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해 고령자 주택의 공급과 주택으로의 개조와 관련한 세금 감면을 지원함
 - 지역 내 공급·개조되는 주택과 해당 지역의 외부환경을 모두 배리어프리로 조성하여 고령자의 주택 내·외 일상생활에서의 낙상을 방지함
 - 고령자의 소규모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한 재가서비스 및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적극 공급함
 - 소규모 지역 내 고령자의 신체기능적 노화 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쇠 점검단과 생활지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전기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를 돋는 老-老 케어 체계를 갖춤
 -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는 명확한 지역 사회 단위를 설정하고 구체적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 일본의 초등·중학교 통학구역 단위 주거-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고령자 주택의 공급과 개조 활성화 및 BF 환경 조성을 위한 세금 감면, 고령자의 고령자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상호 교류를 활성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물리적 환경 개선과 서비스 연계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에 시사점을 가짐

□ 대규모 베이비부머 고령자의 후기 고령자 전환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생활환경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준비

-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우리나라 대비 약 10년 앞서 진행되어 현재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완료된 상황임
- 현재 전기-중기 고령세대를 구성하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가 후기 고령세대로 진입하며 급속도의 사회보장 혜택 부담 강화가 예정됨
- 후기 고령세대의 급속한 증가 전망은 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보험 등에 기반하여 구축된 지역사회 주거-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하며 일상생활권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운영·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임
-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상황으로 10~20년 이내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 그룹으로 전환되어 경제활동 참여력을 상실하고 전폭적 부양 대상 그룹이 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할 필요
- 일본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후기 고령자 그룹 전환 대응에 대한 일본의 정책 변화와 고령친화 생활환경 운영·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표 3-9] 일본 복지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단위	법제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내용
마을·타운	액션리서치 -초고령사회 대응 마을 만들기 종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3요소로써 ①건강자립수명을 최대화하는 지역생활환경의 정비(Healthy Ageing), ② 마지막까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케어시스템과 지역생활환경의 정비(Ageing in Place), ③고령자도 일하고 활동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생활환경의 정비(Social Inclusion) 제시
	「배리어 프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역 등의 여객시설 주변 보행공간의 배리어 프리화에 대한 의무기준을 규정 2,000m² 이상의 불특정 다수 또는 주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배리어 프리에 관한 기초적 기준 달성을 의무화
	건강, 의료 복지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거주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따라 도시 공간과 시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
	미래 도쿄 전략 비전(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도 차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려 가지 방책을 담은 20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고령사회 관련 항목으로 '비전4. 장수', '비전7. 커뮤니티', '비전 11. 도시 조성'을 제시
시설·공간	「생활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법 안에서 고령자 보호시설로 양로시설, 구호시설, 간호시설, 의료보호시설, 수산(授産)시설, 숙박소 제공시설 등 6개 종류의 시설을 규정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증가와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 등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법 하에서 재택복지제도와 고령자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짐
	「고령자 주거환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개호 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 기존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고령자 주거법을 개정하고,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제도를 창설
프로그램·서비스	「노인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의료비 전액부담에 대한 부담과 고령자의 장기 입원 증가 등에 따라 노인보건법을 제정,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의 본인 부담제를 도입
	「개호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개호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개호를 유도해 세수가 감소하는 행정에 의한 시설정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개호보험법 개정(2005년)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 창출
	개호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보보험제도 하에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에 익숙해진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창설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70년대)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목표로 전국민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제도 확충 (1980년대) 사회보장급부비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목표로 노인보건제도·기초연금 창설 등 사회배경을 반영한 시책이 시행 이후 제도의 기본 이념에 근거해 연금, 개호보험, 의료 등 각 제도에 대한 개편이 매년 1개 부문씩 실시

출처 : 본 보고서 pp.66-88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요약 작성

2) 미국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물리적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단지별 특성화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공급
 - 지역 고령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필요 주거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고려하여 본인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고령친화 생활 커뮤니티를 조성함
 - 저밀·저층 주택이 대다수이며 일부 고층 아파트(콘도)형 주거를 포함하는 미국의 주거특성 속에서 대부분의 고령친화 생활단지는 우리나라 동네, 근린주구, 또는 소형 아파트 단지 규모로 조성됨
 - 대부분 민간의 사적(private) 단지 특성으로 조성되는 미국의 고령친화 커뮤니티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뉴욕시는 특정 거리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고령자의 주 이용 도시환경을 고령친화적 공공시설과 장소로 개선함
 - 고령친화 생활 커뮤니티 또는 생활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의 조성 및 운영의 외주화(outsourcing) 특성을 보이며 저소득 고령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커뮤니티에 한정하여 도시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함

[표 3-10] 미국 법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단위	법제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내용
마을·타운	지역 및 조닝 계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의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고밀도, 혼합사용 개발 및 편의시설과 같은 노인을 위한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지역 및 조닝 계획 정책을 수립
	완전 가로 정책 (Complete Str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표지판의 가시성 개선 및 교차로 간소화 등 고령 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계속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정부들은 완전 가로 디자인을 지원하는 조닝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
시설·공간	빌딩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정부에서는 고령친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빌딩 코드를 수립함으로써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부속 주택 조성 정책 (Accessory Dwelling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부속 주택 단위는 기존의 한세대 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의미• 대지 내 분리된 거주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 및 주거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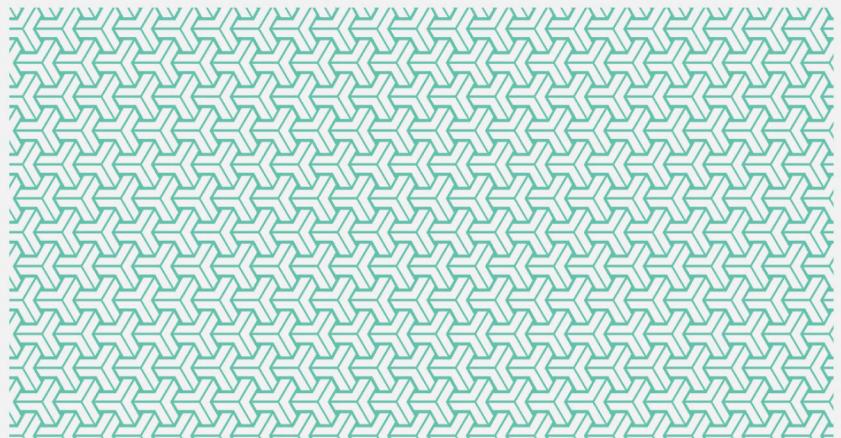
출처 : 본 보고서 pp.89~123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요약 작성

[표 3-11] 미국의 지역, 시설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성 비교

구분	뉴욕시 고령화 친화 지구/지역	시니어 빌리지	자연 발생 은퇴 커뮤니티	지속적인 관리 은퇴 커뮤니티	시니어 코하우징
커뮤니티 경계 및 규모	지구(District) 또는 근린주구(Neighborhood) 규모	대부분 아파트 단지(Town) 또는 주택 단지 (Neighborhood) 규모로 조성	대부분 아파트 단지(Town) 또는 주택 단지 (Neighborhood) 규모로 조성	300가구 이하의 캠퍼스형 단지 규모	20 ~ 40가구의 공동 주거 단지 규모
기존 커뮤니티 및 집의 활용	커뮤니티의 기존 조직(집,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활용 및 개선	기존 자신의 집 + 커뮤니티의 서비스 프로그램	기존 자신의 집 + 커뮤니티의 서비스 프로그램	새로운 주거 환경 및 캠퍼스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새로운 주거 환경 및 제한된 서비스 프로그램
커뮤니티 조성 및 거주 이동 여부	자신의 집 및 커뮤니티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됨	자신의 집 및 커뮤니티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됨	자신의 집 및 커뮤니티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됨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필요, 이후에 계속 거주 가능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필요
커뮤니티 조성 주체	도시 자체 및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 주민	주택 협동조합 이사회 / 임대주택 관리자 + 서비스 제공 단체	영리/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 운영 주체 및 인원	직원 + 공무원 + 커뮤니티 주민	소수의 직원 (평균 1,73명) + 자원봉사자	직원 (평균 3.97명) + 자원봉사자	다양한 직종의 직원	커뮤니티 주민
예산 출처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지원/기부금	회원 멤버십 비용 (48%) + 기부금 (25%)	정부 지원금 (65%) + 민간 자선 단체 (13%)	회원 입회비 + 월회비	각 세대들의 연간 관리비 혹은 회비
커뮤니티 제공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제공이 함께 진행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며 기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도와줌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며 기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도와줌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제공이 모두 새로운 캠퍼스에서 제공	물리적 환경과 제한된 서비스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제공

출처 : 본 보고서 pp.89-123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요약 작성

제4장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 고령친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
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고령친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

□ 우리나라 주택·주거환경과 건강·지역돌봄 서비스의 결합 요구에 대응 중

- 지자체는 고령자 주거와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니어타운, 돌봄공동체, 노인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
 - 인천교구 시니어타운, 전북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서울시 어르신 공동 생활주택, 금천구 보린주택, 안심가득 노인주택 등
- 주로 저소득이며 일상생활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연계됨
 - 공공임대주택은 저층부의 고령자 복지공간과 상층부의 고령자 거주공간을 마련하거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고령 거주자로 모집
 -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케어안심 주택 서비스 등을 제공
 - 의존적 건강상태의 고령자에게는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한 재가 의료급여 지원

□ 일본은 부처간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유형을 개발하여 제공

- 일본 「노인복지법」은 고령자의 다양한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재택복지제도와 고령자 시설을 제공함
 -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유료 노인홈, 저소득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 노인홈, 도시지역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도시형 경비노인홈, 의존적 고령자의 케어를 위한 특별양호 노인홈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부족 보완을 위해 「고령자 주거환경법」을 마련하고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함
 - BF 적용 주택설계,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 기본 제공, 심화 서비스의 실비 정산, 장기입원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 가능 등 거주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성 강화 방안 적용

□ 미국은 중·고소득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환경을 구축, 노후 주거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 미국은 기존 주거지의 돌봄 서비스 연계성 강화, 주거-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에 집중한 신규 주거단지의 개발 등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주거-돌봄 연계 유형을 구축함
 - 시니어 코하우징은 의료·돌봄 서비스와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아파트, 공동주택 형태로 거주자 맞춤형 공용 편의시설을 제공
 - 지역 주민 스스로 시니어 코하우징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며, 주 정부는 해당 공동주택 개발업자 대상 대출금 및 보조금 지원을 담당
 - 자연적 발생 은퇴자 돌봄마을(NORC)은 기존 주거지의 고령 거주자 비율 상승에 따른 기존 주거지로의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
 - NORC 주거단지는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비율을 유지하고 연방·주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 받음
 - 지속적 관리 은퇴자 돌봄마을(CCRC)은 캠퍼스식 환경 내 아파트, 단독 주택, 생활지원 주택, 요양원을 공급·개발하여 입주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주거-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
 - CCRC 주거단지는 중·고소득 고령자 중심으로 입주하여 외부 관리자를 통한 주거,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 정부는 CCRC 개발의 승인과 지속적 운영 도모를 위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
- 특정 고령친화 주거지역, 주거단지의 지정과 개발이 갖는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 특정 고령자 특성 집중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시니어 빌리지 모델이 등장함
 - 시니어 빌리지는 고령 주민들이 각자의 주거지에 지속 거주하며 서비스 접근성,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강화를 도모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고령친화 커뮤니티임
 - 지역 주민의 참여와 회원제 기반의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령 주민은 집단을 형성하며 규모의 경제 원리를 통한 의료·돌봄·생활편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혜택을 누림

□ 고령자의 주거안정, 의료·돌봄을 동시에 지원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령자 여생을 통한 기본적 삶의 질 제고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필요

- 고령세대는 기준에 살던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욕구가 강한만큼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은 정책지원 지속효과가 길다는 특성을 지님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욕구는 고령자의 주거의 개선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대상 고령자복지주택,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정책으로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과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음
- 고령이 되어 쇠약해진 신체와 정신의 돌봄을 위한 의료와 돌봄 역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냄
 - 특히 일본과 미국의 정책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의료·돌봄의 연계성에 강화에 집중하는 다양한 주거-돌봄 통합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특정 소득, 건강상태에 집중된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한적 연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고령자 욕구와 생활수준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모형 개발이 필요

-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저소득-일상생활가능 고령자 또는 의존적 건강상태의 고령자에게 집중되며 주거 유형도 한정됨
 - 일본의 다양한 주거복지시설 유형과 미국의 다양한 소득·건강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자 주거·돌봄 서비스의 융합 모델의 참고 필요
 - 미국 시니어 빌리지와 같은 기존 주거지 유지와 함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집단적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은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
- 기존 저소득, 의존적 고령자 대상 지원의 고도화와 함께 중·고소득, 건강 또는 허약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중·고소득, 건강·허약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득수준의 변화, 건강상태의 악화에도 고령자 개인 삶의 질 유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속지원 체계의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유형 개발 필요

-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모델의 개발과 공급을 지원하고, 민간의 개발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과 보조를 지원하여 다양한 욕구와 생활수준을 보이는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

□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 마련 필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의료·돌봄 연계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마을 조성을 강조
 - 면(面)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방안으로서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의 조성과 은퇴자의 비수도권 유입을 꾀하는 은퇴자 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정책과제로 제시
 - 구체적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과제 발굴 등이 필요
- 기존의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복지시설 등과 고령자 의료·돌봄 서비스가 다변화된 고령자의 건강, 소득, 생활욕구 수준에 대응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형의 개발 보다는 기존의 고령자 주거안정 및 의료·돌봄 정책의 다양한 연계방안을 고려할 필요
 - 새로운 모형 개발 대비 기존 정책의 선택적 강화를 통한 실효적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의 「주거환경법」, 미국의 CCRC 등을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무조건적 수용 보다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선행하였던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 민간 중심의 고령사회 대응 주거·의료돌봄 연계 체계가 다양하게 구축된 상황
 - 미국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 방식의 CCRC 보급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령자 대상의 주거·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확산 중
 -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고령자 주거·의료돌봄 연계 및 면(面)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시범하고 추후 민간의 산업 확산을 통한 대중화를 꾀하는 것이 신속한 고령사회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

- 우리나라를 고령자의 도시환경·시설 이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노후 불량 생활환경 정비 등을 수행 중
 - 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통한 고령자의 외부활동과 이동의 안전과 편리성 강화를 추진
 -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 보행이 찾은 곳 등은 보호구역의 속도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
 -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포함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외부활동과 이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
 -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BF 인증을 추진하고, 노후 불량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BF 생활환경 인증제도 추진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정비구역, 도시계획지구제 등을 통해 고령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생활거점 조성 등을 추진
- 미국 뉴욕시는 지구 단위의 공중이용시설의 고령친화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일본은 주택·시설 이외의 고령자 일상 생활환경에도 BF 적용을 추진
 - 미국 뉴욕시는 지구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집중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자 주요 이용 공중이용시설의 고령친화적 개선을 수행
 - 고령화 개선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s) 지정과 고령친화 지역 (Age-Friendly Neighborhood) 조성 사업을 추진
 - 고령화 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내 상업시설, 공원, 박물관, 보행로 등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과 장소 대상 고령친화적 시설개선을 수행
 - 고령친화 지역 조성 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적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마련의 틀ikit을 마련, 타 자자체에 배포·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단위 지역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함
 - 일본은 「배리어 프리법」과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지침」 마련을 통해 건축물 내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및 일상생활권 외부환경의 BF 적용을 추진
 - 건축과 도시환경 전반에 적용되는 일본의 「배리어 프리법」은 대중교통과

건축물, 지역의 중점적 생활환경 및 도로·보행로를 대상으로 적용 지침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집 안·밖에서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

- 고령자 일상생활권의 BF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지침’을 통해 고령자의 일상 도보생활, 사회참여,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을 제고함

□ 점(點) 단위의 시설·장소에 집중하는 우리나라 고령자 도시환경 이용 안전성 강화와 함께 면(面)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역량 집중 시범사업 추진과 효과성 검증 및 확산 노력이 필요

- 고령자의 일상생활 범위 내 종합적 고령친화 환경과 시설의 조성에는 한계를 갖는 현재의 도시환경·시설 개선 노력
 - 고령자 입장에서 주거지역内外의 각종 서비스 시설까지 도보 또는 대중 교통 이동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미국과 일본은 고령자의 집중 또는 일상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적 보행로, 벤치, 공원, 대중교통 시설,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도시환경 이용 안전성 강화는 짧은 구간의 보행 안전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점(點) 또는 선(線) 형태의 노력으로 한정
- 시범사업 형태로나마 도시 지자체의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의 지정과 종합적 개선 노력을 집중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의 면(面)적 조성은 고령친화 주택·주거 단지 조성과 돌봄·복지 서비스 시설의 연계 형태로 한정되어 진정한 의미의 구역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의 종합조성과는 괴리가 있음
 - 고령자의 도보 생활권 범위¹⁴⁴⁾ 내 공간환경의 BF 적용과 서비스 시설의 고령자 배려 교육 실시, 고령친화적 디자인 적용 시설로의 개선 등을 추진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전후의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지역 주민 만족도, 서비스 시설 이용률 비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 시범사업 확대 추진의 체계를 마련

144)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통학구역 등을 활용 가능

- 치매 등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불편을 경험하는 고령자의 돌봄과 일상생활 속 개인 삶의 질 제고 역시 면(面) 단위의 고령친화 치매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한 대응 노력이 필요
 - 건강한 자립생활 가능 고령자 대비 치매 등 인지장애·불편 등을 경험하는 고령자는 더욱 시설 중심의 요양과 일상생활로 대응하는 상황
 - 그럼에도 시설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당 고령자 돌봄을 위한 가족의 희생이 함께 수반되는 상황
 - 마을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치매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요양·돌봄 필요 고령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족이 함께 지역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우리나라의 일상생활환경은 치매 등 요양·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예방교육 중심의 대응은 아직 물리적 생활환경과 서비스의 연계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기존의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의존적 고령자 주거와 의료·돌봄 지원을 벗어나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의 의존적 고령자 주거와 의료·돌봄 종합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활동 강화 및 교육부의 평생교육 강화 계획과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
 - 고령자의 사회참여,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평생교육 진흥 노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여가 및 체육활동 진흥 노력은 고령친화 생활 환경에 기반할 필요
 -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등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평생교육진흥 사업 실시, 시·군 및 자치구 대상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통한 국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시설과 공간의 개선을 노력

□ 미국은 고령친화 주거·복지 연계와 함께 거주 고령자의 사회참여, 평생교육 기회 극대화를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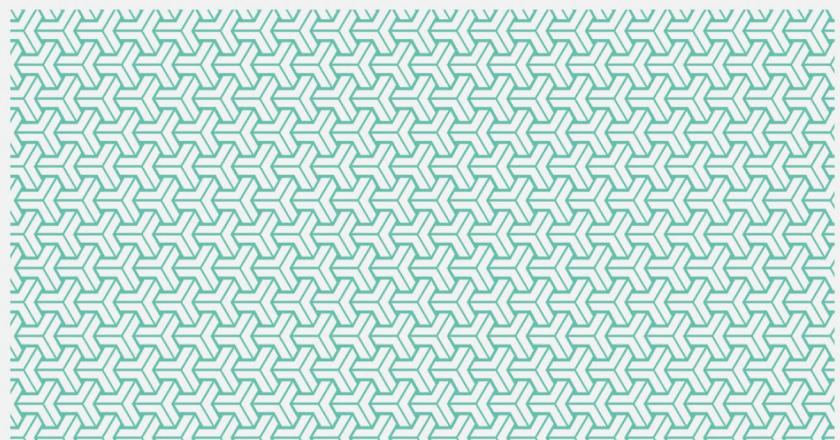
- 미국의 고령친화 주거단지 또는 공동주택 사업은 거주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돌봄 서비스 연계성, 여가 및 체육활동, 평생교육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지원
 - 자연발생적 은퇴자 돌봄마을(NORC), 지속적 관리 은퇴자 돌봄마을 (CCRC)은 지역 단체 및 외부 운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프로그램의 참여, 여가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한 봉사 및 교육 이수·참여를 지원
 - 지속적 관리 은퇴자 돌봄마을(CCRC)의 유형으로서 대학 연계 특성을 강화한 대학연계형 은퇴자 돌봄마을(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은 대학 캠퍼스에 돌봄주거단지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평생 교육과 주거안정, 돌봄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추진

□ 대학연계형(또는 평생교육형)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

- 국내 지역대학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필요를 연계하여 대학교 지역 중심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모델 구상 가능
 - 지역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 활용 고령친화 주거단지의 개발, 대학 인근 지역 고령자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택 개조·개량 등을 통한 고령자 평생교육 실현의 기회 극대화 추진
 - 의과대학, 간호학과 보유 캠퍼스 중심으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단지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 서비스 연계, 고령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의 가능성을 제고

참고문헌

References



- AARP. (2018). Where we live.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content/dam/aarp/livable-communities/livable-documents/documents-2018/WhereWeLive-2018-lr-v2-5.pdf> (검색일: 2021.07.10)
- AARP. (2019). How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Work.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caregiving/basics/info-2017/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html> (검색일: 2021.07.10)
- AARP. (N.A.). Future of Housing. Retrieved from <https://futureofhousing.aarp.org/> (검색일: 2021.07.10)
- AARP, & National Building Museum. (2019). Making Room: Housing for a Changing America.
- Age-Friendly NYC. (2012). Creating an Age-Friendly NYC One Neighborhood at a Time. Retrieved from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n.d.). Accessory Dwelling Units. Retrieved from <https://www.planning.org/knowledgebase/accessorydwellings> (검색일: 2021. 07.10)
- Ball, M. S., & Lawler, K. (2014). Changing Practice and Policy to Move to Scale: A Framework for Age-Friendly Commun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6(1-2), 19–32. doi:10.1080/08959420.2014.856706
- Beacon Hill Village. (n.d.-a). Beacon Hill Village: Residents of Back Bay, Beacon Hill, Downtown/Waterfront, Kenmore/Fenway, The North South and West Ends. Retrieved from <https://www.beaconhillvillage.org/> (검색일: 2021.06.15)
- Beacon Hill Village. (n.d.-b). Thinking About Starting A Village? Retrieved from https://www.beaconhillvillag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332658&module_id=77064 (검색일: 2021.06.15)
- Bronstein, L., & Kenaley, B. (2010). Learning from Vertical NORC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Horizontal NORC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4(3-4), 237–248. doi:10.1080/02763893.2010.522452
- Buffel, T., Verté, D., De Donder, L., De Witte, N., Dury, S., Vanwing, T., & Bolsenbroek, A. (2012). Theori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people and their immediate social liv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1), 13–32. doi:10.1080/02601370.2012.636577
- Center for Home Care Policy and Research VNSNY. (n.d.). Improving Communities for an Aging Society. Retrieved from <https://apps.vnsny.org/advantage/> (검색일: 2021.06.15)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Linked to Serious Health Condi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aging/publications/features/lonely-older-adults.html#:~:text=A%20new%20report%20from%20the,considered%20to%20be%20socially%20isolated.> (검색일: 2021.06.15)
- City of Newton. (2014). Demographics. Retrieved from <https://www.newtonma.org/>

- gov/about/demographics (검색일: 2021.06.15.)
- Clarke P, George LK. (2005). The role of the built environment in the disablement process. *Am J Public Health* 95(11):1933–1939.
- Cobb, R., & Davorak, S. (2000). Accessory Dwelling Units: Model State Act and Local Ordinance. CohoUS. (n.d.). Cohousing Slideshow from CohoUS. Retrieved from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bYVrnGpmO8W7X8d-iKvTtL7M4ZF0g0MDCelr1qDVSUM/edit#slide=id.g5cb0d2c752_0_19 (검색일: 2021.07.10)
- Dowds, P. (2017). Cohousing Costs After You Move In: Part II Findings of the Study. Retrieved from <https://www.cohousing.org/cohousing-costs-after-you-move-in-part-ii-findings-of-the-study/> (검색일: 2021.07.10)
- Erickson, C. (2019). Supporting the Diffusion of Senior Villages. *Journal of Science Policy & Governance*, 14(1).
- Evans, L., Oberlink, M. R., & Stafford, P. B. (2020). A Practical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Aging-Friendliness of Communities: Case Studies from Three U.S. Communities. *Innovation in Aging*, 4(1). doi:10.1093/geroni/igaa004
-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codes.findlaw.com/ny/elder-law/eld-sect-209.html> (검색일: 2021.07.10)
- From the Heart Home Care, L. (2020). Senior Village: A New Way of Living. Retrieved from <https://fromthehearthomecaresc.com/senior-village-a-new-way-of-living/> (검색일: 2021.07.10.)
- Google Map, <https://goo.gl/maps/c5NHTUqqPgvkLLKw9> (검색일: 2021.06.10)
- Graham, C. L., Scharlach, A. E., & Price Wolf, J. (2014). The Impact of the “Village” Model on Health, Well-Being, Service Access, and Social Engagement of Older Adults. *Health Education & Behavior*, 41(1_suppl), 91S–97S. doi:10.1177/1090198114532290
- Greenfield, E. A. (2015). Healthy Aging and 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Public Policy & Aging Report*, 25(2), 43–46. doi:10.1093/ppar/prv002
- Greenfield, E. A., Scharlach, A. E., Graham, C. L., Davitt, J. K., & Lehning, A. J. (2012). A National Overview of Villages: Results from a 2012 Organizational Survey. Retrieved from https://socialwelfare.berkeley.edu/sites/default/files/casas_pubs_2012village_report-final.pdf (검색일: 2021.06.10)
- Greenfield, E. A., Scharlach, A. E., Lehning, A. J., Davitt, J. K., & Graham, C. L. (2013). A Tale of Two Community Initiatives for Promoting Aging in Plac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NORC Programs and Villages. *The Gerontologist*, 53(6), 928–938. doi:10.1093/geront/gnt035
- Groger, L., & Kinney, J. (2007). CCRC Here We Come! Reasons for Moving to a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0(4), 79-101. doi:10.1300/J081v20n04_06
- Hunt, M. E., & Gunter-Hunt, G. (1986).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3(3-4), 3-22. doi:10.1300/J081V03N03_02
- Kennedy, C. (2010). The City of 2050: An Age-Friendly, Vibrant, Intergenerational Community. Generations, 34(3), 70-75.
- Kerr, J., Rosenberg, D., & Frank, L. (2012). The role of the built environment in healthy aging: Community desig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7(1), 43-60.
- Kieffer, E. K., A. . (2021a). Age-friendly Neighborhood Organization Toolkit. http://media.nyam.org/filer_public/a7/44/a7449eda-a065-4d14-b40b-c234fd6c269d/factsheet_series-final.pdf#page=10(검색일: 2021.07.10)
- Kieffer, E. K., A. . (2021b). How to Thrive Together: A Toolkit to Sustain, Grow & Fund Your Age-friendly Neighborhood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s://www.nyam.org/publications/publication/how-thrive-toolkit-sustain-grow-fund-your-age-friendly-neighborhood-organization/](https://www.nyam.org/publications/publication/how-thrive-together-toolkit-sustain-grow-fund-your-age-friendly-neighborhood-organization/) (검색일: 2021.07.10)
- Lehning, A. J. (2011). City Governments and Aging in Place: Community Design, Transportation and Housing Innovation Adoption. The Gerontologist, 52(3), 345-356. doi:10.1093/geront/gnr089
- Love Living at Home.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loveliving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579154&module_id=203887#Who%20can%20join%20Love%20Living%20at%20Home? (검색일: 2021.07.10)
- Maclarens, C., Landsberg, G., & Schwartz, H. (2007). History, Accomplishments, Issues and Prospects of Supportive Service Programs in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in New York Stat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9(1-2), 127-144. doi:10.1300/J083v49n01_08
- Masotti, P. J., Fick, R., Johnson-Masotti, A., & MacLeod, S. (2006). Healthy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a low-cost approach to facilitating healthy ag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7), 1164-1170. doi: 10.2105/AJPH.2005.068262
- Mather, M., Jacobsen, L. A., & Pollard, K. M. (2015). AGING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www.prb.org/wp-content/uploads/2019/07/population-bulletin-2015-70-2-aging-us.pdf> (검색일: 2021.06.10.)
-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6). The maturing of America: Getting communities on track for an aging population: Author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11). The maturing of America: Communities moving forward for an aging population: Author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n.d.). Swampscott High School and Senior Center. Retrieved from <https://www.n4a.org/content.asp?admin=Y&contentid=438> (검색일: 2021.07.10)
- New York State Deparement of Health.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Fee-For-Servic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trieved from https://www.health.ny.gov/facilities/long_term_care/retirement_communities/continuing_care/ (검색일: 2021.07.10)
- Newton at Home. (n.d.-a). Board Members.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379585 (검색일: 2021.07.02)
- Newton at Home. (n.d.-b). History.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16925 (검색일: 2021.07.02)
- Newton at Home. (n.d.-c). Membership in Newton at Home.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374 (검색일: 2021.07.02)
- Newton at Home. (n.d.-d).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395(검색일: 2021.07.10)
- Newton at Home. (n.d.-f). Transportation.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433 (검색일: 2021.07.02)
- Newton at Home. (n.d.-g). Vendor Referrals.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401 (검색일: 2021.07.02)
- Newton at Home. (n.d.-h). Volunteer. Retrieved from https://newtonathome.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64091&module_id=154388 (검색일: 2021.07.02.)
- NWN,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05> (검색일: 2021. 07.20.)
- NYC and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2011). Age Friendly NYC: A Progress Report.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p-content/uploads/2015/03/New-York-Age-Friendly-NYC-2011-Overall-Progress-Report.pdf> (검색일: 2021.07.10)
- NYC DOT. (n.d.). CityBench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citybench.shtml> (검색일: 2021.07.10)
- NYC Mayor and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NYC Department for the Aging, & Age-friendly NYC. (2017). Age-friendly NYC: New Commitments for a City for All Ages. Retrieved from <https://www1.nyc.gov/assets/dfta/downloads/pdf/publications/AgeFriendlyNYC2017.pdf> (검색일: 2021.07.10)

- NYCdata. (n.d.). Population & Geography: New York City (NYC) Neighborhoods - By Borough. Retrieved from <https://www.baruch.cuny.edu/nycdata/population-geography/neighborhoods.htm> (검색일: 2021.07.10)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a). Community-Centered Solutions for Aging at Home.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html> (검색일: 2021.06.10)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D&R). (2013b). The Original NORC Supportive Servic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em/fall13/highlight3_sidebar.html (검색일: 2021.06.10)
- Parker, T. (2020). What Is a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Retrieved from <https://www.thebalance.com/what-is-a-naturally-occurring-retirement-community-4585208> (검색일: 2021.07.10)
- Scharlach, A. (2012). Creating Aging-Friendly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geing International, 37(1), 25-38. doi:<http://dx.doi.org/10.1007/s12126-011-9140-1>
- Shepherd Village.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shepherdvillage.net/#home-section> (검색일: 2021.07.10)
- Shippee, T. P. (2009). "But I Am Not Moving": Residents' Perspectives on Transitions Within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The Gerontologist, 49(3), 418-427. doi:<10.1093/geront/gnp030>
- Siciliano, J. M. (2009). The Process and issues of creating a cohousing development with affordable units in an affluent community: Stamford, Connecticu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Amherst. Retrieved from https://scholarworks.umass.edu/larp_ms_projects/19/ (검색일: 2021.07.10)
- Smart Growth America. (n.d.-a). Complete Streets policies nationwide. Retrieved from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policy-development/policy-atlas/> (검색일: 2021.07.02)
- Smart Growth America. (n.d.-b). What are Complete Streets? Retrieved from <https://smartgrowthamerica.org/program/national-complete-streets-coalition/publications/what-are-complete-streets/> (검색일: 2021.06.10)
- Stanley, M.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검색일: 2021.06.10.)
- TB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2310865&seq_800=10291328 (검색일: 2021.06.18.)
-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a). Aging in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10.cohous.org/aging> (검색일: 2021.06.10)
-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b). Creating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10.cohous.org/creating> (검색일: 2021.06.10)

-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c). Directory. Retrieved from https://www.cohousing.org/directory/?dosrch=1&q&wpbdp_view=search&listingfields%5B1%5D&listingfields%5B46%5D=588&listingfields%5B34%5D&listingfields%5B55%5D&listingfields%5B63%5D=-1&listingfields%5B64%5D=-1&listingfields%5B12%5D=Senior&listingfields%5B13%5D=-1&listingfields%5B15%5D=-1&listingfields%5B16%5D=-1&listingfields%5B67%5D=-1&listingfields%5B20%5D&listingfields%5B68%5D=-1&listingfields%5B69%5D&listingfields%5B30%5D=0&listingfields%5B70%5D (검색일: 2021. 06.10)
-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n.d.-d). Senior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cohousing.org/senior-cohousing/> (검색일: 2021.06.10)
-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d.). Age-Friendly NYC Commission Initiatives 2010-2013.
- The U.S. Census Bureau. (2020). 65 and Older Population Grows Rapidly as Baby Boomers Age. Retrieved from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20/65-older-population-grows.html> (검색일: 2021.06.10)
- The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topics/population/older-aging.html> (검색일: 2021.06.10)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1). Older Americans Act: More Should Be Done to Measure the Extent of Unmet Need for Services.
- Village to Village Network. (n.d.-a). Village Map. Retrieved from https://www.vtvnetwork.org/content.aspx?page_id=1905&club_id=691012 (검색일: 2021. 07.20)
- Village to Village Network. (n.d.-b). Village to Village Network. Village to Village Network helps communities establish and operate thriving Villages. Retrieved from https://www.vtvnetwork.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691012&module_id=248579 (검색일: 2021.06.10)
- Warner, M. E., Homsy, G. C., & Morken, L. J. (2017). Planning for aging in place: Stimulating a market and government response.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37(1), 29-42.
- WHO, https://www.who.int/ageing/projects/age_friendly_cities/en/ (검색일: 2020. 06.23.)
- WHO, <https://www.who.int/ageing/age-friendly-world/en> (검색일: 2020.06.17.)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HO.
- WHO, <https://www.who.int/ageing/projects/age-friendly-environments/en> (검색일: 2020.06.17.)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ageing/publications/Global_age_friendly_cities_Guide_English.pdf (검색일: 2021.06.10.)
- WHO, <https://www.who.int/ageing/age-friendly-world/en> (검색일: 2020.06.17.)

- WHO, <https://www.who.int/ageing/projects/age-friendly-environments/en> (검색일: 2020.06.17.)
- WHO. (n.d.-a). Age-friendly Neighborhoods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neighborhoods-initiative/> (검색일: 2021.06.10)
- WHO. (n.d.-b). New York City.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new-york-city/> (검색일: 2021.07.20)
- Wikipedia. (n.d.). Newton, Massachusetts.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ewton,_Massachusetts (검색일: 2021.06.10)
- Williamson, P. (2020).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 Definition). Retrieved from <https://www.truelegacyhomes.com/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 (검색일: 2021.06.10)
- Witt, S., & Hoyt, J. (2021). Senior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seniorliving.org/cohousing/> (검색일: 2021.07.20)
- Zarem, J. E. (2010). Today's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CCRC Task Force, American Seniors Housing Association.
- 総務省「国勢調査 人口推計」(平成24年1月推計)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 内閣府2020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0/html/zenbun/s1_1.html (検査日: 2021.06.15.)
- 総務省統計局, <https://www.stat.go.jp/data/topics/pdf/topics126.pdf>(検査日: 2021.06.15.)
- 総務省総務局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5/html/nc123110.htm> (検査日: 2021.06.15.)
- 金子隆一. (2016). 人口高?化の諸相とケアを要する人々. 社会保障研究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 内閣府「高齢社会対策基本法」, https://www8.cao.go.jp/kourei/measure/a_4.html (検査日: 2021.06.18.)
- 国土交通省 建築物のバリアフリー化に係る制度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1198300.pdf> (検査日: 2021.06.15.)
- 国土交通省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https://www.mlit.go.jp/common/001049456.pdf> (検査日: 2021.06.15.)
- 東京都「未来の東京戦略ビジョン」. <https://www.seisaku.kikakumetro.tkyo.alg.jp/basic-plan/authors53762/vision.pdf> (検査日: 2021.06.15.)
- 厚生労働省 生活構造法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048000&dataType=0&pageNo=1 (検査日: 2021.06.15.)
- 厚生労働省 老人福祉法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111000&dataType=0&pageNo=1 (検査日: 2021.06.15.)
- 国土交通省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https://www.mlit.go.jp/common/001267551.pdf> (検査日: 2021.06.15.)

一般社団法人 高齢者住宅協会. https://www.satsuki-jutaku.jp/past_data.html
(검색일 : 2021.06.15.)

厚生労働省 老人保健施設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_dc?dataId=00a395&dataType=1&pageNo=1
(검색일 : 2021.06.15.)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gaiyo/index.html
(검색일 : 2021.06.15.)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auhaker01/index.html
(검색일 : 2021.06.15.)

UR都市機構 https://www.ur-net.go.jp/rd_portal/urbandesign/project/danchisekei/toyoshikidai01.html
(검색일 : 2021.07.28.)

긴기대학 거주복지연구실 홈페이지, https://www.yamaguchi-lab.org/?page_id=3261
(검색일: 2021.07.28.)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ydbu/index.html
(검색일 : 2021.07.28.)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341065.pdf> (검색일:
2021.07.28.)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검색일 : 2021.07.28.)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mod.pdf
(검색일 : 2021.07.28.)

건축공간연구원. (2020). 포용적 고령친화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고령자 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8127#.YMsJEOAzaUk> (검색일 : 2021.06.14.)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5821호

고령친화서울,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about.action> (검색일: 2020.
06.23.)

고영호, 강현미, 김꽃송이, 오성훈. (20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
화도 진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곽대경. (2021).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입주자 50%가 귀농·귀촌해. 3월 10
일자 기사.

관계부처합동. (2018).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6). 「공공 실버주택」 2차 사업지 공모. 7월 4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8606호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8147호
- 국토교통부. (201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6).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16). 제8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 국토교통부. (2020). 국토종합계획실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4호
- 김동하, 양예슬, 이해원, 이수미, 김도영, 김용진, & 유승현. (2019). 도시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관련 생활상에 대한 다각적 이해. 보건과 사회과학, 52(1), 93-122.
- 김유진. (2016). 「노인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개입에 관한 사례연구. 경북대학교.
- 김유진, 박순미, 박소정. (2019).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imjesilver.org/bbs/content.php?co_id=business01_01 (검색일: 2021.06.18.)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gimjesilver/> (검색일: 2021.08.02.)
- 김춘남, 김서일. (2018).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 확대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남정훈, 박소현. (2019). Aging In Community 실천을 위한 균린환경계획의 제고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0(6): 81-92.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10521> (검색일: 2021.06.18.)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6616> (검색일: 2021.06.07.)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9034> (검색일: 2021.06.09.)
- 노인복지법. 법률 제17776호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법률 제18610호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89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814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마리스텔라 홈페이지, <https://marisstella.or.kr/> (검색일: 2021.08.02.)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1/01/39997/> (검색일: 2021.06.18.)
- 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819> (검색일: 2021.06.14.)
- 목인경. (2013).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라. (2014). 홀몸어르신들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실시. 8월 11일 기사.
- 박소임, 이상호, 이해진. (2015). 都市隱退者를 위한 고령친화주거지 특성 연구. 대학건축학회, 31(2): 3-10.

- 배성호. (2018). 성남위례실버주택, 시설도 운영도 독거노인 맞춤형 주택. 5월 18일자 기사.
백세시대,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2> (검색일 : 2021.06.18.)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4호
-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8011호
- 서수정, 장민영, 김영하. (20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건축
공간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7).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310> (검색일 : 2021.07.15.)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33> (검색일 : 2021.06.07.)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jsessionid=E162C4614CD1BEDBA00F33BC82ED8436?homeType=&homeCode=10001281> (검색일 : 2021.06.07.)
- 서유진. (2018). 도시재생에 있어 Age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연구. 서울대학교
신유진, 이연숙. (2018). 공동체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 특성 비교분석 연구: 수도권
내 소행주, 보린주택, 따복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집, 27(3), 49-61.
- 양평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yp21.go.kr/health/contents.do?key=1899>
(검색일 : 2021.06.18.)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 여관구. (2021).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월 17일자 기사.
연합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60>
(검색일: 2021.05.24.)
-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 https://m.geps.or.kr/g_subsite/maeul/introduction2.jsp
(검색일: 2021.06.18.)
-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 https://m.geps.or.kr/g_subsite/maeul/gallery-prof.jsp
(검색일: 2021.08.02.)
- 이승호. (2018). 공공실버주택 가보니 “로또 맞은 것 같다”는 어르신들. 11월 21일자 기사.
- 이연숙. (2019).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다발 구역 개선 공사 완료. 11월 22일자 기사.
- 이운주. (2016). 국토부,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첫 입주자 모집. 3월 28일자 기사.
- 이지윤. (2020). 서울시,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후 사고 46% ↓…올해 10개소 추진.
6월 22일자 기사.
- 임경수. (2016). 고령친화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도시행정학보 29(4): 217-242.
- 임민혁. (2019). 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3월 13일자 기사.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9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interviewView.do?newsId=148856689>

(검색일: 2021.06.14.)

정은하. (2020). 지역 상점 대상 고령친화 비즈니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지역사회 이미지와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태경. (2020). 신아일보. 공무원연금공단-예산군,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업무협약 체결. 2월7일자 기사.

정현원, 오정아. (2016). 노년층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주거 디자인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46: 115-127.

조재민. (2020). 고령친화 지역상점..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등 효과 다양. 7월 23일자 기사.

좌승훈. (2020).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공동체마을' 입주자 99% 삶의 질↑. 12월 22일자 기사.

중앙일보 2016년 9월 27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0644435> (검색일: 2021.05.24.)

지역보건법. 법률 제18335호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418> (검색일: 2021.06.18.)

최영준, 황정현, 배시화, 서유진. (2016). AAL의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고령친화적 공간계획방향 도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4): 451-462.

카네코 류이치. (2016). 고령화의 여러 모습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

컨슈머와이드,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2> (검색일: 2021.07.15.)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통계청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_시도」, <https://kosis.kr/>(검색일: 2021.12.20.)

통계청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_시도: 2020-2047」,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검색일: 2021.12.20.)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시도」, <https://kosis.kr/> (검색일: 2021.12.20.)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시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검색일: 2021.12.20.)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전국」, <https://kosis.kr/> (검색일: 2021.12.20.)

통계청. (2020). 2020 고령자통계. 9월 28일자 보도자료

통계청. (2021).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시군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870997.html> (검색일: 202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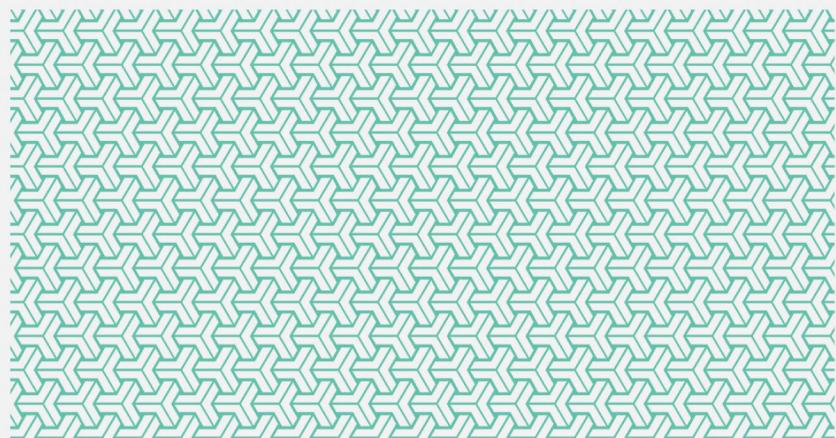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19615Y> (검색일: 2021.07.15.)

한재원, 이수기.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분석-2016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33-47.

한준규. (2007). 실버타운 성공 모델 '김제 노인복지타운'. 12월 5일자 기사.

허주희. (2017). 서울시, 어르신불편없는 '고령친화마을'... 118개 상점부터 시동. 9월 19일자 기사.

A Study on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 Korea



Ko, Youngho

Her, Jaeseok

Choi, Gayoon

Han, Seungyeon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in Korea requires a response to polici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as well as policies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ect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the aged society also set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physical, social, and service environment to create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as a basic principle. Nevertheless, th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policy to create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Korea remains in the improvement of senior housing, institutional facility,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taking the lea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realizing Active Aging and Aging in Place. They designate regions and districts, create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through convergence of health welfare and architecture/urban design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plans, and cases on the creation of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Korea. The laws, plans, and cas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regions, districts, facilities, places, programs, and services. The laws, plans, and cases review to create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also divided into regions, districts, facilities, places, programs, and servic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architecture/urban design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Korea were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laws, plans, cases analysi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architectur and urban design poli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ypes of linkage between housing an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t emphasized the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w-income and dependent elderly-centered housing and support for care services, allowing middle- and high-income elderly and even healthy seniors to enjoy the linkage of age-friendly housing-c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ypes of age-friendly housing-care services linkage that can cope with the diversified needs and living standards of the elderly.

Second, the designation of an age-friendly living area and the promotion of pilot projects were suggested. It emphasized the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ge-friendly urban environment in Korea, which remains in walking safety and traffic safety for the elderly through improvement of point-level facilities, It suggested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reate a

comprehensive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at the local and district levels. We look forward to the spread of comprehensive age-friendly living area projects through pilot projects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Third, it was propos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based on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The existing national policy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sufficient linkage measures through the creation of an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model and pilot project for university-linked or lifelong education.

It is hoped tha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policy proposed by this study will help both senior individuals and local residents realize the active and healthy ageing within their daily living environment.

Keywords :

Ageing, Aged Society,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